

▶ 2018년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 · 대한정치학회 공동국제학술대회(한·중·일·러)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국제관계

International Seminar of Regional Politics and Territorial
Issues in Northeast Asia

2018. 9. 14.

일 시 : 2018. 9. 14.(금)
장 소 : 계명대학교 의양관 216호
주최·주관 :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  대한정치학회
후 원 :  경상북도  CORE 계명인문역량강화사업단

프로그램

2018. 9. 13(목) ~ 9. 14(금)

일시	시간	내 용	비고	
9.13 (목)	17:00 ~ 20:00	국외초청(발표)자 환영 리셉션	AW호텔	
9.14 (금)	10:30 ~ 10:40	개회사 : 이 성 환 (계명대 국경연구소장, 대한정치학회 회장) 환영사 : 이 병 로 (인문국제대학장, 계명인문역량강화사업단장) 축 사 : 임 성 희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	사회 : 김 명 수 (계명대)	
	10:40 ~ 11:00	◇ 기 조 발 제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발표자: 이 성 환)		
	11:00 ~ 12:20	제1부 일본과 중국의 영토정책	주제 : 일본의 영토문제와 정세 발표자 : 森本眞治 (Sinji Morimoto, 일본 참의원의원, 국민민주당)	좌장 및 사회 : 하 세 현 (경북대)
			주제 : 다오위다오(钓鱼岛)귀속에 대한 고찰 -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발표자 : 劉江永 (Liu Jiang-Yong, 청화대학)	
			주제 : PCA 중재재판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발표자 : 尹 虎 (Yin Hu, 절강공상대학)	
12:20 ~ 13:30	오 찬 (계명대학교 의양관 소식당 : 심제당)			
13:30 ~ 15:10	제2부 러시아의 쿠릴열도 정책과 수산업	주제 : 쿠릴열도 수산업 발전 발표자 : 소피아 게오르기예브나 김 (Sophia Georgiyevna Kim, 사할린 인문기술대학 부총장)	좌장 및 사회 : 한 병 진 (계명대)	
		주제 : 2차 세계대전과 동북아의 영토 분쟁 발표자 : 진 율리야 이바노브나 (Din Yulia Ivanovna, 사할린 향토박물관)		

일시	시간	내 용	비고
	15:00 ~ 15:20	휴 식 (Coffee Break)	
	15:20 ~ 16:30	제3부 독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주제 : 중국의 해양전략과 남중국해 도서개발 발표자 : 이정태 (경북대학교) 주제 : 소련 해체 이후 미디어를 통해 본 독도와 타케시마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 발표자 : 김상현 (대구대학교) 주제 : 근현대 독도문제의 역사적 추이와 전망 발표자 : 坂本悠一 (Yuichi Sakamoto, 立命館大学)	좌장 및 사회 : 손기섭 (부산외대, 동북아국제 정치학회장)
	16:30 ~ 17:30	◇ 종합 토론 발표자, 토론자 : 성장환 (대구 교육대), 김은정 (삼천포고교, 작가), 박영환 (영남대)	
	18:00 ~ 20:00	만찬 (간담회)	AW호텔 중식당

목 차

◇ 기초 발제

-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13
Territorial Issues in East Asia and Dokdo
이 성 환(계명대)

제1부 _ 일본과 중국의 영토정책

사회 : 하 세 현 (경북대)

- 일본의 영토문제와 정세 41
Japanese Territorial Issues
森本真治 (Sinji Morimoto, 国民民主党)
- 다오위다오(钓鱼岛)귀속에 대한 고찰 :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45
Discussion about the Jurisdiction of Diaoyudao Islands(钓鱼岛列岛):
Based on Facts and Laws
유 강 영(劉江永, Liu Jiang-Yong, Tsinghua University)
- PCA 중재재판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77
China's Perception of and Response Strategies against the Ruling of the
PCA
윤 호(尹虎, Yin Hu, Zhejiang GongShang University)

제2부 _ 러시아의 쿠릴열도정책과 수산업

사회 : 한 병 진 (계명대)

- 쿠릴열도 수산업 발전 97
The Development of the Fishery Industry in Kuril Islands
소피아 게오르기예브나 김 (Sophia Georgiyevna Kim, 사할린 인문기술대학 부총장)
- 2차 세계대전과 동북아의 영토 분쟁 121
World War II and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진 율리아 이바노브나 (Din Yulia Ivanovna, 사할린 향토박물관)

제3부 _ 독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사회 : 손 기 섭 (부산외대, 동북아국제정치학 회장)

- 중국의 해양전략과 남중국해 도서개발 145
China's Maritime Strategies and the Development of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이 정 태 (경북대학교)
- 소련 해체 이후 신문보도를 통해 본 독도와 다케시마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 변화 167
Changes in Russians' Views of Dokdo and Takeshima in Newspaper
Report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김 상 현 (대구대학교)
- 근현대 독도 문제의 역사적 추이와 전망 185
The Historical Process and the Prospect of the Issue of Territorial Rights
over the Takeshima/Dokdo Island in Modern Days: The Interaction of
Nationalism, Globalism and Localism
坂本悠一 (Yuich Sakamoto, 立命館大学)

인사말

이 성 환

(대한정치학회 회장·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학기 개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와 대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학술회의입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참가해주신 발표자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술회의가 있기 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경상북도, 대한정치학회,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를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제국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영토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냉전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여전히 냉전의 그늘이 걷히지 않고 있고, 영토문제도 해결의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의 지역정치와 각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도 다소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는 냉전이라는 국제체제와는 별개로 개별

국가 간의 문제로 전이되었으며, 당사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국이 안고 있는 영토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찾고자 하는 학술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회의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유익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9월

축사

임 성 희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

세계는 경제적·문화적 통합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G2로 부상하자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영예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우경화는 그 반증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독도 침탈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교과서에서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각 관방성에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대내외적으로 독도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지였으며,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나는 산물을 마음대로 유린하였습니다. 광복과 함께 한반도 품으로 돌아온 독도입니다만, 강점기 때 독도강치를 포획하고 전복, 미역을 채취해 간 역사를 자국의 실효적 지배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야욕과 역사왜곡을 결단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독도를 관할, 관리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토주권과 문화주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독도 주민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독도에서 음악회, 예술제, 태권도

시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예술섬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도전시회, 독도탐방, 홍보자료 제작 배부 등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응하는 우리의 논리 개발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바로 알 수 있는 이론적·학문적인 연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러·일의 전문가들과 동아시아 영토문제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논의하는 학술대회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본 학술대회는 보편적인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각국의 영토정책을 검토하고 향후의 대응전략과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 행사를 주최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와 대한정치학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본 대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학술 활동이 독도 영토주권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기 조 발 제】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Summary〉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와 독도 Territorial Issues in East Asia and Dokdo

이 성 환 (Lee, Sung Hwan) *

I . Modern States and Territory

Every land on earth, except the Antarctic Continent, belongs to a certain state. The Peace of Westphalia signed in 1644 to end the Thirty Years' (Religious) War recognize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countries, and modern states were born based on their territory. At the same time, the creation of modern nation states with territory and sovereignty led to the homogeneity of population tha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states. Through such nation building, territory and nation (people) form an inseparable relation, which is ideologically expressed as nationalism. However, the deterritorialization of the world, along with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since 1980s, led to the emergence of the theory of territorial state extinction, but the real world has ironically seen the strengthened meaning of geographical and spatial territory (actual territory). It also tends to increase territorial disputes. Likewise, the world has moved in two opposite directions: the weakening (relaxation) and strengthening of borders between countries based on territory, and the division and integration of countries. Territorial issues in modern times are not simply the issues of possession, but are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s, people's awareness of territory and the issues of resources, which should

* 계명대학교(Keimyung University)

not be overlooked.

II. Territorial Issues in East Asia – Treaty of San Francisco

The San Francisco System resulted in many regional disputes, and, in particular, territorial disputes. Most of th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today were caused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Japan's territory under the Treaty of San Francisco. The Treaty of San Francisco did not clearly state the range of the territory that Japan should renounce, and countries that should have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which left the issues ambiguous and unsettled and caused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Countries (Korea, China, Russia) that are related to the disposition of the territory stated in Articles 2 and 3 of the Treaty of San Francisco did not participate in the treaty. Territorial issues in East Asia were dealt with without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The generally accepted reason why the Treaty of San Francisco has these vulnerabilities is that the military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were reflected during the Cold War. Even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the San Francisco System in East Asia has not been dismantled, and the territorial issues still remain unsettled. The territorial issues in East Asia, aside from the Treaty of San Francisco, have developed into bilater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China and Japan, and Japan and Russia.

III. Treaty of San Francisco and Dokdo Issues

Article 2(a) of the Treaty of San Francisco did not include Dokdo in the territory that Japan should renounce. Japan interprets that Article 2(a) recognized Japan's sovereignty over Dokdo. Japan's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e letter from Dean Rusk, the former United States Deputy Secretary of State, to the Korean government, in which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was justified. The letter from Dean Rusk, however, was based on the false information that

overlooked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boundary treaty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was formed on the basis of Order of Prohibition to Navigation to Ullung Island and its subordinate Islets' Dokdo(渡海禁止令) in 1699 and the Order of Dajokan Directive(太政官指令) of the Meiji government in 1877.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boundary system, Dokdo was recognized between Korea and Japan as the territory of Korea, and, thus,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did not have legitimacy. Therefore, Japan's claim on its sovereignty over Dokdo by arbitrarily interpreting Article 2(a) of the Treaty of San Francisco based on the Dean Rusk's letter is not valid. This paradoxically results in the conclusion that Article 2(a) of the Treaty of San Francisco provides a basis for Korea's claim on its sovereignty over Dokdo. The manifest meaning of the boundary treaty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Order of Prohibition to Navigation to Ullung Island and its subordinate Islets' Dokdo and the Order of Dajokan Directive lies here.

〈요약문〉

I. 근대국가와 영토

지구상의 육지는 남극대륙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의 영토로 귀속되어 있다. 30년 (종교)전쟁을 종결짓는 1644년의 베스트팔렌조약에서 영토에 대한 주권이 인정되면서 세계는 영토를 기반으로 근대국가로 조직되게 되었다. 동시에 영토와 주권으로 구성되는 근대 국민/민족 국가(nation state)의 형성은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구성원의 동질화를 진행했다. 이러한 국민 만들기(nation building)를 통해 영토와 민족(국민)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념적으로는 내셔널리즘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제화, 세계화와 함께 탈영토화가 진행되면서 영토국가의 소멸론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실 세계에서는 지리적·공간적 영토(actual territory)의 의미가 더욱 강화되고 영토분쟁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세계는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간 경계의 약화(이완)와 강화, 분화와 통합이라는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영토문제는 단순한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상황, 국민들의 영토의식, 자원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II. 동아시아의 영토문제 - 샌프란시스코 조약

샌프란시스코체제는 많은 지역분쟁, 특히 영토분쟁을 남겼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의 대부분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의 범위와 영유권의 귀속국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호한 미해결의 상태로 남겨둠으로써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를 야기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제3조의 영토 처분에 관련된 국가들(한국, 중국, 러시아)은 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사국이 빠진 상태에서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가 처리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체제가 이러한 취약점을 가지게 된 데에는 냉전에 따른 미국의 군사적 전략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샌프란시스코체제는 해체되지 않고, 영토문

제도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는 별개로 한국-일본, 중국-일본, 일본-러시아의 양국 간의 문제로 전이되었다.

Ⅲ.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문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에는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제2조 a항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해석은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딘 러스크 미국무성차관보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딘 러스크 서한은 1699년의 한일국경조약(渡海禁止令)과 1877년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을 축으로 하여 한일 간에 국경조약체제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이 국경체제의 형성으로 한일 간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딘 러스크 서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역설적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축으로 한 한일국경조약체제의 현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 하겠다.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와 독도

I. 근대국가와 영토

1. 국가와 영토 / 국경

지구상의 육지는 1959년의 남극조약으로 영유가 금지된 남극대륙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국경으로 구분되어 어느 나라의 영토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된 영토위에 일정한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이를 국가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에 속하는 국민으로 생활을 영위하며, 국제사회의 주요한 교섭이나 교류도 영토에 기반한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30년 (종교)전쟁을 종결짓는 베스트팔렌조약(1644)에서 영토에 대한 주권이 인정되면서 세계는 서로 구별되는 정치적 단위로 조직되게 된다. 따라서 영토와 주권으로 구성되는 근대 국민/민족 국가(nation state)의 형성은 영토의 획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구분하는 국경은 역사적이며, 인위적인 것이었다. 바다나 강, 산맥 등과 같이 지리적 특징에 따른 국경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정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근대국가들 사이의 지리적·공간적 분할을 영토 또는 국경(state border, national border, territory)이라 한다. 근대 국가에서 영토와 국경은 주권의 통치권역을 포괄하는 정치적 공간으로서 국가 형성의 토대를 이룬다. 다른 국가와의 경계를 의미하는 국경은 국가 간의 힘의 평행선이며, 그것으로 구분되는 영토는 민족/국민의 생존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 과정은 지속적인 영토 또는 경계(국경) 형성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근대국가는 국가의 존속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영토/국경은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지리적, 공간적으로 구분된 국가에서는 질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구성원의 동

질화를 진행한다. 영토에 기반한 이른바 국민 만들기(nation building)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토와 민족(국민)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념적으로는 내셔널리즘으로 나타난다. 근대국가를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nation state)라 부르는 이유이다. 이러한 국민 만들기는 불가피하게 인접국에게도 상응하는 조치를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근대국가는 영토를 지키려는 강력한 방벽을 쌓게 된다. 이러한 지리적, 공간적 구분의 영토/국경은 국가를 단위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심리(아이덴티티) 등의 구분/경계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근대 국가는 국가를 단위로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심리적으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민족은 특정집단과 특정지역 사이의 고유한 관계의 산물로 생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¹⁾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같이하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만으로 조직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영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정치, 지리적 경계와 민족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는 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없는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식민지 지배 등에 의한 인위적인 영토의 확정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토와 정체성의 불일치는 국가(사회)내부의 경계를 만들기도 하고, 국경을 가로질러(cross border) 정체성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국가가 민족국가라는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지리적 국경과 민족적 국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며, 영토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2. 탈영토화 시대의 영토문제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확정된 영토는 불가침의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 경계는 상품, 사람 및 자본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세계의 국제화 및 세계화와 함께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부터 경제를 중심으로 보더레스(borderless)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국경이 없는’, 또는 ‘국경이 없는 것과 같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세계화,

1) 질 발렌타인(박경환 역, 2009) 『사회지리학』 논형, 377쪽.

글로벌리즘 또는 글로벌화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활동과 사람의 이동, 문화의 전이 등이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국경을 넘어, 국가의 틀을 초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상품, 금융, 사람(노동)이 지리적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이동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국제적 자본은 순식간에 세계를 넘나들고,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기업의 다국적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듯한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세계 각국의 상품과 외국인 노동자를 손쉽게 만날 수 있으며, 각국 자본 시장의 투자도 일상화되면서 일정한 영토를 단위로 한 국가의 경계 즉 국경이 해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세계 각국의 정치과정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게 되면서 국가 간의 관계 및 국가의 기능에 까지 상호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각종 기능이 국제사회 또는 다른 나라의 영향(국제협조)을 받으면서 국경조정장치, 각종 정책, 국내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관세나 외환관리제도 등은 소멸되고 있는 국경조정장치에 해당하며, 수입절차, 금융정책, 재정정책, 지적소유권, 세제, 금리 등도 상호침투와 협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변화는 각국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의미의 국경의 개념을 변화시키면서 탈영토화를 촉진하고 있다. 동아시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탈 영토화, 탈 국경화(debording, deterritorialization) 담론은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착목하여 하츠(John H. Herz)는 지리적·공간적 국경을 바탕으로 하는 영토국가는 이미 시대착오적이 되었으며 그러한 국가 시스템은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²⁾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실 세계에서는 지리적·공간적 영토(actual territory)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의 이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세계의 모든 국경에는 검문소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국가는 내부 공간의 영역성을 더 강화한다. 그리고 탈영토화 시대에서도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영향력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영토 분쟁이 빈발하는 데에는 과학, 기술, 지리 등의 발달로 현대에 와서는 쓸모없는 오지(奧地)도 귀중한 가치를 가지게 되

2) John H. Herz(1997), "Rise and Demise of the Territorial State", *World Politics* vol. IX.

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다.

또 영토에 대한 공유의식이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민족의식과 결합하면서 ‘영토 정체성’ 내지는 ‘국경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영토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 정체성이 민족의식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획정이나 신설은 대부분 식민지 국가의 확장, 해체, 붕괴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국주의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서 삶의 지배적 단위는 여전히 민족국가이며 민족과 영토는 개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강한 흡인력과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도서, 쿠릴열도 등을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보이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이상과 같이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 간 경계는 약화(이완)와 강화, 분화와 통합이라는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앞에서 언급한 하츠는 일찍이 주장했던 국경 소멸론을 수정하였다. 소멸이나 쇠퇴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영토국가는 어느 하나 소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생존능력은 예상외로 강하며 신생국가의 등장으로 영토국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는 약 200여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약 70여개의 국가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새로운 영토국가가 그만큼 많이 생겨난 것이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러시아를 비롯한 10여개의 국가로 재형성된 것도 그 예이다. 또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쌓고, 이슬람국가들로부터의 이민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등 국경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영토문제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³⁾

영토문제는 대상이 되는 영토의 중요성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의 양태도 달라진다. 영토의 가치가 높을수록 당사국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⁴⁾ 영토의 가치는 유형적

3)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Wiegand, Krista E., *Enduring Territorial Dispute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1), ch.2 및 ch.3 참고.

가치(tangible value)와 무형적 가치(intangible value)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적 가치는 경제적 자원(natural resources), 안보 전략적 가치, 해양의 소재 여부, 거주민 여부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서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 자원을 들 수 있으며, 도서(섬)의 경우에는 풍부한 어장과 해저 광물자원 등이 해당될 수도 있다. 안보 전략적 가치는 군사 전략적 가치, 해상 수송로 등 영토의 위치 등과 관련된다.

무형적 가치는 해당 국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종적, 민족적, 상징적 가치 등 해당 국가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형적 가치가 높은 영토일수록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적어지고, 해결도 쉽지 않다. 예루살렘 성지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유형의 영토분쟁의 경우는 타협이나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국들은 해결을 시도하려는 그 자체를 꺼리거나 유예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분쟁이 해결되어도 유형적 이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해결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경우 손실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되기 때문이다.⁵⁾ 반면에 유형적 가치와 관련된 영토분쟁의 경우에는 자원의 공유 내지 공동개발 등을 통해 타협과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영토문제는 국민들의 영토에 대한 의식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영토의 식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국의 영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및 태도, 영토 이슈에 대한 담론 등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영토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특히 민족과 영토를 국가의 기본 단위로 하고 있는 근대 국민국가는 영토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문제와 민족주의와 결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영토의식은 실질적으로 영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영토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지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영토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실제적 영토(actual territory)와 구성원들의 그 영토에 대한 의식 또는 인식(perception of territory)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영토의

4) Taylor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5) Todd L. Allee and Paul K. Huth, "The Pursuit of Legal Settlement to Territorial Disput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23, No.4, 2006, p.286.

식의 약화 또는 강화가 국가 간의 영토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토문제에 대한 사회적 행위주체(social actors)의 의식은 기존 영토문제연구에서 간과되어왔다. 영유권 분쟁에 대한 사회 주체의 인식이 정부의 영토(국경)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⁶⁾ 영토의식을 영토 문제의 설명요인으로 상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현상 분석에 머물렀던 영토문제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영토문제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1982년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Falklands/Malvinas War)은 아르헨티나의 군사 독재 정권이 내부 문제를 외부의 위기로 해결하려는 고전적인 정치 수단의 일환이었다고 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군사독재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 등을 잠재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즉각 무력 대응을 결정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등 강력 대처한 대처 수상은 영국인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대처 수상은 이 전쟁의 해결을 바탕으로 1983년에 재집권하는 데 성공하였고, 국내적 개혁정책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군사 정부는 빠르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처럼 영토문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동원의 자산(Domestic Mobilization)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의 도서 분쟁의 사례를 보면, 도서점유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기가 지난 후에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영토에 유형의 자원이 발견되었거나, 국내정치적 상황 변화에 의한 것이다.⁷⁾ 위의 포클랜드 섬에 대해서도 영국이 포클랜드를 점유한 후 90년이 지나서야 아르헨티나는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보수정권이 영토문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며, 한국정부가 독도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도 국내정치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또 러시아가 경제적 어려움이 처할 때 쿠릴열도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비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영토문제가 당사국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항상 국가관계의 핵심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현안이 영토문제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영토분쟁을 외교 전략의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슈연계(issue linkage) 경향이 있다. 영토문

6) Kolossov, Vladimir(2005). "Border Studies: Changing Perspectives and Theoretical Approaches" *Geopolitics* 10, 622-627.

7) 최운도, 배진수(2015), 「민족주의와 영토분쟁」『영토해양연구』 제10호, 117-118쪽.

제가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하기 보다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전개되는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영토는 도전국에 비해 점유국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점유국은 이미 영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최선의 선택이며, 영토에 대한 변화는 국가의 명예나 주권에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점유국은 다른 분쟁에 비해 영토분쟁에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요인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도전국은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다른 현안과 연계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려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영토 분쟁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II. 동아시아의 영토문제—샌프란시스코 체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성립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게 되었다. 일본과의 전쟁을 종결하는 이 조약은 일본제국의 해체를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국가체제와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형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를 샌프란시스코체제라 한다. 이 체제는 이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많은 지역분쟁, 특히 영토분쟁을 남겼다. 이에 대해 하라 기미에(原 貴美恵) 교수는, 전후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의 대부분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⁸⁾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쿠릴열도에서 남극, 미크로네시아, 남중국해에 걸친 광대한 지역을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할 영토의 범위와 영유권의 귀속국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호한 미해결의 상태로 남겨둠으로써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독도문제, 쿠릴열도문제(북방4개섬), 조어도(센카쿠)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의 주장을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영토문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原貴美恵(2005)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アジア太平洋地域の冷戦と戦後未解決の諸問題』, 溪水社.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를 남기게 된 데에는 동아시아의 냉전구조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군사적 전략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미국에 의한 초기의 조약 안은 장래에 영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상세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은 전체적으로 일본에게 엄격하게 전쟁의 책임을 묻고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영토에 대한 귀속 대상국가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8년 유럽에서의 마샬플랜을 시작으로 미국의 반공산주의 정책이 일본에도 파급되면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강화조건이 전환되었다. 특히 한반도의 분단과 1949년 중국의 공산화, 1950년의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과 가치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화와 비군사화, 비산업화를 지향하던 미국의 대일정책은 팽창하는 공산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의 일본의 육성이라는 목표로 전환되었다. 1948년 1월 6일 케네스 C. 로얄 (Kenneth Claiborne Royall) 미 육군장관이 일본을 재군비화 하여 극동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게 한다는 것을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본을 공산세력에 대항하는 최전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반대로 일본에게 공산세력으로 부터의 최후의 방어선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본을 공산주의의 세력 확장에 대항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중심축에 두게 되면서 대일강화조약은 전범국가에 대한 처벌 보다는 일본을 서방진영에 포괄하기 위한 관용적인 정책으로 변용되게 된 것이다.

1949년 중국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미국의 전략은 더욱 강화되었다. 2차세계대전 이전의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위치가 정반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국의 일본점령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은 전범국가 일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조문의 내용도 간결하게 변했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피하고 미국의 전략에 맞춰 간결하게 정리되면서 큰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용은 일본과 관련된 영토문제에 신중한 검토와 수정을 반복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를 미 해결의 문제로 남겨놓게 되었다.

한국으로 귀속될 예정이었던 독도는 일본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했다가 결국에는 조약에서 지워졌다. 후에 센카쿠(다오위디오)문제와 직결되는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중국의 팽창을 막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것으로 되었다.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알타협정의 모호함을 이유로 2개 섬 반환, 신탁통치 등의 구상이 대두되었으나,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둔하는 데 대한 소련(현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하여 일본이 쿠릴 열도 전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만, 쿠릴열도, 남사할린의 귀속국으로 명시되어있던 중국과 소련(현 러시아)도 조약에서 사라졌다. 귀속국이 사라짐으로써 일본이 포기한 영토의 영유권이 어디로 귀속될 것인가가 미해결의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대체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인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제2조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일본이 포기하고 미국이 신탁통치 하에 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조의 한국, 대만,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 이미 연합국 사이에서 귀속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졌었다. 제3조에 있는 영토에 대해서는 일본이 포기한다고 명시되지는 않고 미국이 통치권을 가진 지역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들 영토가 어느 나라에 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했다. 이를 배경으로 제3조에 규정된 지역들에 대한 “잠재적 주권”론이 부각되며, 그 후 실제로 이들 지역은 대체적으로 일본으로 귀속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조약의 제2와 제3조의 영토처분에 관련된 국가들(한국, 중국, 러시아)은 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연합국(미국)과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서명이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당사국이 빠진 미국과 일본에 의한 결정이었던 셈이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체제의 가장 큰 맹점이다. 중국과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영토조항에 관한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러한 취약점을 가지게 된 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전에 따른 미국의 군사적 전략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1950년 1월 12일의 이른바 애치슨라인(미국의 서태평양 방어선)으로 표면화되었다. 오늘날 일본이 주변과 영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 센카쿠(다오 위다오), 북방영토(쿠릴열도) 등은 대체적으로 이 애치슨라인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을 지키는 방어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애치슨 선상에 있는 이들 지역을 지킴으로써 일본을 방어하고, 일본을 확고하게 서방세계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서 독도는 줄곧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즉 한국의 영토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돌변하여 1949년 12월 29일의 초안(6차 초안)에서는 독도

는 일본의 영토로 규정되었다. 애치슨라인이 선언되기 불과 보름전의 일이다.

센카쿠 역시 독도와 거의 같은 경로를 밟는다. 1947년 3월에 국무성 극동국에서 작성된 최초의 대일강화조약초안에는 오가사와라 제도 및 남방제도와 함께 오키나와는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은 오키나와와 일본의 관련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및 소련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군부의 전략이 작동한 결과였다. 여기에는 장개석의 중국이 오키나와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영향을 미쳤다. 1949년 10월 중국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오키나와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일본을 서방진영의 일원으로 묶어두고, 공산 세력에 대한 방어선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커진 것이다. 미국의 오키나와정책은 미국의 냉전정책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북방영토는 대일전 참전의 대가로 소련에 양도를 약속한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을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오키나와는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냉전전략의 일환으로 독도와 센카쿠 등의 영유권 문제는 일본에게 유리한, 그러면서도 애매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즉 미국의 냉전정책이 동아시아 영토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을 축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지역의 냉전체제가 붕괴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관계없이 진행되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가 아닌 양국 간의 문제로 변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도문제역시 샌프란시스코 조약과는 관계없이 한일 간의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다.

Ⅲ.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문제

1.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동아시아의 영토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체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형태로 결정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며, 한일 간의 독도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활용하여 일본은 1699년 일본의 도해금지령이후 현재까지 3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유리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⁹⁾

2013년 10월 16일 일본 정부는 “여러분, 다케시마를 아십니까”라는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현재는 10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¹⁰⁾ 동영상에서 일본은 17세기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1905년에 이를 재확인했다. 그 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 독도를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국무차관보 딘 러스크가 한국정부(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서한을 근거하여 하여,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할을 인정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독도 영유권이 결정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그 이전의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쟁점들(1699년의 도해금지령, 1877년의 태정관지령,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의 불법성 등)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은 현재 한일 간의 독도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제2조 a항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은 아전인수식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각각 자국의 영토로 인정받았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¹¹⁾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제2조 a항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독도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역이 아니고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는 것이

9) 정병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독도연구』 제18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138쪽.

10) <http://www.youtube.com/watch?v=jLzmfE3yMXk>(검색일 2018.7.15)

11) 신용하(2005)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38~39쪽.

일본의 주장이다.¹²⁾ 문언적으로 보면,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제2조 a항으로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독도 영유권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일본의 주장은 앞에서 언급한 1951년 8월 10일자로 딘 러스크 미 국무성 차관보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서한을 주요한 근거로 하고 있다. 1951년 7월 19일자로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일본이 포기해야 할 도서들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더하여 독도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2조 a항에서 독도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딘 러스크 서한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 섬에 관련하여,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혹은 타케시마 혹은 리앙쿠르암으로도 불리는, 정상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암석체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은 전혀 없으며, 대략 190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시마네 현 오키섬 지청 관할 하에 있었다. 한국이 1905년 이전에 그 섬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¹³⁾

요약하면,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 이후에 독도는 일본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위의 서한에 의하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이 명확하고,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시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딘 러스크 서한은 “우리(미국)의 정보에 의하면”이라는 단서를 전제로¹⁴⁾ “한국이 1905년 이전에 그 섬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며, “1905년부터 지금까지 (독도는) 일본 시마네 현 오키섬 지청 관할 하에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조치 이후의 독도에 대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이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12) 이석우, 위의 책, 18쪽.

13) 딘 러스크 서한은 인터넷 상에서 원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ttp://blog.daum.net/hangun333/3143>(2018.6.11. 검색)

14) 정병준 앞의 논문, 156, 160쪽; 정병준(2010) 『독도 1947』 돌베개, 775~786쪽.

이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가 부당하거나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미국은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독도를 제외하였다는 것이 되며, 나아가 된 러스크서한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도 의미를 상실한다. 반대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의 “일본이 포기한 한국이라는 개념 속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¹⁵⁾ 국제적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인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함의(해석)의 근거가 러스크 서한에 의존하고 있다면, 러스크 서한의 (독도-인용자)인식의 진위를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1905년 전후의 독도를 둘러싼 사실(史實)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⁶⁾ 이는 “한국이 1905년 이전에 그 섬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러스크 서한의 내용이 사실(史實)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이며, 이에 기초하여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일본의 독도영유권 확보로 연결짓는 일본의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1905년 전후의 독도에 대한 관할권이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쪽에 있었느냐는 점으로 수렴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1905년 이후 일본의 독도 관할권을 부정하고 있다.¹⁷⁾ 이는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불법성은 지적할 수 있으나, 1905년 이전의 한국의 독도관할권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다른 논문에서 주장한 한일국경조약체제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관련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한일국경조약체제

1693년 일본정부로부터 울릉도에서의 조업권을 허가 받은 일본 어민이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안용복을 납치해 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교섭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을 일본

15) 이석우(2005)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영토 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7호, 135쪽.

16) 池内敏(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300쪽.

17) 최철영(2017) 「1905년 일본정부 「각의결정」 등의 국제법적 검토」 『독도연구』 제23호.

에서는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이라 하고, 한국에서는 울릉도쟁계(鬱陵島争界)라 한다. 그 결과 1699년 일본 정부는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조선정부에 전달했다. 이로써 약 70여년 간 계속되었던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의 어로활동은 금지되었고([울릉도]도해금지령), 조선과 일본 정부 간의 합의로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이 확정되었다. 울릉도가 조선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므로 도해금지령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조선 영토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울릉도)도해금지령의 대상이 울릉도에만 한정된 것인가, 독도를 포함한 것인가이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있어 독도는 울릉도로 가기위한 항행의 표지 또는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699년의 도해금지령 이후 일본인의 독도 도해는 중지되었다. 따라서 도해금지령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일본은 울릉도와 함께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독도의 존재와 함께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며, 또 그 이후 일본의 공적 자료¹⁸⁾와 최근의 연구에서¹⁹⁾ 도해금지령이 독도도해금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1699년의 도해금지령은 독도와 울릉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도해금지령은 한일 간의 국경조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699년의 도해금지령으로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1877년의 이른바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지령’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메이지정부의 국가최고통치기구(the Supreme Council of State, the Grand Council of State)인 태정관은 1877년 3월 울릉도와 독도(竹島外一島)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취지의 지령을 발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를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²⁰⁾ 그리고 일부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태정관의 지령이 독도가

18) 박지영(2017) 「일본 산인 지방민과 울릉도 독도 도해금지령에 대하여」『독도연구』 제23호, 381-385쪽.

19) 池内敏(2012) 『竹島問題とは何か』名古屋大学出版会, 36쪽.

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ealjoys&logNo=51073834>(2018.3.1. 검색).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령문의 외일도(外一島)가 독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²¹⁾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

일본정부가 태정관지령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76년 메이지정부 내무성은 전국적인 지적(地籍)편찬을 위해 시마네 현에 울릉도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시마네 현은 1699년의 도해금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가 되었으나, 이는 당시 막부의 잘못된 조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 잡아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무성에 올렸다. 이를 받은 내무성은 전말을 알기 위해 도해금지령이 나오기까지 한일 간에 오고간 외교문서(서계)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약 6개월 간의 조사를 마친 내무성은 1699년의 도해금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인정되었다는 결론을 얻고,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이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상신하였다. 내무성의 상신을 받은 태정관은 1877년 3월 최종적으로 “질의를 취지와 같이, 죽도 외일도(울릉도와 독도)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伺之趣竹島外一島ノ儀本邦關係無之儀ト可相心得事)”이라는 지령을 발했다.

이상의 과정을 살펴보면, 태정관지령은 1699년의 도해금지령을 승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태정관지령은 도해금지령이라는 한일 간의 국경조약을 국내법령체제로 수용(adoption)한 것이다. 태정관지령을 통해 일본은 조선과의 사이에 성립한 국경조약을 이행해 가겠다는 강력한 국가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일본은 울릉도 쟁계에서의 한일 간의 합의(국경조약)를 지켜가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법령체제를 갖춘 것이 된다. 이로써 1699년의 국경조약(도해금지령)과 1877년의 태정관지령을 축으로 한일 간에는 국경체제(regime of boundary)가 형성된 것이다. 이를 필자는 ‘조일(朝日)/한일국경조약체제’라 명명했다.²²⁾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한일 간에는(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1699년의 국경조약이, 일본 국내적으로는 태정관지령이 직접 작동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21) 대표적으로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태양주국북동아시아과 『竹島問題10ポイント』의 point 4이다.

22) 이성환(2017) 「朝日/韓日국경조약체제와 독도」『독도연구』 제23호.

3. 한일국경조약체제의 전개

이 국경조약체제는 적어도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때까지 유효하게 작동, 유지된다. “한번 합의되면 국경은 지속된다(once agreed, the boundary stands)”는 국경의 현상유지원칙, 그리고 국경은 안정성과 영속성(stability and permanence)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정변경의 원칙조차 적용되지 않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에 비춰보면²³⁾ 1877년에 형성된 한일국경조약체제는 영속성을 가진 역사적 체제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 국경조약체제는 실제로 그 후 어떻게 작동되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정관지령의 준비를 위해 내무성이 울릉도쟁계를 조사하고 있을 즈음, 1877년 1월부터 시마네 현 사족(士族) 도다(戸田敬義)는 동경도 지사에게 몇 번에 걸쳐 죽도도해원(竹島渡海之願)을 제출했으나, 태정관지령이 나온 직후인 6월 8일에 각하되었다.²⁴⁾ 이케우치 사토시(池内 敏)는 이를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있는데,²⁵⁾ 이는 도해금지령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81년 11월 12일 시마네 현 지사가 내무성에 제출한 ‘송도개척원(松島開拓願)’ 역시 태정관지령을 근거로 각하된다. 개척원을 접수한 내무성은 울릉도쟁계에 관련된 문서를 첨부하여 외무성에 최근 조선정부와 새롭게 교섭을 한 사실이 있는가를 문의한다. 12월 1일 외무성은 “조선국 울릉도 즉 죽도와 송도(朝鮮國鬱陵島即竹島松島)에 대한 특별한 변경[교섭]이 없다고 회신한다. 외무성의 회신을 기초로 내무성은 1882년 1월 31일자로 시마네 현에 “최전지령(最前指令, 1877년의 태정관지령-인용자)과 같이 죽도와 송도(울릉도와 독도)는 본방(本邦)과 관계가 없으므로 개척원의 건은 허가할 수 없다”고 각하하였다.²⁶⁾ 내무성이 외무성에 조선과의 새로운 국경교섭의 유무를 확인한 것은 국경조약을 수용한 태정관지령은 조선과의 교섭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기

23) 이근관(2010) 「통일 후 한-중 국경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5(4), 135쪽.

24) 北沢正, 『竹島考証』(1881); Web竹島問題研究所, “戸田敬義と「竹島渡海之願」”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takeshima04-230728.html> (검색일: 2017.6.25.)

25) 池内敏, 앞의 책, 72쪽.

26) 杉原隆 「明治10年太政官指令-竹島外一島之儀ハ本邦關係無之をめぐる諸問題」, 竹島問題研究会『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平成23年2月)』, 15-16쪽.

때문이다. 외무성이 ‘특별한 변경’이 없다고 함으로써 1699년에 성립한 국경조약(도해금지령)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한 태정관지령도 유효하다는 것을 뜻한다.

조선정부는 1880년 원산진 개항을 앞두고, 1879년 10월 임한수를 강원도관찰사로 임명하고 울릉도 등의 관방(關防)책을 마련하도록 했다.²⁷⁾ 1881년 5월 임한수로부터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무단으로 벌목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받은 조선정부는 6월에 예조판서 이회정의 이름으로 이노우에 가오루 일본 외무경에게 “일찌기 서계를 올려 귀 조정에서 특별히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중략)… 귀 조정에서 미처 금령을 세우지 않아서 백성들이 아직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를 금지하라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1699년의 도해금지령을 근거로 하여 조일국경조약체제를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같은 해 10월 조선정부에 일본인을 철수하고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겠다는 회답을 보내고,²⁸⁾ 동시에 태정대신(太政大臣)에게 1699년의 도해금지령에 의거하여 일본인의 도해금지를 포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²⁹⁾

또 조선정부는 1882년 5월 이규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울릉도에 침입해 있는 일본인(77명)의 철수를 요구하는 등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 개척에 착수하였다. 조선의 울릉도 개척에 호응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철수에 착수하고, 1883년 3월 1일 “울릉도 (우리나라 사람은 죽도 또는 송도라 부름-원주)가 조선국의 판도임은 이미 원록 연간(1699년-인용자)에 우리 정부와 조선 정부 사이에 의정(議定)한 바”이므로 “앞으로 잘못알고 있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관은) 관하 인민에게 고유(告由)”하라는 유달(諭達)을 발포했다.³⁰⁾ 그리고 태정대신은 사법경에게, 울릉도에 도항하는 자들을 조일무역규칙 제9칙(則) 및 형법 제373호(1월 이상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따라 처벌하도록 각 재판소에 지시하도록 했다.³¹⁾ 처벌규정이 없는 도해금지

27) 고종실록, 고종 16년(1879년) 8월 4일. 박은숙(2012)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영해인식-울릉도·독도인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6호, 98쪽.

28) 구한국외교문서 제1권, 日案1, 문서번호74(1881.7.26.), 75번(1881.10.24.); 박은숙, 앞의 논문, 99쪽.

29) 池内敏, 앞의 책, 73-74쪽.

30) 일본외교문서(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 「朝鮮国蔚陵島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処分一件」; 池内敏, 앞의 책, 73쪽 재인용.

31) <http://blog.naver.com/cms1530/10015986629>(검색일 2018.4.25.).

령과 태정관지령으로 형성된 국경조약체제를 강제하기 위해 조일무역규칙과 형법을 적용한 것이다.

일본인의 철수를 위해 울릉도에 파견된 아마구치 현의 아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의 북명서(1883년 9월)에 실려있는 울릉도에서의 조선 관헌과 일본인의 대화록에도 도해금지령에 대한 당시 일본인들의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만국공법(국제법)상의 무인도(무주지)로 간주한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선 관헌이 “일본 정부에 조화를 하겠다”고 하자 일본인들은 “울릉도는 귀국(조선)의 땅이라는 조선과 일본 정부 사이의 조약(條約)이 있으므로”라며 철수했다.³²⁾ 여기에서 ‘조약’은 1699년의 도해금지령을 가리킨다. 울릉도에 도해한 일본인들이 직접 ‘조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699년의 도해금지령이 곧 국경조약이라는 인식이 당시 일본인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침투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 후 울릉도 도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대신은 “막부이래 그 귀속이 결정(從前彼我政府議政)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재판소의 처치를 허용하면” 조선정부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일본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에 항의했다.³³⁾ 이노우에의 인식은 도해금지령이 단순히 일본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적어도 1880년대까지 조일국경조약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한일 간에는 국경변경에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없었다.

4.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일국경조약체제

이상과 같이 조일국경조약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은 독도 편입을 결정을 했다. 조일국경조약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스스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각의 결정에서 독도 편입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무주

32) 木京睦人 「明治十六年『蔚陵島一件』」『山口県地方史研究』 第88号 2002年10月, 81쪽.

33) 일본외교문서 제16권 133쪽 附記1. 木京睦人 「明治十六年『蔚陵島一件』」『山口県地方史研究』 第88号 2002年10月, 74쪽.

지 선점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일국경조약체제와 무주지론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 편입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또 다음으로는 행정 명령 내지는 행정 조치에 지나지 않는 각의 결정으로 조일국경조약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경조약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태정관지령 및 1699년 국경조약과 각의결정의 효력의 상하관계를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내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99년의 국경조약 역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이며, 이에 기초한 태정관지령 역시 조약의 의미를 내포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일종의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각의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가진 태정관지령과 조약의 성격을 가진 태정관지령을 무효화할 수 없다. 환언하면, 각령(閣令)이 법률(태정관지령)을 변경내지 폐기한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³⁴⁾ 또 일본 내각의 독도편입 조치는 조약(도해금지령)의 파기에 해당한다. 조약 파기 결정은 일방적으로도 가능하나,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약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고를 해야 하고, 통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³⁵⁾ 일본은 조일국경조약을 파기하는 독도 편입을 조선 정부에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 파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딘 러스크 서한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05년 시점에 태정관지령과 도해금지령을 기초로 한 조일국경조약체제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편입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독도가 ① “190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시마네 현 오키섬 지청 관할 하에 있었다.” ② “한국이 1905년 이전에 그 섬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는 딘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의미를 상실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가 지적한 1905년 전후의 ‘사실(史實)’과 부합하지 않는다.³⁶⁾

34) 여기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태정관지령과 각의 결정의 효력의 상하관계에 대한 보다 세련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 조약의 국내수용 이론에 대한 이론적 구성이 필요하다.

3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적어도 12개월 전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36) 池内敏, 앞의 책, 『竹島問題とは何か』에서 “결국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가 딘 러스크 서한에 의거하고 있다면, 딘 러스크 서한에 내포된 인식의 진위를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1905년 전후의 독도를 둘러싼 사실(史實)의 재검토를 요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300쪽).

설령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905년의 각의 결정의 시점까지 조일국경조약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는 1905년 이전에 일본에 의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에 의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에는 충분하다. 따라서 “(독도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은 전혀 없”었다는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정당하고, 또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할 한 적이 없다는 두 가지 점을 전제한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이석우 교수가 지적한, 1905년 이전에 독도가 사실상 한국령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부정되고,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³⁷⁾

결론적으로 말하면,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이 아니라는 해석, 즉 제2조 a항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역설적으로 확대해석을 하면,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태정관지령을 축으로 한 조일/한일국 경조약체제의 현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 하겠다.

37) 이석우(2007)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집문당, 202쪽.



【 제 1 부 】



“일본과 중국의 영토정책”



日本の領土問題と情勢

Japanese Territorial Issues

参議院議員 森本真治
(Member of House of Councilors Shinji Morimoto)

1. 内閣府の領土問題に関する国民の意識調査(韓国)



- 1) 竹島という島が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か
⇒ 知っている 97.3%
- 2) 竹島は、日本の固有の領土であること
⇒ 知っている 78.7%
- 3) わが国は、韓国側が竹島に何らかの措置を行う度に
抗議している
⇒ 知っている 59.5%
- 4) 竹島は島根県に属する
⇒ 知っている 58%

2. 長崎大学・地理教育における領土教育の重要性 (大学生を対象とした認識調査)



- 1) 領土問題の関心度
⇒ かなりある 6.4%、まあまあある 50.8%、無関心 42%
- 2) 今後、領土教育の充実の必要性
⇒ かなりそう思う 32%、まあまあそう思う 56.8%
- 3) 竹島問題の解決方法
⇒ 国際司法裁判所(ICJ)に付託 33.1%、
首脳会談など話し合い 29.4%

3. 文部科学省の領土教育



文部科学省では2014年1月、
わが国の領土問題に関する教育等の一層の充実を図る。

- 1) 小学校の社会の全ての教科書に、
北方領土、竹島、尖閣諸島について記述。
- 2) 中学校の社会(地理的分野)の全ての教科書に、
北方領土、竹島、尖閣諸島について記述。
- 3) 高等学校の地理の全ての教科書に、
北方領土、竹島、尖閣諸島について記述。
- 4) 文部科学省は2022年からさらに
領土教育の拡充を求める方針。

4. ロシアとの北方領土問題



1) 北方四島はこれまで他国の領土になったことはない。わが国の固有の領土。

2) 北方四島の帰属問題を解決し、平和条約の締結をめざすことが基本的なスタンス。

・北方四島における共同経済活動

(海産物養殖、温室野菜栽培、風力発電、ゴミ減容対策、観光等)。

・元島民のための人道的措置

(元島民とその家族の航空機による墓参り等)。

・北方四島に関する渡航への枠組み

(日本人と四島在住のロシア人との交流、元島民とその家族のふるさとへの訪問等)。

5. 韓国との竹島問題



これまで日本政府は、国際司法裁判所(ICJ)への付託を四度も提案。

国際法に則った平和的な形での解決をめざす。

6. 尖閣諸島情勢



1) そもそも尖閣諸島には領有権問題は存在しない。

2) 近年、中国の海洋進出が著しく、わが国の固有の領土である尖閣諸島付近でも活発化。

7. 安保法制に対する国民民主党の立場



- ・ これまで歴代内閣は、集団的自衛権は、
国際法上保有、憲法上行使不可の立場であった。
領域警備法等を制定し、専守防衛を堅持する。

〈Summary〉

다오위다오 열도(釣魚島列島)귀속에 대한 고찰: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Discussion about the Jurisdiction of Diaoyudao Islands(釣魚島列島):
Based on Facts and Laws

유 강 영 (劉江永, Liu, Jiangyong)*

1. China's evidence for the jurisdiction of Diaoyudao

(1) Diaoyudao was not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yukyu Kingdom (琉球國).

Okinawa Prefecture used to belong to the Ryukyu Kingdom until 1872, and was not Japan's sovereign territory. Diaoyudao was also not part of the Ryukyu Kingdom, but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s that Diaoyudao is Japan's sovereign territory. Diaoyudao Islands were officially incorporated into the territory and maritime defensive perimeter of China during the Ming dynasty. In 1372, the Hongwu Emperor, personal name Zhu Yuanzhang (朱元璋), sent Yang Zai (楊載) to the Ryukyu Kingdom as an envoy. In the same year, The king of Zhong Shan (中山王) of the Ryukyu Kingdom was fully invested and began to pay a tribute to China.

(2) Diaoyudao was first discovered and named by a Chinese.

In 《Zhinan Guangyi (指南廣義)》, written in 1708 by Tei Junsoku (程順則), a

* 중국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 교수(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Tsinghua University in China)

Confucian scholar of the Ryukyu Kingdom, there were 4 courses connected to Diaoyudao between Ryukyu and Fujian province.

(3) Twenty years before the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ously acknowledged that Diaoyudao was the annexed islands of Taiwan.

Evidence 1: In 《Waterways in Taiwan(台湾水路志)》 compiled by the Waterway Department of the Navy Ministry of Japan in 1873, Diaoyudao was written as the annexed islands of Taiwan.

Evidence 2: On the map of 《Qing Dynasty Coastal Provinces (清國沿海諸省)》 produced by Yanagi Narayoshi (柳 檣悅) of the Navy Ministry of Japan in 1875, Diaoyudao was incorporated into Taiwan of China.

No one raised objections to the map, and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lso acknowledged the fact.

Evidence 3: The maps of Taiwan and its northeastern islands in 《Waterways in the East China Sea (支那海水路志)》 compiled by the Navy Ministry of Japan in 1892 included Diaoyudao and Chiwei Yu.

Evidence 4: There was no record about Diaoyudao and 'Senkaku Islands' in 《The Complete Map of Ryukyu, Okinawa Prefecture (日本冲繩縣管内全圖 琉球全國)》 published in March, 1894. The map was revised in May, 1895, and, still, there was no record about Diaoyudao.

2. Japan secretly occupied Diaoyudao and Huangwei Yu(黃尾嶼)during the Sino-Japanese War.

(1) The results of studies conducted under the direction of Yamagata Aritomo (山縣有朋), the Japan's Minister of Home Affairs in 1855, and Inoue Kaoru (井上馨), Japan'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n October, 1885 show that Japan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shows Diaoyudao belonged to Ryukyu until May, 1894.

(2) Japan started the Sino-Japanese war in July, 1894, and decided to occupy

Penghudao (澎湖島) on January 13, 1895. The Ito Hirobumi (伊藤博文) cabinet secretly decided to incorporate Huangwei Yu (Kuba Jima (久場島) in Japanese) and Diaoyudao (Uotsuri Jima (魚釣島) in Japanese) into the jurisdiction of Okinawa on January 21.

3. The Diaoyudao issue should be handled according to relevant laws and agreements.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follow the 1943 Cairo Declaratio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in 1945, Article 3 of the China–Japan Joint Communique in 1972, the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Japan and China in 1978, and the China–Japan Joint Communique in 1998 and 2008.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s the Treaty of San Francisco signed in 1951 as the basis for the legal possession of Diaoyudao, but China opposes and argues the invalidity of the treaty in which China did not participate.

4. The evidence presented by Japan lacks legal grounds.

(1) The literature produc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Taiwan is no longer valid since a long time has already passed.

(2) 《The World Maps》 published in China in 1958 and 1960 were insufficient to be chosen as evidence.

(3) China produced the map of Taiwan Province that includes Diaoyudao (釣魚島), Huanwei Yu (黃尾嶼) and Chiwei Yu (赤尾嶼) in 1965.

(4) 《Ryukyus’s fight against the occupation of the United States (琉球人民反對美國占領的斗爭)》(《People’s Daily》, January 8, 1953) has no signature of the author, only with a footnote written as “reference”, which cannot represent the posi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or the newspaper.

〈요약문〉

－. 다오위다오 귀속에 대한 중국의 증거

(一) 다오위다오는 류큐국(琉球國)영토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오키나와현은 1972년 이전 류큐국이 였으며, 근본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었다. 다오위다오 역시 류큐(琉球)의 일부가 아니었는데, 오늘날 일본 정부는 다오위다오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이는 완전히 논리에 맞지 않다.

다오위다오 열도는 명대(明代)에 중국 판도와 해양방어권에 정식으로 편입되었다. 1372년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양재(楊載)를 파견하여 류큐국에 사신으로 보냈다. 같은 해 류큐국 중산왕(中山王)은 입궐해 책봉 받기를 헤아렸고, 중국에 조공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류큐는 양국 해상의 경계가 츠웨이위(赤尾嶼)와 구미지마(久米島) 사이의 류큐 해구(海溝)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二) 다오위 다오는 중국인이 먼저 발견하고 명명하였다.

1708년 류큐의 대학자 데이 청순저(程順則)가 저술한 《지남광의(指南廣義)》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류큐와 복건성 사이를 오가다 보면, 4개의 다오위다오와 연결된 항로가 존재했다. 중국 서적 침부(針簿)의 글에 빌리자면; 열 개의 노선은 “36개 성(姓)”이라는 판본으로 전해졌다.(명조 홍무 25년, 1392년)

(三) 갑오전쟁 20년 이전 일본 정부는 다오위다오가 중국 대만의 부속도시라는 것을 줄곧 인정하였다.

증거 1 : 1873년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편찬한 《대만수로지(台灣水路志)》에 다오위다오는 대만의 부속 도서라 기재되어 있다.

증거 2 : 1875년 일본 해군선 수로로 대령 야나기 나라요시(柳 檣悅)가 제작한 《청국연해제성(淸國沿海諸省)》지도에는 다오위 다오 열도는 중국 대만에 편입되어있다.

임시 외무성 관원 코노 세쓰겐(河野 雪巖)은 외무대신의 명을 받들어, 그림을 상세히 확인하고 보충하여 개정하였다. 지도를 공시하고 난 후, 그 누구도 틀린 것을 지적

하지 않았다. 코노 세쓰겐(河野 雪巖)은 원래의 지도를 해남도(海南島)의 경주(瓊州), 대만의 담수(淡水) 두개의 항을 보충하였다. 이 설명은 일본 외무성 역시 다오위다오가 중국에 속한 것이라 승인한 것이다.

증거 3 : 1892년 일본 해군성이 편찬한 《지나해수로지(支那海水路志)》에서는 대만 및 대만 동북제도의 도표에서도 역시 다오위다오와 츠웨이위를 포함하고 있다.

증거 4 : 1894년3월 발행한 《일본 오키나와현 관내전도 류큐전도(日本冲繩縣管内全圖 琉球全國)》에서 다오위다오 혹은 “센가쿠 제도”에 대한 기재는 없었었다. 이 지도를 1895년 5월, 즉 《시모노세기조약》성명 이후 개정하고 재판하였는데, 여전히 다오위다오는 그려져 있지 않았으며, 관련 해역 역시 오키나와 밖으로 배제되었다.

二. 일본은 갑오전쟁 중 비밀리에 다오위다오와 황웨이위(黃尾嶼)를 점령하였다

(一) 1855년 일본 내무경(內務卿) 아мага타아리도모(山縣有朋)의 밀명으로 조사한 다오위다오에 관한 결과, 1885년 10월 임시 일본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가오루(井上馨)의 조사 결과로 부터 본다면 1894년 5월에 이르기 까지 일본은 다오위다오가 류큐에 소속되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二) 1894년 7월 일본은 갑오전쟁을 일으키고, 1895년 1월 13일, 일본군은 위해를 공격하여 점령한 후 팽호 점령을 결정하였다. 같은 해 1월 14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은 전쟁의 결속을 기다리지 않고 지체할 겨를도 없이 비밀리에 “내각결의”를 작성하였는데, 1월 21일 성명 수속을 완성하고, 황웨이위 (일본어명: 구바시마久場島), 다오위다오우 (일본어명: 오쓰리시마 魚釣島)를 오키나와 관할로 편입시키고, 표지를 세울 것을 비밀리에 결정했다.

三. 다오위 다오 문제는 법률과 합의에 근거하여 처리해야한다.

일본정부는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 제8조, 1972년 《중일공동성명》 제3조,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공동선언》, 2008년 《중일공동성명》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다오위다오의 법적소유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중국은 중국의 참여를

시작부터 배제시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을 반대하고, 합법적이지 않으며, 무효하다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도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과 중국대만의 반대에 마주하였기 때문에, 1971년 6월, 미국의 닉슨 정부는 일본에게 댜오위다오의 시정권만을 넘겨주었다.

四. 일본 측이 말하는 증거는 근거가 부족하다

(一) 일본의 대만 식민통치 시기의 문헌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성립되기 어렵다.

(二) 1958년, 1960년 출판한 중국《세계지도 집》은 증거로 삼기에 불충분 하다.

(三) 1965년 중국은 댜오위다오(釣魚島), 황웨이위(黃尾嶼), 츠웨이위(赤尾嶼) 를 포함한 대만성 지도를 제작하였다.

(四) 《류큐인들의 미국 점령대 대한 반대 투쟁(琉球人民反對美國占領의 斗争)》

(《인민일보》는 1953년 1월 8일)은 저자의 서명이 없는 글이고 “자료”라는 문구로 주(注)를 달고 있어 중국정부나 신문사의 입장을 대표할 수 없다.

다오위다오(釣魚島)귀속에 대한 고찰 :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중일 양국 간 평화와 우호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다오위다오(釣魚島)귀속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연구자로서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 귀속에 대한 고찰 :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Diaoyu Islands: Facts and Legality)》를 집필 하였다. 전문 60여 만자, 첨부 그림 200여장으로 구성 된 이 책은 2016년 10월 중국인민 출판사로부터 출판되었다. 본 논문은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색출하여 국제법적 시각에서 몇몇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진행하고자 한다.

一. 다오위다오(釣魚島) 중국에 귀속되어 있다는 증거

2016년3월 일본내각의 의뢰로 “센카쿠제도(尖閣諸島; Senkaku-shotō) 관련 자료조사위원회”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에 따르면 다오위다오(釣魚島)는 고대 류큐국(琉球國)(오키나와 현)의 섬이 아니라는 사실이 결론으로 적혀있다. 원문을 번역하면 이와 같다: “고대 류큐(琉球) 시대는 북단의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남단의 하테루마시마(波照間島)、동단의 오키나와시마(沖繩島)、서단의 요나구니시마(与那國島)까지의 영역이며 무인도인 다이토제도(大東諸島)와 센카쿠제도(다오위다오 열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대이전, ‘센카쿠제도’는 류큐(琉球)의 소속이 아니었으며, 또한 류큐(琉球) 이외의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¹⁾

위에서 서술한 일본 조사보고에 의하면, 다오위다오열도(釣魚島列島)는 류큐(琉球)소관이 아니었으며, 류큐왕국의 영토의 범위에 속하지 않았다. 주의할 점은 500년 역사의 류큐왕국 역시 본래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본은 1879년 류큐를 침략해

1) 헤이세이(平成) 27년도(2016년) 내각정부 위탁조사 센카쿠제도와 연관된 자료조사 보고서, <https://www.cas.go.jp/jp/ryodo/img/data/archives-sen>

점령하고 오키나와 현으로 개칭한 지 16년 만에, 비밀리에 다오위다오 열도를 강점했다. 현재 일본은 되려 다오위다오(釣魚島)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강경하게 말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히 논리에 맞지 않는다. 상술한 보고서는 다오위다오 열도가 류큐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다.

(一) 다오위다오(釣魚島)는 류큐국(琉球國)에 소속되었던 적이 없으며 중국의 관할 영역에 속해 있었다.

다오위다오 열도(釣魚島列島)는 늦어도 명대(明代)부터 중국의 영토 및 해안 방위권에 정식으로 편입되었다. 중국 사료 기술에 근거하면, 1372년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양재(楊載)를 사신으로 류큐에 파견했고 같은 해에 류큐(琉球)의 중산왕(中山王)은 입궐하여 봉책을 받기를 해아렸으며, 중국에 조공하기 시작했다.

1373년 명조 대장 장혁(張赫)과 우정(吳禎)이 일찍이 해상을 순찰하여 왜구를 류큐 해역까지 몰았다. 이때부터 류큐는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 1372년부터 1872년까지 중국과 류큐 양국은 긴 500년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양국의 해상 경계는 츠웨이위(赤尾嶼)와 구메지마(久米島) 사이의 류큐 해구(海溝)에 존재했으며 섬 영유권에 대한 분쟁은 없었다. 1872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류큐국을 “류투번(琉球藩)”으로 부를 것을 강요했고, 1979년에는 철저히 류큐를 병탄했으며, 오키나와 현으로 개칭해 불렀다. 하지만 당시의 오키나와 현 판도는 다오위다오, 황웨이위(黃尾嶼), 츠웨이위(赤尾嶼) 등의 섬을 포함하지 않았었다.

(二) 다오위다오(釣魚島) 항로는 중국이 우선 발견하고 류큐인에게 전했다.

중국 명조의 영락 원년(1403년) 전후로 편찬된 《순풍상송(順風相送)》에는 황웨이위(黃尾嶼), 츠웨이위(赤尾嶼)의 해상항로에 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있다.

1708년 류큐의 대학자 데이준소쿠(程順則)가 저술한 《지남광의(指南廣義)》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류큐와 복건성 사이에는 네 갈래의 다오위다오와 연결된 항로가 존재했다. 중국 서적 《36개 성(姓)》의 침부(針簿) 판본에는; 열개의 항로가 존재한다고 전해졌다. 이는 중국 측이 류큐인 보다 먼저 다오위다오를 발견했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다오위다오를 명명 짓고 이용 했다는 의미와 같다.



그림 1-1. 중국명조(1403년)의 《순풍상송(順風相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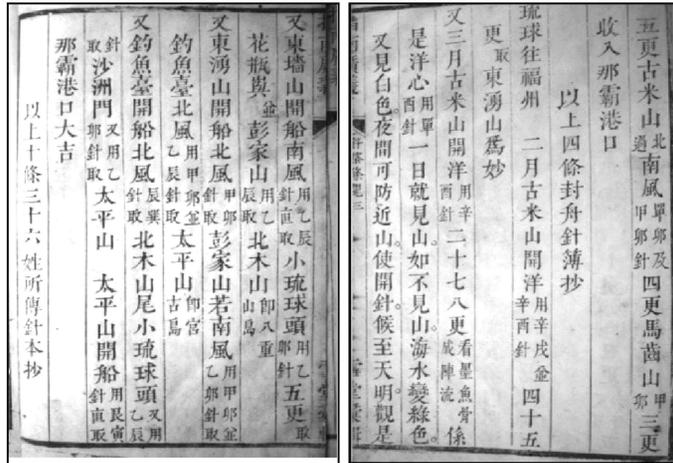


그림 1-2. 데이 준소쿠(程順則)가 1708년 저술한 《지남광의(指南廣義)》

1683년, 중국 청나라 책봉사(冊封史) 왕즙(汪楫)은, 류큐를 오가는 책봉주(冊封舟)에 오르기 전, 다오위다오 해상의 항로를 류큐 뱃사공에게 알려주었다. 이 사실은 데이준소쿠(程順則)의 《지남광의(指南廣義)》에 기재되어 있는데 원문은 아래와 같다 :

해상 항로 전수 경위에 대한 고증:

강희(康熙) 계해년(1683년), 책봉주(冊封舟)가 중산(中山)에 이르렀는데, 출항 담당자는 마음씨가 선량한 복건성 사람이었다. 그는 수세, 도서의 지형, 항로 등을 기록하

고 있는 항해침법(航海針法)을 류큐 뱃사공에게 전수하였으며 또한 뱃사공에게 아래와 같은 이 책의 기원을 알려 주었다.

명조 영락 연간에 관원 정화(鄭和), 이개(李愷), 양민(楊敏) 등의 사람이 동양과 서양에 사신으로 간 시기, 항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하여 항해에는 위험 요소가 많았으며, 의외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사 연구에 착수하여, 항해에 관한 주의 사항을 편집하였는데 그 결과물로 이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현재 류큐가 중국에게 공납하는데 필수적으로 항로를 알 필요가 있으며, 이 책을 잘 익혀야하며 분명 유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단지 이 책이 아주 오래되어 어떤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뜻이 있는 자가 정정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림 1-3. 데이준소쿠(程順則)가저술한 《지남광의(指南廣義)》에서 밝힌 항로에 관한 고증

《지남광의(指南廣義)》의 《해도도(海島圖)》에서는 츠웨이위(赤尾嶼)와 구미야마(古米山)를 중국과 류큐사이의 경계지역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하여 지도의 츠웨이위(赤尾嶼), 황웨이위(黃尾嶼), 다편타이(釣魚台) 등은 그림의 우측, 구미야마(古米山; 久米島)와 그 동쪽의 바시아마(馬齒山; 慶良間諸島), 류큐의 중산(中山)과 류큐의 다른 도서들을 지도 상 좌측에 배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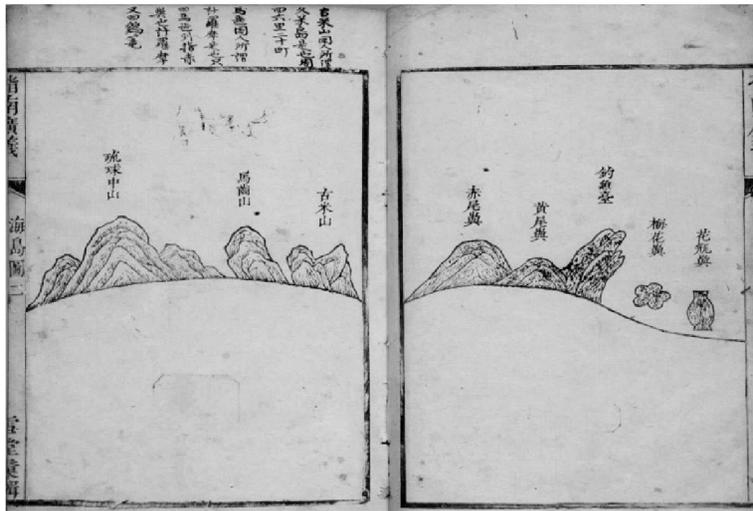


그림 1-4. 데이준소쿠(程順則)가 저술한 《지남광의(指南廣義)》 그림

二. 갑오전쟁이전 일본 정부는 다오위다오가 중국대만의 도서에 속한 것을 인정하였다.

일본 외무성이 다오위다오를 강점하기 위해 이 도서들이 당시에 이미 소위 말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을 점령하는 것은 식민주의시대 열강국가가 약소국의 영토를 분할하는 데 쓰여진 일종의 법률적 해석이다. 하지만 이 해석은 다오위다오에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일찍이 갑오전쟁 20년 이전에 일본해군성과 외무성은 다오위다오가 대만북부의 도서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이라 말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다오위다오 귀속에 관한 쟁의가 발생한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은 1894년 갑오전쟁이 기점이다.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전의 시기에 다오위다오가 중국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一) 1973년부터 1895년까지 일본정부는 줄곧 다포위다오(釣魚島)는 대만 동북부의 도서로 인정하였다.

증거 1 : 1873년 일본 해군성 수로료(水路寮)가 편찬한 《대만수로지(台灣水路志)》에는 다포위다오 열도(釣魚島列島)가 대만의 도서로써 기재되어있다.

당시 일본 해군성수로료(海軍省水路寮 이후, 수로부(水路部)로 개칭) 책임자이자 해군대령이었던 야나기나라요시(柳橋悦)는 영국 해군문헌의 대만 동북부 도서의 명칭의 발음을 기반으로 비슷한 발음의 일본어 한자와 히라가나로 이름을 명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도서들이 대만에 소속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대만수로지(台灣水路志)》의 내용 중 “센가쿠섬(ピンナクル;Pinnacle)”은 “Hoa-pin-su(花瓶嶼)” ; “구라이구섬(クライグ;Craig)”은 “미엔화위(棉花嶼)” ; “아진코트섬(アジンコート;Agincourt)”은 “펑지아위(彭佳嶼)”를 가리킨다. 그리고 “포아핀스(ホアピンス)”는 곧 다포위다오를 말하며 ; “티아우스(チアウス)”는 황웨이위를 가리키며; “라레이지(ラレイジ)”는 곧 츠웨이위를 뜻한다. 또한 포아핀스(다오투다오), 티아우스(황웨이위)는 “센가쿠시마”의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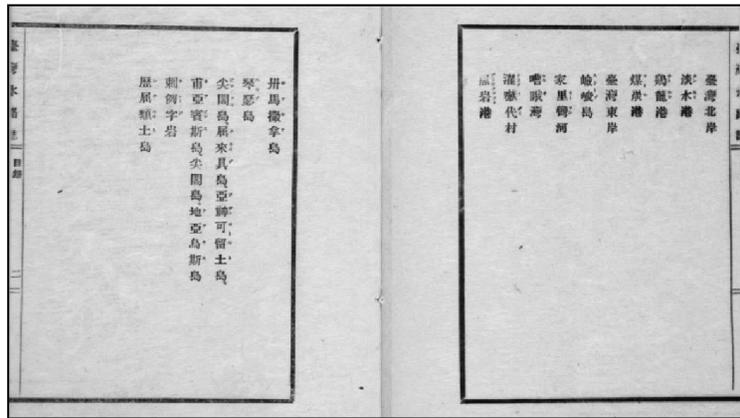


그림 2-1. 일본해군성 수로료가 1873년 편찬한 《대만수로지(台灣水路志)》

《대만수로지(台灣水路志)》의 다포위다오, 황웨이위(黃尾嶼)의 명칭 기재에서 발생한 오류는 이 도서들의 영어 발음을 알맞은 일본어 한자 명칭으로 번역해 옮길 때 발생한 것으로, 영국 문헌은 다포위다오를 중국 복건성의 민남(閩南) 방언 발음인

“Hoa-pin-su(花瓶嶼;甫亞賓斯)”로 기재하였고, 황웨이위(黃尾嶼)를 중국 복건성의 민남(閩南) 방언 발음인 “Tia-u-su(地亞烏斯)”로 발음을 붙여 기재하였다.

하지만, 만약 《대만 수로지(台灣水路志)》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본다면 “Hoa-pin-su (甫亞賓斯島)”, “Tia-u-su(地亞烏斯島)”, “刺列字岩”의 위도와 경도, 지세 등이 기재가 있는데, 바로 이 세 개의 섬이 곧 다포위다오, 황웨이위(黃尾嶼), 츠웨이위(赤尾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Hoa-pin-su(甫亞賓斯島)”는 북위 25도 47분 7초에 위치하고, 동경 123도 30분 30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곳은 바로 다포위다오가 위치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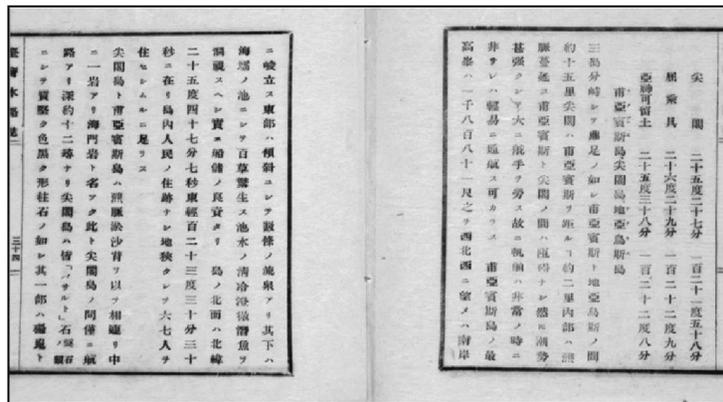


그림 2-2. 일본 해군성수로료가 1873년 편찬한 《대만수로지(台灣水路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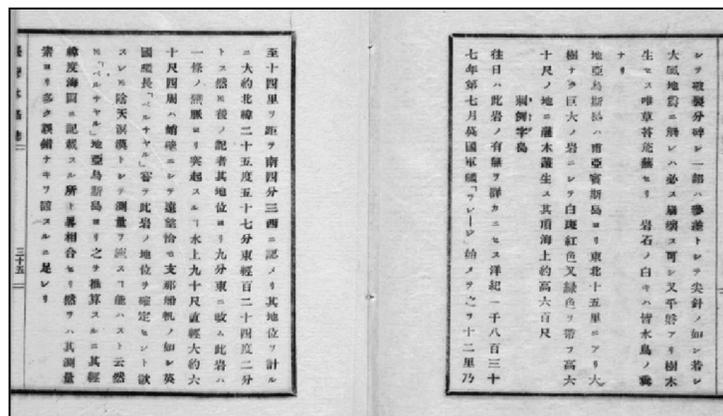


그림 2-3. 일본 해군성수로료가 1873년 편찬한 《대만수로지(台灣水路志)》

증거 2 : 1974년 일본이 최초로 대만 출병을 감행하던 시기에, 일본 해군성 수로료가 제작하고 외무성이 확인한 《청국연해제성(淸國沿海諸省)》에는 다포위다오, 황웨이위(黃尾嶼), 츠웨이위(赤尾嶼)를 중국 대만에 그려 넣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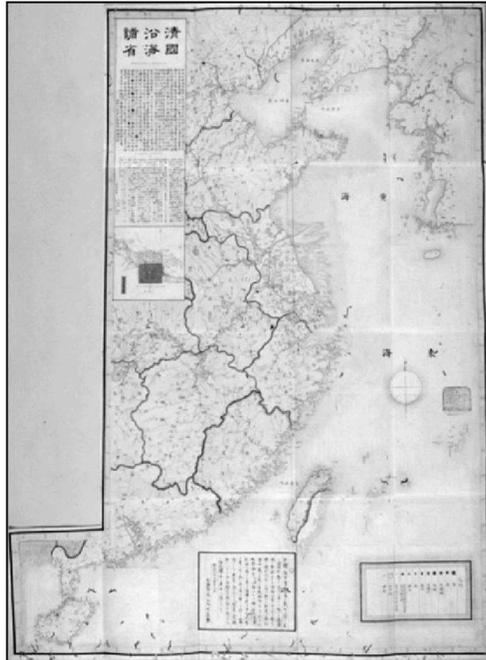


그림 2-4. 일본 해군성이 1874년에 그린 그림, 외무성이 1875년 심사한 《청국연해제성(淸國沿海諸省)》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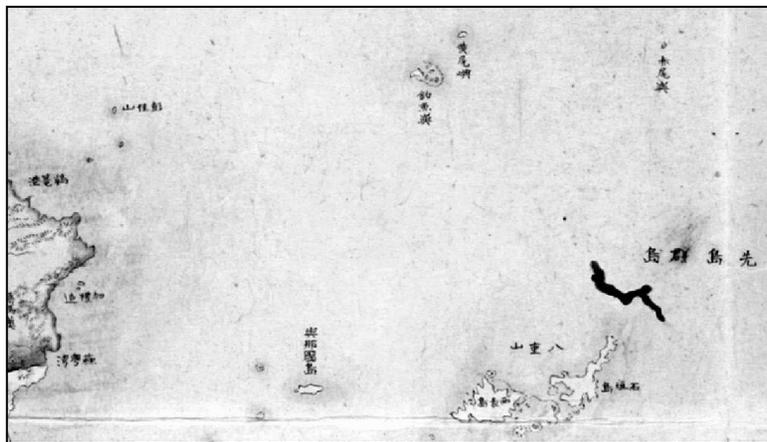


그림 2-5. 《청국연해제성(淸國沿海諸省)》그림의 일부분

그림을 제작한 책임자 일본해군 대령 야나기나라요시(柳榑悅)는 이 지도 상에 설명을 첨부했다. 그는 이 지도는 당시 우연한 기회에 얻은 영국인이 제작한 중국 연해도(中國沿海圖)와 중국인이 편찬한 《대청일통여도(大清一統輿圖)》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지도상의 명칭은 《대청일통여도(大清一統輿圖)》 등의 문헌에 근거하고, 이후 점차 개정하여 완성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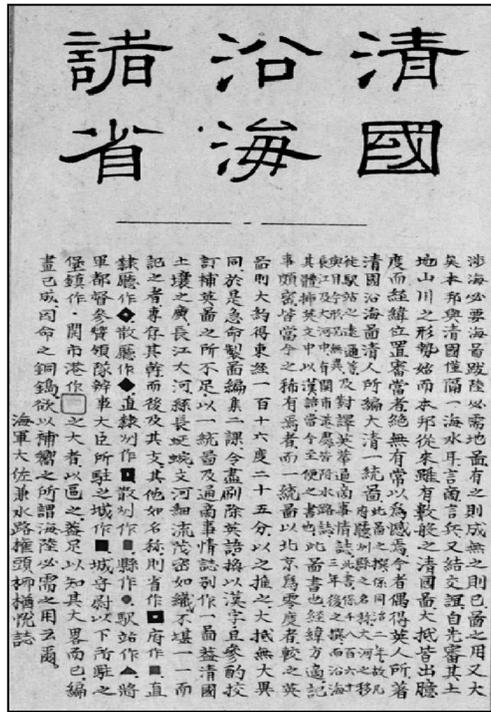


그림 2-6. 야나기나라요시(柳榑悅)의 《청국연해제성(淸國沿海諸省)》 그림상의 보충설명

일본 메이지 정부는 이 일본 해군성이 제작한 지도를 매우 중시하였는데, 외무성 관원 코노세쓰겐(河野雪巖)은 외무대신의 명을 받들어, 그림을 상세히 확인하고 보충하여 개정하였다. 지도를 공시하고 난 후, 그 누구도 틀린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코노세쓰겐(河野雪巖)은 원래의 지도에 해남도(海南島)의 경주(瓊州), 대만의 담수(淡水) 두 개의 항을 보충하였다. 지도의 중국해성(中國海省)에 경주를 포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림에 왼쪽으로 굽어진 볼록한 부분을 그려 넣었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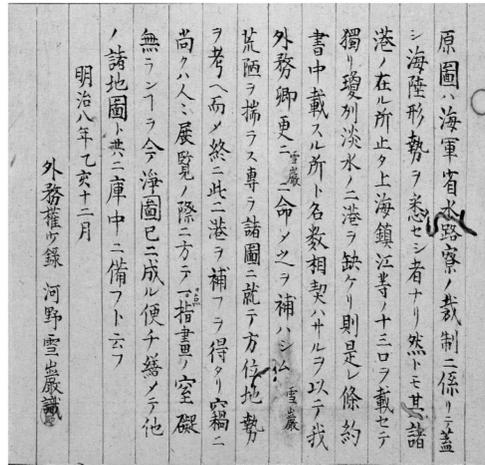


그림 2-7. 외무성 관원 코노세쓰겐(河野 雪巖)이 《청국연해제성(淸國沿海諸省)》에 첨부한 설명

야나기나라요시(柳槽悅)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국연해제성(淸國沿海諸省)》은 1863년 중국의 《대청일통여도(大清一統輿圖)》를 참고로 하였는데, 지령으로 지도를 작성할 때, 이 지도를 근거로 영국 지도상의 명칭을 한자로 고쳐 작성하였다. 《대청일통여도(大清一統輿圖)》에 다오위다오 열도는 중국판도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 해군성과 외무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국연해제성(淸國沿海諸省)》을 작성할 때 인용하기까지 하였다. 당시의 중국, 일본, 영국 삼국의 문헌과 지도가 균등하게 다오위다오 열도가 중국대만도서에 소속된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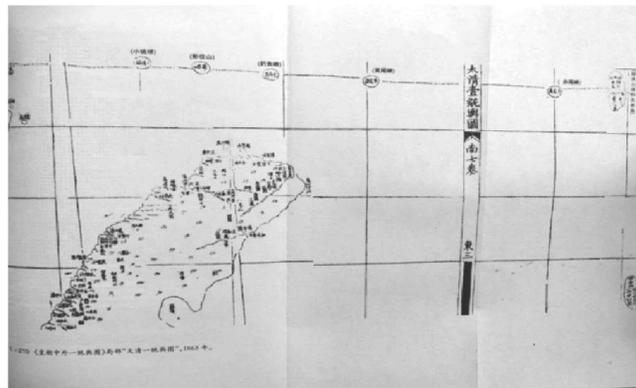


그림 2-8. 중국이 1863년 제작한 《大清一統輿圖》

증거 3 : 1892년 일본 해군성이 편찬한 《지나해수로지(支那海水路志)》 중 《대만 섬과 대만동북제도(台灣島及台灣東北諸島)》의 도표(島表)에도 다포위다오(釣魚島)가 포함되어있다.

다오위다오(Hoa-pin-su island)는 북위25 47 7 ,동경123 28 0에 있고 츠웨이위(Raleigh rook)는 북위25 55, 동경124 33에 있다. 대만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는데, 도표 중 중화핑위(花瓶嶼)、미엔화위(棉花嶼)、핑지아위(彭佳嶼)등은 대만 동북(東北)제도 군에 언급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사람이 없는 작은 섬 츠웨이위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츠웨이위는 대만의 최동단의 섬이며 국경을 표시하는 지표라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名 地	置 位	緯 北	經 東
島 諸 東 北 灣 臺 及 島 灣 臺			
臺灣島.....	Formosa island 本島(本) 臺灣島.....	34°35'28"	121°49'27"
本島(本) 嶼.....	Samasana island }.....	22 40 0	121 28 0
彭佳嶼.....	Raleigh rock }.....	25 55 0	124 33 0
本島(本) 嶼.....	Hoa-pin-su island } 釣魚島.....	25 47 7	123 28 0

그림 2-9. 일본해군성이 1892년 편찬한 《지나해수로지(支那海水路志)》의 도표

1874년 일본해군성이 제작한 《청국연해제성(淸國沿海諸省)》가 다포위다오 귀속문제를 증명하는데 있어 여전히 근거가 부족하다 말한다면, 1892년 일본해군성이 편찬한 《지나해수로지(支那海水路志)》에서 다포위다오(釣魚島)열도가 중국 대만성의 경내라는 기재가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곧 일본정부가 줄곧 다포위다오가 중국의 것임을 인정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증거 4 : 1894년 3월, 갑오전쟁 4개월 전 발행한 《일본 오키나와현 관내전도 류큐국(琉球國)(日本冲繩縣管内全圖琉球全國)》에 고대 류큐(琉球)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일본 오키나와 현 관내전도》 중 다포위다오에 관한 말은 어디에도 없으며, 또한

호형(弧形)의 경계선으로 야에야마(八中山), 미야코 군도(宮古群島)와 대만 및 기타 부속 도서, 다테야마 열도를 분리하고 있었다. 이 지도는 1895년 5월, 즉 《시모노세키조약》 서명 이후 수정하고 재 출판하였는데 원래 있던 대만과 류큐사이의 해상에 경계를 짓는 방법은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한편 류큐 군도의 서편의 “오스미제도(大隅諸島) 와 류큐제도는 규슈(九州)에 속하며, 지나령(支那領)과 대만도는 서로 연속되는 태세를 나타낸다.”라는 원래의 설명을 보류하고 있었다. 지도에는 여전히 다테야마 열도와 연관된 해역을 오키나와 이외의 영역으로 배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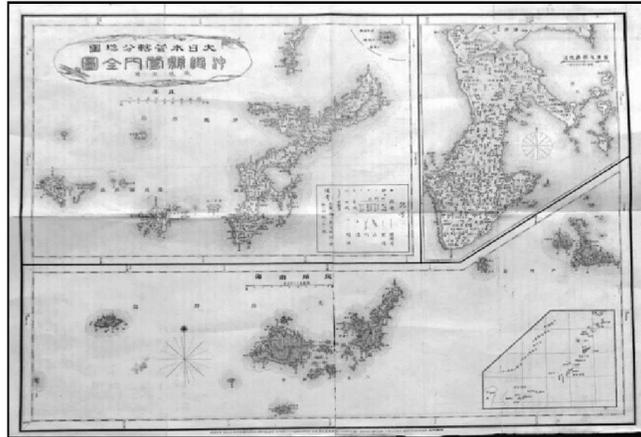


그림 2-10. 《일본 오키나와현 관내전도 류큐국(琉球國)(日本冲縄縣管内全圖琉球全國)》에 포함되지 않은 다테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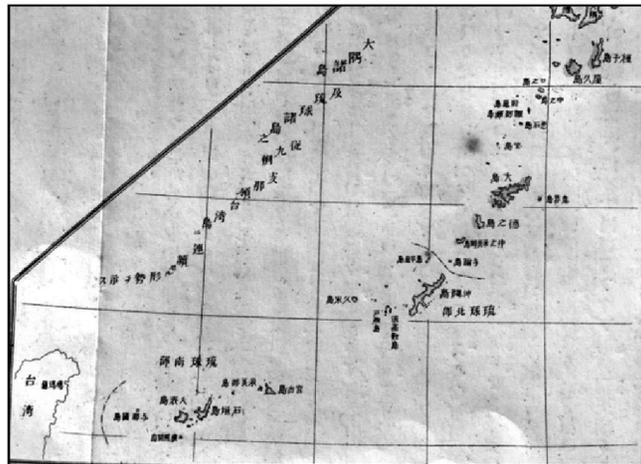


그림 2-11. 《일본 오키나와현 관내전도 류큐국(琉球國)(日本冲縄縣管内全圖琉球全國)》부분

이상의 일본 정부의 문헌, 지도, 도표(島表)의 증명에 따르면, 갑오전쟁 20년 이전에 일본은 이미 다오위다오 열도가 중국 대만의 동북부 도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1885년 일본 내무경 야마가타 아리도모(山縣有朋)의 밀명으로 이 도서들을 조사한 후 1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다오위다오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三. 이토히로부미 내각의 다오위다오(釣魚島)강점에 관한 비밀결정의 역사적 경위

(一) 1855년 일본 내무경 야마가타 아리도모(山縣有朋)의 밀명 하에 조사된 다오위다오에 관한 연구 결과

1885년 9월 22일, 오키나와 현 현령 니시무라스테조우(西村捨三)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구메아카시마(久米赤島), 구바시마(久場島) 및 다오위다오는 예부터 본 현의 지명으로 불리어왔고, 본현과 가까운 미야코, 야에야마등 군도의 무인도는 오키나와 현에 소속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섬과 이전 보고서의 다이토시마(大東島, 본현과 오카사와라시마小笠原島 사이에 위치)는 지세가 다르다. 중산왕(中山王)의 전신록(傳信錄)에 기재된 다오위타이(釣魚台), 황웨이위(黃尾嶼), 츠웨이위(赤尾嶼) 등은 동일한 도서군이다. 만약 같은 지역에 소속된다면, 청국이 중산왕을 봉책할 당시에 류큐를 항해의 목표로 삼고, 분명히 각 도서의 명칭을 붙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이토시마와 같이 국표(國標)를 세울 것이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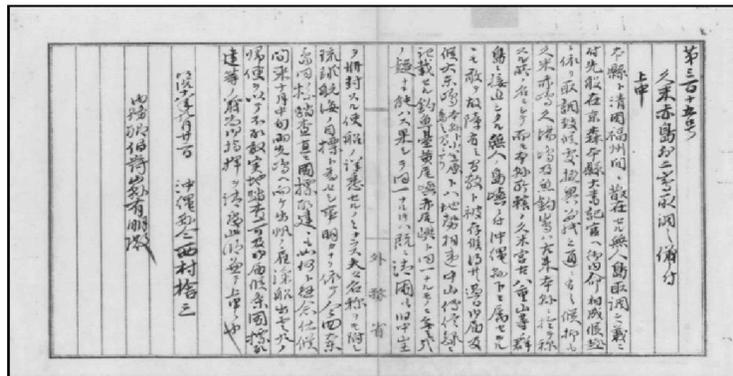


그림 3-1. 임시 오키나와현현령니시무라스테조우(西村 捨三)의 1885년 9월 조사발표

(二) 1885년 10월 임시 일본 외무경이노우에가오루(井上馨)의 조사 결과

1885년 10월 21일, 일본 외무경이노우에가오루(井上馨)가 내무경 야마가타아리도모(山県有朋)에게 보낸 밀서에 따르면 : “이 도서들은 또한 청나라의 국경에 근접합니다. 앞서 작성된 다이토시마(大東島)의 조사와 비교하면, 그 면적이 비교적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청국이 도서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청국의 신문에, 우리정부가 청국에 소속된 대만 부근의 섬들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등 우리나라를 의심하는 내용이 등재 되고 있으며. 청 정부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경 범위를 공공연하게 주장한다면, 반드시 청국의 의심과 반대에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그 전에 마땅히 항만의 정황, 중요한 물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추진하되, 국표(国標)를 세우고 개발에 착수하는 등의 활동은 후일을 기약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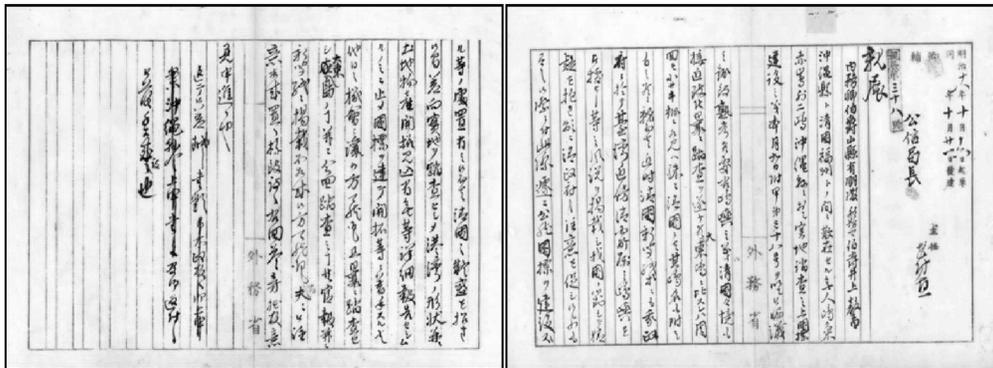


그림 3-2. 임시 일본 외무대신 이노우에가오루(井上 馨)의 1885년 10월 조사발표

(三) 1894년 5월에 이르기 까지 일본은 다오위다오가 류큐(琉球)에 소속되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1894년 5월 12일, 오키나와 현 지사 나라하라 시게루(奈良原繁)가 일본 내무성 현지 국장 에기 가즈유키(江木干之)에게 보낸 조사보고서의 최종 결론에는 : “1885년 이후부터 현지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명확한 영유권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 섬들이 우리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문헌 및 명확한 증거, 구두로 전해온 전설도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되는 것은 예로부터 현의 어부들이 아에야마시마

(八重山)를 지나 바다를 건너며 물고기를 포획한 것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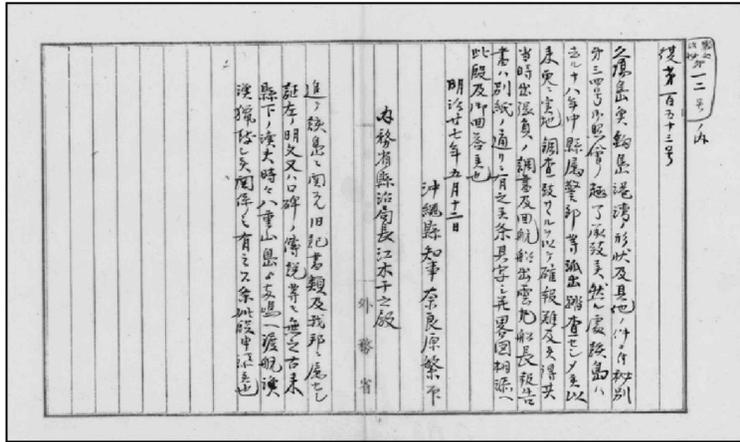


그림 3-3. 임시 오키나와현 지사 나라하라시게루(奈良原繁)의 1894년 5월 조사 보고

(三)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이 갑오전쟁 중 비밀리에 점령을 결정한 다오위다오(釣魚島)와황웨이위(黃尾嶼)

1892년 7월 일본은 갑오전쟁을 일으키고, 조선반도를 침략하였다. 1895년 1월 14일, 이토히로부미(伊藤 博文)내각은 전쟁의 결속을 기다리지도 않고 “내각결의안(內閣決議)”를 작성 하였고, 1월 21일에는 서명 수속을 완성하였다. 비밀결의안의 내용에 의해 구바시마(황웨이위, 黃尾嶼), 우오쓰리시마(다오위다오, 釣魚島)가 오키나와 관할 하에 편입되었고, 심지어 국가 표말(國家標榜)까지 세워졌는데, 그 와중에도 “센가쿠제도” 및 츠웨이위(赤尾嶼) 등의 기재는 없었다. 츠웨이위(赤尾嶼)는 1920년 이후에야 비로서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국유지적(國有地籍)”에 편입시켜졌고 “다이쇼지마(大正島)”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그림 3-4. 이토히로부미(伊藤 博文) 내각이 1894년1월 다오위다오(釣魚島)점령 결정에 서명한 문건

1895년 4월 17일, 일본은 강제적으로 청정부와 불평등한 《시모노세키조약》 성명을 체결한 후, 대만 전체 섬 및 기타 부속 도서들을 50년간 식민통치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일본정부가 섬에서 건립한 실제적 국표(國標)는 없었다.

오랫동안 일본 국내에는 1884년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郎)가 다오위다오를 발견하고 사람을 파견하여 개발하였다는 와전된 인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 전달된 역사적 거짓말이다.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郎)는 일본 식민통치 시기인 1895년 6월 10일 에야 비로소 개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896년 8월 15일에 오키나와 현으로부터 개발허가 비준을 받았다. 1945년 일본이 대만에 대한 식민통치를 종결함과 더불어, 고가(古賀) 가족이 다오위다오, 황웨이위(黃尾嶼)에서 진행한 “사인도주(私人島主)”라고 불린 식민개발의 지위와 법률 환경에는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 되었고, 그 권리는 필연적으로 완전히 포기하게 되어있었다. 이로써 일본정부의 소위 말하는 다오위다오가 “사인도주(私人島主)”에 속해있다는 주장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四. 전후 국제법과 국제질서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전후 중일 양국은 영토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법적으로 《중일공동성명》, 《중일평화우호조약》, 《포츠담회담》, 《카이로회담》 등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일본국헌법》가 규정한 바이다.

(一) 중일 양국은 전후 국제법 체제를 준수해야 한다.

1. 일본 쇼와 천황의 종전 조서(1945년 8월 15일)

신민들에게 알린다. 짐은 제국주의 정부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국에게 공동선언(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통고하는 바이다.²⁾

2. 포츠담 선언(1945년 7월 26일)

(8)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기타 작은 섬들에 국한 될 것이다.

3. 카이로 선언 (1943년 12월 1일)

세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응징을 하기위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또한 영토의 팽창의 야심도 갖고 있지 않다. 삼국의 목적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래 일본이 강탈했거나 점령해 온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환수하는데 있으며, 또한 일본이 중국으로 부터 탈취한 모든 영토를, 예를 들면 만주, 대만, 펑호열도(대만 서쪽에 있는 군도) 등을 중국에 반환하는 데 있다. 일본은 그가 무력으로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들로부터도 추방당할 것이다.

2) 朕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支蘇四国に対し、其の共同宣言(ポツダム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4. 중일 공동성명(1972년 9월 29일)

(3)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거듭된 천명 :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영토이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한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하고, 포츠담선언의 제 8항의 입장을 존중하고 따라야한다.

5. 중일 평화우호조약(1978년 8월 12일)

위에 기술한 공동성명은 양국 간 평화와 우호관계의 기초이며, 공동성명의 각 항목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한다.

6. 일본국 헌법(1947년 5월 3일 시행)

제98조 【최고법규성, 준수조약 및 국제법규】

본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본 헌법 조항과 서로 위반되는 법률, 명령, 국무와 관련된 행위의 전부 혹은 일부는 무효하다. 일본은 이미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반드시 성실이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이로부터 일본과 중국이 체결한 《중일 평화우호조약》 등 일련의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일본국헌법》의 요구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二) 국제법 중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의 개념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

“결정적 기일”이란 당사자가 요구한 법률상 법률관계가 존재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확정짓는 참조 기일이다. 국가 간의 영토분쟁 문제를 법률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어떤 시기에 분쟁영토가 어떤 국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같은 시기에 다른 국가에 의해 유효한 통치가 실행되었다면, 어느 시기를 영토 귀속의 표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즉 “결정적 기일”의 문제가 출현한다.

당사자의 “결정적 기일” 이후의 행위는 법률적 논쟁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결정적 기일”은 중요한 날짜이다. 결정적 기일에 관련된 국제법상 해석에 대한, 중일 양국 법학자들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같다. 다오위다오 영토분쟁이 최초로 발생한 “결정적 기일”은 1895년 1월 일본 메이지 정부가 갑오전쟁 중 중국의 다오위다오, 황웨이위(黃尾嶼) 등 무인도를 점령하면서 확정되었다. 갑오전쟁 중 이 “결정적

기일”이 확정되기 전에 다오위다오 열도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였기에 “무주지”라고 할 수 없다.

(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의 다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법률근거”로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1951년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71년 성명한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열도)가 일본에 속한다는 법률 근거라고 주장 한다.

1950년 5월,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출석을 준비하던 중 다오위다오(釣魚島)와 대만을 함께 중국으로 편입하여 귀속시키는 초안을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중국정부는 평화회의에서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중국 외교부장관 주은래(周恩來)는 수 차례 중국 정부를 대표로 성명을 내고 “일본과의 강화조약 준비, 초안 작성, 체결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중앙인민정부는 평화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일절 불합법적이라고 여길 것이며, 그 내용역시 무효하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전후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기초가 되는걸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한편, 조약 내용 자체에도 다오위다오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미국조차도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다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 대륙과 대만의 반대에 마주하였기 때문에, 1971년 6월 미국의 닉슨 정부는 일본에게 다오위다오의 시정권만을 넘겨주었고 주권은 당사국이 협상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1월, 미국 상의원은 미일 《오키나와 반환 협정》을 비준할 때 미국은 시정권은 갖고 있으나 영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기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시정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나 이는 영유권의 전의를 의미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중일 그 어느 쪽의 다오위다오에 관한 영유권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기하였다.

五. 일본 측이 말하는 증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一) 일본의 대만 식민통치 시기의 문헌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성립되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중화민국 주재 오키나와 영사 풍면(馮冕)의 “감사장”은 일본의 대만 식민지 통치시기(민국9년, 1920년)에 작성되었다. 기껏해야 이는 당시 사람들은 “와요지마(和洋島)”가 일본의 통치 하에 놓인 처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 일본 측은 대만에 관한 사진과 문헌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45년 일본이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을 수락하고 대만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포기함에 따라 이러한 문헌들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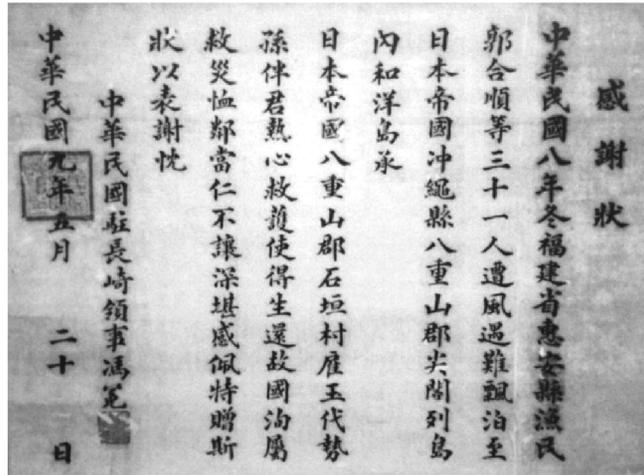


그림 5-1. 풍면(馮冕)이 1920년 아에야마군(八重山郡)아이마무라(石垣村)에 보낸 감사장

(二) 1958년, 1960년 판 중국의 《세계지도집》은 영유권 주장의 증거로 삼기에 불충분 하다.

1958년 출판하고 1960년 재판한 《세계지도》표지에는 “중국의 부분 경계선은 항일전쟁 이전 제작되어 등록된 지도에 근거한다”, “중국 부분국경선은 해방 전 제작되어 등록된 지도에 근거한다” 등과 같은 명확한 주석이 달려져 있다. 이러한 지도들은 대만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켰지만, 닌오위다오 부분은 항일전쟁 전 일본 지도를 잘못

인용 한 것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다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그림 5-2. 중국이 1958년, 1960년 편찬한 《세계지도집》

중국지도출판사가 1953년에 출판한 《신세계분국도(新世界分國圖)》 중, 류큐군도는 아직 일본판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1956년 출판한 《세계분국도(世界分國圖)》에서 다오위다오는 류큐군도 밖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또한 지도 표지에는 “본 지도상의 중국 국경선은 본 출판사가 출판한 《중화인민공화국지도(中華人民共和國地圖)》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라는 주석이 달려져 있었다.



그림 5-3. 중국 지도출판사가 1956년 출판한 《세계분국지도(世界分國地圖)》의 류큐(琉球) 군도

(三) 1965년에 중국은 이미 다포위다오, 황웨이위(黃尾嶼), 츠웨이위(赤尾嶼)를 포함한 대만성 지도를 제작하였다.

1965년에 제작하고, 1969년에 출판한 《중화인민공화국분성지도(中華人民共和國分省地圖)》는 “복건성, 대만성지역도”라는 부분에서 다포위다오 열도를 편입하여 대만 성영역에 그려 넣었다. 이는 중국의 다포위다오에 대한 권리주장이 1968년의 석유자원 발견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비록 이 지도에는 “센가쿠 군도” 등 일본이 대만을 통치할 시기의 명칭으로 다포위다오의 도명이 잘못 쓰여져 있지만, 츠웨이위(赤尾嶼)를 비롯한 다포위다오 열도를 중국 판도 안에 특별히 그려 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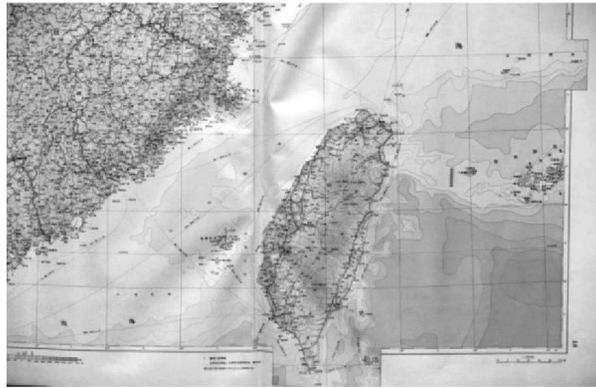


그림 5-4. 1969년 내부 출판의 《중화인민공화국분성지도(中華人民共和國分省地圖)》부분



그림 5-5. 1969년 내부 출판의 《중화인민공화국분성지도(中華人民共和國分省地圖)》부분

위에서 기술한 1956년 중국이 출판한 《세계지도(世界地圖)》의 일본판도에 관한 내용과 연결하여 본다면, 1965년 이전에 중국은 이미 дя오위다오 열도는 중국에 속한다는 인식과 입장을 확립 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것은 1968년 이후 дя오위다오 해역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실상, 진정으로 석유가 발견됨으로 인하여 갑자기 дя오위다오에 대한 주권 요구를 제출한 것은 당시의 일본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지도의 변화로부터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1968년 이전의 일본은 дя오위다가 오키나와에 속한다고 강조한 적이 없었다. 예를 들어, 1965년 일본문부성이 심의한 《고등지도장(高等地圖帳)》의 오키나와 제도 속에는 дя오위다오가 기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경 역시 야에야마(八重山)군도의 이리오모테시마(西表島) 및 대만성 사이에 있었으며, дя오위다오 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도책은 1972년 재출판에 맞추어 수정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일본은 원래의 국경선을 북쪽으로 1배 이상 연장함으로써 억지스럽게 дя오위다오를 일본의 판도에 편입하여 그려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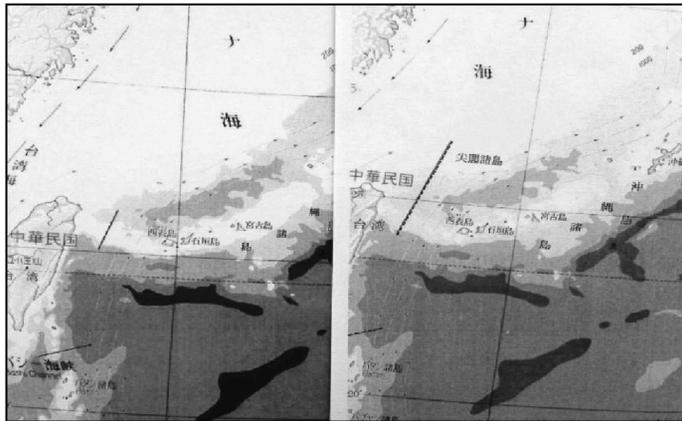


그림 5-6. 1965년 《고등지도장(高等地圖帳)》과 1972년 《고등지도장(高等地圖帳)》

일본이 처음으로 дя오위다오 영유권에 대한 기본 견해를 발표한 것은 1972년 3월 8 일인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дя오위다오에 관한 주권 성명(1971년 12월 30 일)보다 2달 이상이나 늦었으며, 일본의 주장 중 많은 내용 역시 꾸며낸 것이었다.

(四) 《인민일보》에 등재된 잘못 번역된 자료

《인민일보》는 1953년 1월 8일 “센카쿠 열도”가 류큐 열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씌여진《류큐인들의 미국 점령에 대한 반대 투쟁(琉球人民反對美國占領的斗争)》 라는 자료를 기재하였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문장은 번역 자료로서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이 문장은 저자의 서명이 없는 글일 뿐만 아니라 “자료”라는 문구로 주석을 달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가데나(嘉手納)를 “가대나卡台那”로 음역으로 기록하는 등의 번역상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위 문장이 중국정부나 신문사의 입장을 대표할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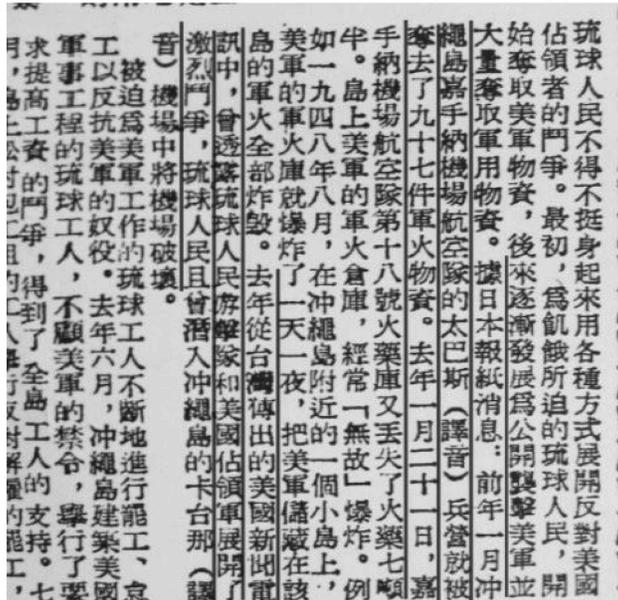


그림 5-7. 《인민일보》 1953년 1월 8일 “자료”

중국 해양경찰에 의한 다오위다오 영해에서의 순찰은 이미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른바 “일본영해”에 중국측의 관공선이 “침입”한다는 일본측의 지적은 중일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에 악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 중일양국은 다오위다오문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있어서 민족주의에 기인한정서적 자극을 피해야하며, 사실에 근거한 추론과 상호교류를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다. 양국의 청소년으

로 하여금 다오위다오의 귀속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양국의 우호적인 국민 의식을 대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분쟁에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지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 논문 중의 다오위다오 귀속에 관련한 연구 내용이 중일 양국 국민들의 상식이 될 수 있다면, 중일관계는 장애를 초월하고, 대치 상태를 피할 수 있으며, 밝은 미래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Summary>

PCA 중재재판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China's Perception of and Response Strategies against the Ruling of the PCA

윤 호 (尹虎, Yin, Hu)*

(1)

The Philippine Navy tried to arrest the crew of Chinese vessels that were fishing in waters near Fiery Cross Reef(永暑礁, Yongshu Jiao) in the South China Sea on April 12, 2012, which provoked a standoff between Chinese and Filipino warships. Philippines took the case seriously and filed a complaint about the Spratly Islands dispute against China i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s (PCA) in the Hague in January, 2013. The PCA unilaterally ruled that it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as China did not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but tried to solve the dispute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parties. After the deliberation of three and a half years, the PCA declared on July 12, 2016 that Chinese's alleged historic rights to the nine-dash line were denied, and artificial islands that had been developed by China were not entitled to an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The Foreign Ministry of China officially stated that the "ruling is invalid and is not legally binding, and China will not accept the ruling," and declared that China would solve the dispute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parties. China tends to view Philippines' complaint to the PCA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from a political standpoint from the

* 중국절강공상대학 부교수(Zhejiang Gongshang University)

very beginning, and said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behind it. China views that the PCA arbitration is related to America's attempt to curb China's rise and Japan's military power strategy, and that the procedure and results of the arbitration lack neutrality and fairness.

(2)

As Rodrigo Duterte sworn in as president of Philippines in May,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Philippines has rapidly improved. In his speech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n April, 2016, he said that he “opposes solv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at “Philippines will ask China for support in exploring energy resources jointly with China and operating its railway project to connect Manila and South Mindanao.” The Chinese government negotiated with Duterte's government to address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arbitration ruling from the PCA under the situation delivered a negative impact to the negot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the international waters in the South China Sea were expanded after the ruling, the rights of China and Philippines were reduced, which has benefitted third parties who want the freedom of navigation. To break through this situation, China and Philippines has accelerated their effort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held a summit in October, 2016, and agreed on \$24 billion worth of economic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held the first bilateral high-level meeting on the South China Sea on November 19, 2016 to discuss ways to solve the dispute and jointly develop the region. As the Chinese government spoke up for Duterte's government that faced criticism from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due to its war on drugs on May 8,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me better than ever before. On July 18, 2018, President Duterte stated that “China is a good neighbor,” and that he “is

confident that China will fairly handle the territory issue,” gain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ir efforts have strengthened trust between the two, and addressed conflicts caused by the ruling of the PCA, showing that they successfully guaranteed peace in the South China Sea.

(3)

Productive talks are required to solve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Philippin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low level of ‘operational trust’ through maritime cooperation projects led by private organizations, not by governments. The operational trust established by the private sector can be advanced to a high level of strategic trus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egin cooperation from ‘softer issues’ instead of sensitive issues in order to build mutual trust. For instance, China and Philippines will be able to establish maritime trust through mutual cooperation in issues such as the management of fishing operations, maritime science research and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Issues on the South China Sea involve many countries, and thus, it will be necessary for China to have political wisdom, respect historical facts and solve the issues with relevant countries through talks and negotiations.

〈요약문〉

(1)

2012년 4월 12일 남중국해 용수자오(永暑礁)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해군이 조업 중인 중국 어선 선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국·필리핀 군함이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심각히 받아들였고 2013년 1월에는 중국을 상대로 난사군도 분쟁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PCA는 중재재판 참여를 희망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과 분쟁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의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고 3년 반이라는 심의를 거쳐 2016년 7월 12일에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중국이 주장한 구단선의 역사적 권한을 부정하고 중국이 개발 중인 도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섬이라고 판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해 "해당 판결은 무효한 것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여지도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당사국간의 협력과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천명하였다.

중국은 PCA 중재재판을 정치적 시각으로 분석 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 일본을 남중국해 분쟁의 배후로 보고 있다. PCA재판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일본의 군사 대국화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판의 추진과정, 결과가 모두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

2016년 5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두테르테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과 필리핀 양국 관계는 발 빠르게 호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6년 4월에 있는 경선 연설에서 두테르테는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반대하고 분쟁을 한동안 내버려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중국과 공동으로 에너지 자원탐사를 벌이고 마닐

라와 남부 민다나오를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두테르테의 인식은 중국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었기에 중국정부도 두테르테 신정부와 양국 간 갈등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PCA 의 중재판결이 내려졌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PCA의 판결은 오히려 충돌의 위험을 확대시키고 양국 간 협상의 입지를 좁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었을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으로 인해 남중국해역의 공역이 확대됨으로서 중국과 필리핀의 권리가 축소되고 항해의 자유나 해양이용의 자유를 원하는 제3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나타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 국면을 타파하기 위하여 중국과 필리핀은 관계 개선에 속도를 가하게 하면 된다. 2016년 10월, 중국과 필리핀은 양국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으며 24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에 관해 합의하였다. 2016년11월 19일에는 처음으로 고위급 ‘남중국해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분쟁 해법과 공동개발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2017년 5월 8일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칼,도마 위에 오른 두테르테 정부를 중국이 도와주면서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더욱 강화 되었다.

2018년 7월 18일, 마닐라의 다리 기공식 연설에서 “중국이 좋은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결국 중국이 공정하게 영토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발표하여 또 한번 국제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필리핀과 중국의 노력이 양국 간의 신뢰 구축으로 이어졌고 일단은 국제 중재로 인한 풍파를 잠재우고 남중국해 평화를 보장하는데 성공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중국과 필리핀 간 영토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판 보다는 발전적인 대화가 요구된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전략적인 수준에서의 신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운용적 수준에서의 신뢰’(operational trust)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차원의 협력이 아닌 민간차원의 해양협력 활동으로서 민간기관 간의 해양협력 사업

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운용적 신뢰의 점진적인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신뢰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상호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당사국 간의 민감한 사안보다는 ‘덜 민감한 사안’(softer issues)들에 대한 협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중국과 필리핀은 해양과학연구, 해양환경보호, 해양범죄 등과 같은 사안들에 대한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양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여러 국가에 연관되는 문제로, 중국은 앞으로도 관련국과 함께 정치적 지혜를 갖고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나아가야 할 것이다.

PCA 중재재판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2012년 4월 12일 남중국해 용수자오(永暑礁)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해군이 조업 중인 중국 어선 선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국·필리핀 군함이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심각히 받아들였고 2013년 1월에는 중국을 상대로 난사군도 분쟁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PCA는 중재재판 참여를 희망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과 분쟁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의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고 3년반이라는 심의를 거쳐 2016년 7월 12일에 판결을 내렸다. PCA 중재재판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

첫째, 중국의 역사적 권리에 기초해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구단선(九段線)의 권리는 해양법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둘째, 남중국해 지형 대부분에 대해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셋째,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간척과 인공섬 등의 건설행위가 주변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해양환경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 했으며 중국법집행선박의 행위는 필리핀의 전통적 어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중국 외교부는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해 “해당 판결은 무효한 것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사국간의 협력과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천명하였다.²⁾

본 논문은 CPA 판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인식, 협상과 협력으로 필리핀과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분석하고 남중국해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인 ‘운용적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1) 華府網：南海仲裁案 海牙法庭裁決全文(中英文)：<http://www.chineseindc.com/article-59701-1.html>

2) 外交部：無論南海仲裁庭作出什麼裁決，中國都不接受不承認，<https://www.yicai.com/news/5010663.html>

一. PCA 재판의 국제적 배경에 대한 중국의 시각

중국은 PCA 중재재판을 정치적 시각으로 분석 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고 남중국해 분쟁의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번 PCA판결은 국제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중국 압박 정책의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1) PCA재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이다.

미국은 2009년 7월 “아세아 귀”를 천명한 이후,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고 중국의 부상 저지하려고 하였는데 PCA재판은 미국이 필리핀을 부추겨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을 가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음모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2010년 7월 23일,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 장관 회의에서 국무청 힐러리 클린턴은 남중국해에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존재한다고 천명하였고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필리핀을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 하였다. 2011년 11월, 미국은 필리핀과 《마닐라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각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신속히 확립해 나갔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추진은 2013년 1월 필리핀이 PCA에 남중국해 문제를 제소하는데 힘을 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³⁾ 2013년 7월 29일, 미국 참의원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안까지 통과하면서 필리핀을 지지 하기도 하였다.⁴⁾

PCA 재판 결과가 발표된 후 미국은 중국을 향해 재판 결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자유 항해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의 수위를 높혀 갔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1994년)에 가입도 하지 않은 미국이 관련 법조항을 근거로 PCA 재판 결과의 수용을 중국에게 강요하는 점에 대해 국제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도보다 중국 견제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국 간의 지역적인 모순으로 시작되어 사실상

3) 鞠海竜：“菲律賓南海政策中的美国因素”，《國際問題研究》，2013年 第3期，第64頁。

4) 美參院罔顧事實譴責中国在南海釣魚島“動武”，<http://news.sohu.com/20130730/n382938616.shtml>.

중·미 간의 경쟁적인 게임 양상으로 진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미 양국이 대립하지 않고도 서로의 핵심이익을 공존시킬수 있는 광활한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서로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 할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중국 압박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은 1996년 미국과의 《신미일안보지침》개정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중국위협론을 부각시키면서 군사대국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작업 중 하나가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필리핀을 부추겨 남중국해 문제를 PCA에 제소하게 한 것이라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2009년6월, 필리핀과 일본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건립하기를 협의 하였고 2011년9월,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신속히 발전시켰다. 아키노 대통령은 방일 기간 노다 일본 총리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그중에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의 신경을 건드렸다.⁵⁾ 남중국해 문제가 두드러짐에 따라 일본과 필리핀의 협력관계는 경제적 분야로 부터 군사적 분야까지 빠르게 확대되어 갔다. 예를 들면 일본은 필리핀 해양경찰청에 10척의 순찰정을 지원하고 해양통신기술의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5월 12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필리핀과 마닐라해협에서 해상 합동군사훈련까지 진행하였다.⁶⁾ 중국과 영토 분쟁중인 필리핀에 직접으로 군사지원을 주고 군사훈련까지 진행하는 일본의 남중국해 정책에 대해 중국은 도발로 받아들이게 되며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의 영향을 받는 PCA 재판에 대해서도 일본의 중국 견제 정책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5) 日本与菲律宾领导人举行会谈强化战略伙伴关系. <http://news.cntv.cn/20110928/100948.shtml>.

6) 朱海燕：“日本介入南海問題的動向及影響”，《國際問題研究》，2016年 第2期，第127頁。

二. 중재재판소(PCA)에 대한 중국의 인식

중국은 PCA의 과도한 관할권 행사는 자발적으로 지역 해양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의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주장 하면서 당사국 중국의 타당한 의견을 무시 하는 PCA의 태도와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등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다.

(1) PCA 재판관 구성에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중국은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서 야나이 전 소장은 아베 총리의 ‘안보법제’ 간담회의 좌장을 맡아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데 협력한 인물임으로 중재재판은 처음부터 정치화돼 있었기 때문에 PCA의 판결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재재판관 5명중 4명은 유럽 출신(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이고 1명만 개발도 상국(가나) 출신인 점도 재판부가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재하고 있다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⁷⁾

(2) PCA는 당사국인 중국의 타당한 주장들을 무시하였다.

PCA는 필리핀과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던 중국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판 관할권을 집행하였다고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또한 PCA의 판결은 주권·해양경계 획정, 군사적 충돌 등의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 당사 국이 제3의 분쟁해결기구 및 국제법제도에 의한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을시 강제적인 집행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등의 법조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⁸⁾

중국은 PCA가 필리핀의 제소에 의해 중국과 필리핀의 영토 분쟁사안에 관하여 판정

7) 何志鵬：“南海仲裁案与国际裁判的公正性”，《邊界与海洋研究》，2016年 第4期，第40頁。

8) 劉丹：論《聯合國海洋法公約》第298條“任择性例外”，《國際法研究》，2016年 第6期，第7、12頁。

하였는데 남사군도의 전체 해역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PCA가 앞으로도 분쟁 당사국들의 합법적인 주장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집행권을 행사한다면, 유엔해양법 체결국 간 해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고조될 것이며 중재제도의 신뢰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중국은 예견하고 있다.

三. PCA 판결에 대한 중국의 반론

PCA 재판 결과가 발표된 이후 중국은 재판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중국측의 반론은 구단선의 합법성 문제, 해양생태계 관련 문제 보다 주로 도서, 지형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예를 들면 2016년 7월 15일자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해군군사학술연구소 싱광메이(邢廣梅)의 《황당한 남중국해 중재재판은 법률 정신을 모독하였다》를 등재하면서 PCA 재판 결과에 아래와 같은 반론을 제기 하였다.

(1) 태평도(太平島)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가능성을 부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태평도는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만 전 총통 마잉주(馬英九)에 의하면 섬에는 150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담수가 충분하고, 농산물이 풍부하며, 생활기능이 완비 되어 있는 것을 이미 국내외 언론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이 규정한 “인류의 지속적인 거주와 자체경제생활의 유지”를 실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도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은 430여 편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A가 태평도를 법적 요건을 갖춘 “섬”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실재상황을 무시한 명백한 오류이다.⁹⁾

9) 邢廣梅：“南海仲裁的荒謬裁決讓法律蒙羞”，<http://mil.huanqiu.com/observation/2016-07/9176630>.

(2) CPA 재판에서의 도서의 구별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른 국제 사법기구가 도서의 조건에 대해 심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 안임에도 불구하고 CPA재판은 경솔하게 “인류의 지속적인 거주와 자체경제생활을 유지”(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라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인류사회 군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외래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채굴이나 채집의 경제활동을 진행 할 수 객관적인 능력” 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정의를 내렸고 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태평도는 “섬”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을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의 상당수 국가들이 현재 향수하고 있는 도서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해양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¹⁰⁾

(3) CPA 재판은 어업권 문제에 있어 편파적인 판결을 진행하였다.

CPA는 구단선내 해역에서 중국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어업자원등의 분배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적 안배를 실시 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해역에 있어서의 역사적 권리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CPA가 구단선내 중국의 역사성 어업권을 부인하면서도 필리핀의 황암도(黃岩島) 수역 내의 역사성 어업권을 승인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선권 특성의 역사적 권리”와 “배타권 특성의 역사적인 소유권”이 같아지게 되는 착오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어업권”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있어 중국과 필리핀에 각각 다른 표준을 적용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¹¹⁾

html

10) 邢广梅：南海仲裁的荒謬裁決讓法律蒙羞，<http://mil.huanqiu.com/observation/2016-07/9176630.html>

11) 邢广梅：南海仲裁的荒謬裁決讓法律蒙羞 <http://mil.huanqiu.com/observation/2016-07/9176630.html>

四. PCA재판의 영향에 관한 중국의 인식

PCA재판을 거부한다고 주장 하면서도 중국은 그 영향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중국은 PCA재판 이후 분쟁 당사국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제3의 세력이 개입으로 남중국해 문제가 더욱 불안정해 졌으며 해양 공역의 확대로 당사국의 권리가 축소되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 갈등을 확대시키는 영향을 미치었다.

PCA 판결은 중국과 필리핀간의 남중국해 분쟁을 종식 시키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중국은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 양국의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충돌의 위험성은 더욱 커졌고 타협안을 도출하려는 협상의 저항력도 커진 것으로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또한PCA 판결은 당사국의 합리적인 주장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재판권 집행은 영토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대안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남중국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 하게 만들었다.

남중국해의 문제는 역사적 뿌리가 깊고 관여된 이해 당사국이 많으며 지역 안보와 경제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CPA 재판은 남중국해 문제의 이러한 특징을 무시한 채 국제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중-필 간의 영토 분쟁에 관한 판결을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 하게 만들었다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특히 CPA 재판이 남중국해 당사국들 간의 지역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제3의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줌으로서 지역안보와 평화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온 점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비판하였다¹²⁾.

12) 中方反对与域外国家介入南海争议甚至充当"裁判", <http://news.163.com/12/0410/18/7UOIB6FR00014JB6.html>

(3) 남중국해 연안국가 모두가 재판으로 불이익을 입었다.

PCA 판결은 남중국해 해양지형, 도서는 12해리 영해만을 가지는 암석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남중국해의 공해 범위를 확대시킨 결과로서 중국과 남중국해 연안국가들의 권리 영역을 축소시켰고 공해영역이 넓어지면서 동 해역에 있어 제3국의 항해 자유와 어업에 대한 권리 주장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PCA 재판은 중-필 간의 양자 분쟁이 국제적 사안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3의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었으며 재판 결과 또한 필리핀에게 불리하게 판결되었다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五. 남중국해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중국의 입장: 당사국간의 협력과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

PCA판결 다음날인 2016년 7월 13일,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은 담판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백서 《中国堅持通過談判解決中国与菲律賓在南海的有關爭議》를 발표하면서, 협력과 협상으로 남중국해분쟁을 해결할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사실상 2016년 5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두테르테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과 필리핀 양국관계는 발 빠르게 호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6년 4월에 있는 경선 연설에서 두테르테는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반대하고 분쟁을 한동안 내버려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중국과 공동으로 에너지 자원탐사를 벌이고 마닐라와 남부 민다나오를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¹³⁾ 두테르테의 인식은 중국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었기에 중국정부도두테르테 신정부와 양국 간 갈등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PCA의 중재판결이 내려졌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남

13) 《广州日報》 2016年4月20日。

중국해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PCA의 판결은 오히려 충돌의 위험을 확대시키고 양국 간 협상의 입지를 좁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었을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으로 인해 남중국해역의 공역이 확대됨으로서 중국과 필리핀의 권리가 축소되고 항해의 자유나 해양이용의 자유를 원하는 제3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나타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 국면을 타파하기 위하여 중국과 필리핀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관계 개선에 속도를 가하게 된다.

(1) 외교면에서의 협상 시작

2016년 11월 19일 중국과 필리핀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남중국해 양자 회담’을 진행하였다. 류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호세 산티아고 로마나 주중국 필리핀대사가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법과 공동개발 방안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면에서 의견의 일치를 달성하였다. 협상 채널의 개통은 양국관계의 발전과 남중국해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2) 경제면에서의 협력

중국은 경제적 협력을 통한 양국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0월, 중국과 필리핀은 150억 달러의 투자와 90억 달러의 차관 제공 등 24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에 관해 합의하였으며 2017년 5월에는 마닐라의 파시그 강에 다리 2개를 건설하는 데 5억 위안 을 지원하는 협정도 맺었다.

(3) 인권문제에서 지지

2017년 5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개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의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유혈전쟁¹⁴⁾’이 칼도마에 올라 필리핀 정부는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45개 유엔 회원국은 필리핀의 마약 유혈 소탕전에 대

14) 필리핀에서는 2016년 6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7천 명 이상의 마약용의자가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東莞日報》 2017年5月9日。

해 우려를 표명하고, 호주와 독일, 프랑스 등은 필리핀에 초법적 처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때 중국은 “불법 마약을 척결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며 “국제사회가 필리핀 주권을 존중하고 불법 마약과 싸우는 필리핀을 지지하자”고 홀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두테르테의 편을 들어줬다.¹⁵⁾ 인권문제에 있어 두테르테정부를 중국이 도와주면서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더욱 강화 되었다.

2018년 7월 18일, 마닐라의 다리 기공식 연설에서 “중국이 좋은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결국 중국이 공정하게 영토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표하여 또 한번 국제여론의 주목을 받았다.¹⁶⁾ 이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필리핀과 중국의 노력이 양국 간의 신뢰 구축으로 이어졌고 일단은 국제 중재로 인한 풍파를 잠재우고 남중국해 평화를 보장하는데 성공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필리핀과의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주변 외교환경을 개선하는 중국의 정책 추진은 주권과 해상 권익을 수호하려는 결의와 의지를, 직접적인 담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정책과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하였으며 남중국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六. PCA 판결 이후 남중국해 문제의 현실적 해결방안: 협력을 통한 ‘운용적 신뢰’ 구축의 중요성

2016년에 개최된 보아오 포럼(Boao Forum)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원 및 해양환경 협동 연구를 위한 《동남아 연구 센터》의 건립을 건의했고 2017년에는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과학연구, 환경보호 등 영역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협력 기금》조성을 제안 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제안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협력을 위해서는 더욱 큰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즉 신뢰가 없이

15) 《東莞日報》 2015年5月9日。

16) 《江東日報》 2018年7月19日。

는 협력이 불가하다는 생각이 였고,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과 관련한 중국의 일정수준의 양보 또는 중국의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국가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분위기 였다. 우선순위 선정의 어려움을 묘사하는 ‘chicken and egg’(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 상황이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⁷⁾

중국은 신뢰가 협력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인식되어져서는 안 되고 협력을 신뢰 형성의 방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주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자원조사를 비롯한 낮은 차원의 협력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¹⁸⁾ 남중국해 연안의 국가들은 모두 1982년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체결 당사국들로서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해양 및 해양활동의 관리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협력은 단순히 필요한 사안이 아닌 서로 간의 의무 인 것이다.¹⁹⁾

이해 당사국간의 불신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상이 여전히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구축을 위한 ‘이중접근’(dual track approach)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접근은 상위수준의 신뢰 즉 국가 간 ‘전략적 신뢰’ 구축에 관련된 것으로서 주로 전통적인 안보·주권 등의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위수준의 전략적 신뢰는 사안의 민감한 성격으로 인해 쉽게 성과가 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접근은 전략적인 수준에서의 신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운용적 수준에서의 신뢰’(operational trust)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정부차원의 협력이 아닌 민간차원의 해양협력 활동으로서 민간기관 간의 해양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운용적 신뢰의 점진적인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상위수준의 전략적 신뢰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현재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 과정에 있어 민감한 사안보다는 ‘덜 민감한 사안’(softer issues)들에 대한 협력에서 부터 시

17) Sam Bateman. “The South China Sea: Practical solutions post-Arbitration Ruling” KIMS Periscope, Oct. 1. 2016.

18) 劉星男：“南海問題和平解決方案探析”，《東亞學經緯》，2017年 第2期，第70頁。

19) Sam Bateman. “The South China Sea: Practical solutions post-Arbitration Ruling”. KIMS Periscope, Oct. 1. 2016.

20) Sam Bateman. “The South China Sea: Practical solutions post-Arbitration Ruling”. KIMS Periscope, Oct. 1. 2016.

작해야 할 것이다. 발전적인 대화는 해양과학연구, 조업관리, 환경보호, 해양법준수 및 해난사고 구조 등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²¹⁾

중-필간의 관계개선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대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된건이 틀림없다. 남중국해를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함께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 영유권분쟁은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중-필 양국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용적 신뢰 구축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 劉星男：“南海問題和平解決方案探析”，《東亞學經緯》，2017年 第2期，第70頁。



【 제 2 부 】



“러시아의 쿠릴열도정책과 수산업”

<Summary>

쿠릴열도 수산업 발전

The Development of the Fishery Industry In Kuril Islands

소피아 게오르기예브나 김 (Sophia Georgiyevna Kim)*

1. Fishery in Kuril Islan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uril Islands were divided into 1) South Kuril Islands (South Chishima), 2) Central Kuril Islands (Central Chishima), and 3) North Kuril Islands (North Chishima). In South Kuril Islands, a total of 7 fish canneries, and 5 crab canneries had been operated up until September, 1945. Central Kuril Islands were important for Japan's industries, and a whopping 150,000 tons of fish were caught in coastal areas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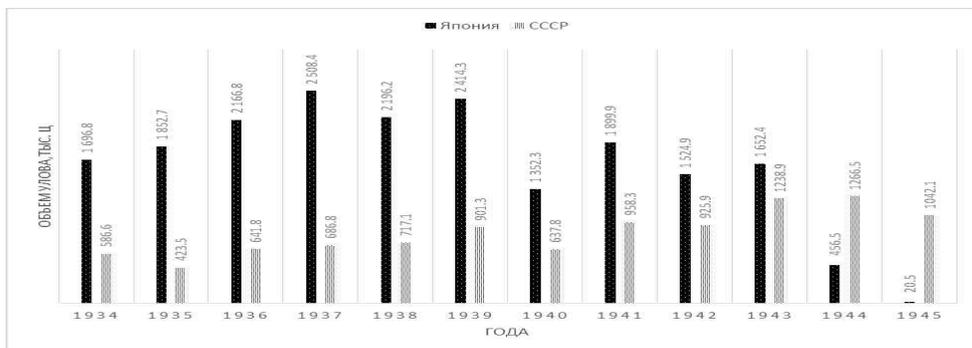


Figure 1. Catch of fish in the coastal areas of the Sea of Okhotsk and Kuril Islands, and the eastern and western coastal areas of Kamchatka Krai from 1934 to 1945 (dark–Japan, light–Soviet Union)

* 사할린 인문기술대학(Sakhalin Humanities and Technology Institute)

2. Fishing industry in Kuril Islands during the Soviet Union period

In 1947, the Soviet Union forced thousands of fishermen to move to Kuril Islands, and they started to form fishery communities. The growth of the fishery industry in the Sea of Okhotsk led to the depletion of fish stocks in coastal areas until the early 1950s. As fleets of ocean fisheries were established in the early 1960s, the region played a role as a base for the processing industry such as canneries. In 1976, the Soviet Union declared a 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Sea of Japan, the Sea of Okhotsk, the Bering Sea and the waters of the Pacific Ocean near Kuril Is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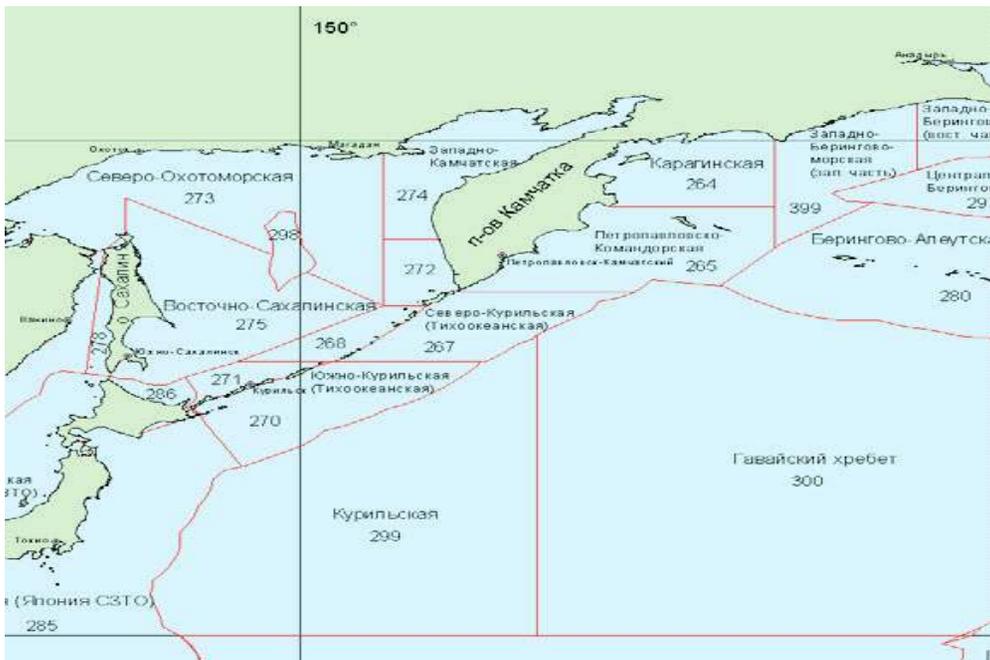


Figure 2. Fishing areas near Kuril Islands

3. Economy in the Kuril fishing industrial complex after the opening of the economy

Economic reformation in the 1990s increased the number of fish processing companies in Kuril Islands and attracted foreign capital. Korea's two companies (Marapon and Sunrise) are under construction. The catch of fish decreased by 2.3 times in 1994, compared to that in 1991 due to illegal fishing, but statistics in Japan showed that the catch of fish and the sale of seafood in Sakhalin and Kuril Islands increased. Thanks to the first Kuril Islands Development Program, over 1,000 tons of seafood could be processed and stored daily, and fish farms that can hatch 70 million fish annually were bui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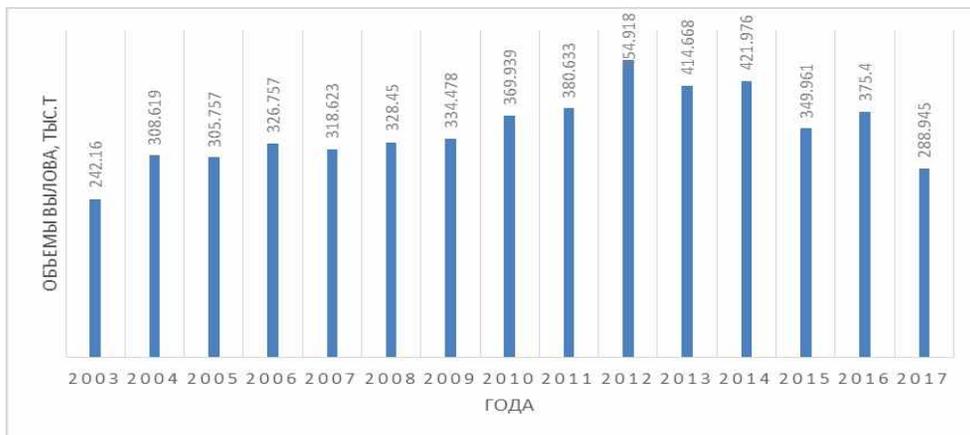


Figure 4. Catch of aquatic biological resources in North and South Kuril Islands (Unit: 1,000 ton)

Due to the depletion of fish stocks in South and North Kuril Islands, the catch of fish has decreased from 2013. The share of pollack, scallop and crab has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salmon. The New Federation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Kuril Islands includes plans to build fish farms to release the fry of keta salmon.

Conclusi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foundation for coastal fishery with the most cost-effective structure was established. The catch of fish was controll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the license system for fishing. During the Soviet Union period, the fishery industry was operated in the way of creating fleets of ocean fisheries and rejecting the modernization of port infrastructure. In the 1990s, fishery resources were depleted, and fishery technologies became outdated. The pro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Kuril Islands was not completely realized in the 2000s. The current federation project provides tax benefits for the development regions toward advanced society in Kuril Islands, which is involved in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

〈요약문〉

1. 일제 지배시기 쿠릴열도의 어업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쿠릴열도의 암초 대는 세 지역으로 나뉘었다. 1) 남 쿠릴열도(남 치시마), 2) 중앙 쿠릴열도(중앙 치시마), 3) 북 쿠릴열도(북 치시마). 19세기 말 남부 치시마에서는 다수의 반관목 공장들과 중소 규모의 연어와 크랩 가공 공장들이 들어서며 어업 기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945년 9월까지 여기에 7개의 생선 통조림공장과 5개의 크랩 통조림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다. 치시마 센터 지역에서는 일본 정부의 특별 지시로 어업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단지 1943년 한 해에만 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 했을 때, 이 규정이 예외적으로 풀렸다. 그러나 일본 회사들이 이곳에 어업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경험 부족과 준비 산업장비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주둔하던 일본군의 일부가 필요한 식량 조달을 위해 물고기를 일부 잡았을 뿐이었다.

중앙 치시마는 일본에게 있어 산업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연안 어업을 통해서만 전쟁말기까지 약 15만톤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주종은 연어였다. 이 곳에서 어업산업은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으나, 단지 1932-1933년에 가서야 대규모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크랩 통조림 공장이 건설되고, 어업 협회가 자리를 잡았으며, 50마일내 연안에서만 어선들이 어업활동을 했다.

1936~1939년 동안 어획량은 10만7천톤에서 19만7천톤으로 증가했다. 부화를 위한 연어 알 1억 8000만개 이상을 보유한 10개의 부화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이투름 섬에 어업활동이 집중 되었다. 쿠릴지역에 있는 일본 산업활동 지표는 <그림 1>을 참고하라.(진한 막대-일본, 연한 막대 소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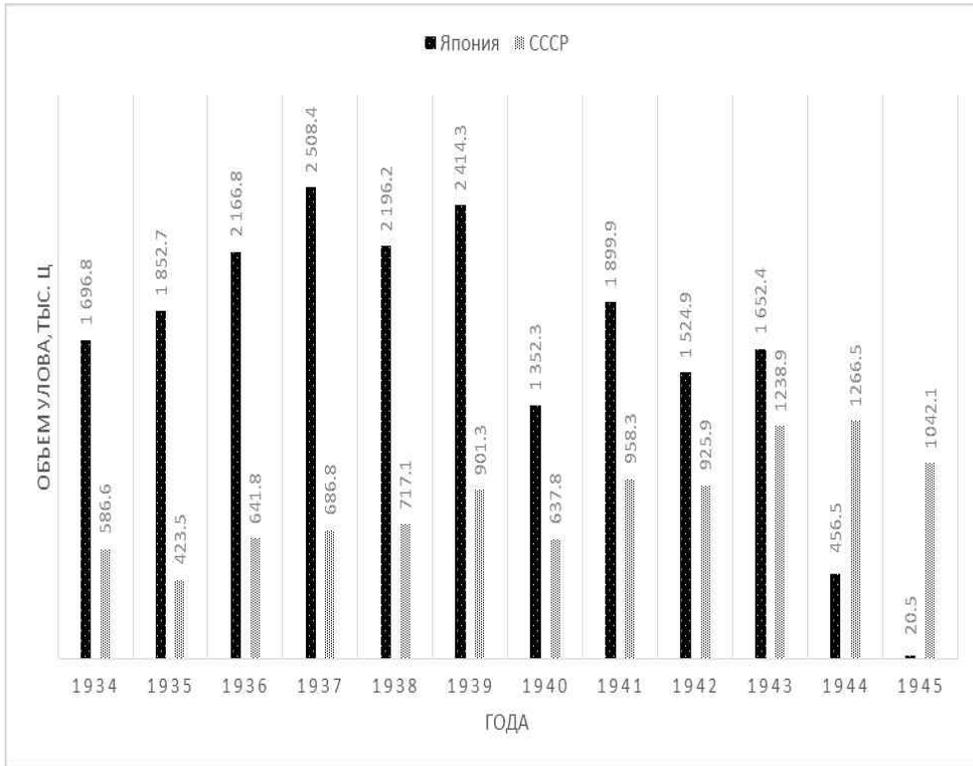


그림 1. 1934~1945년 일본과 소련의 오후츠크해 연안과 쿠릴열도, 캄차카 동쪽과 서쪽 연안의 어획량

2. 소련 시대 쿠릴열도의 어업산업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과, 기반이 약한 어업선단과, 어류 가공능력 및 저장 능력의 취약함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1947년 수 천명의 어민 가족들을 이주시킨 결과로, 어업 집단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주요 어업산업 시설들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기반을 잡았다.

그러나 50년대 초반까지 오후츠크해에서 급격한 어업산업의 성장 결과로 연안 어족 자원들이 고갈되었다.

대양에서 어업의 발전은 필수적인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까지 새로운 어업선단이 창설되었다. 그 결과 대양에서 어업량이 증가 되었다. 그러나 생선의 수거 및 가공과 연관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1958년부터 어업 선

단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가공하며 심지어 통조림까지 생산 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갖춘 해양 어업 기지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물류 이송을 위한 냉동선과, 본선과 운송선 박을 이어주는 작은 운송선들, 연료보급을 위한 유조선, 대형 냉동어선과 냉동기능을 갖춘 원양 트롤선이 갖춰졌다.

1976년 소련은 일본 해, 오후츠크 해, 베링 해와 쿠릴열도에 인접한 태평양 해역에 200마일의 경제 수역을 설립했다. 북 쿠릴 경제수역, 남 쿠릴 경제수역, 캄차카-쿠릴 소 경제구역.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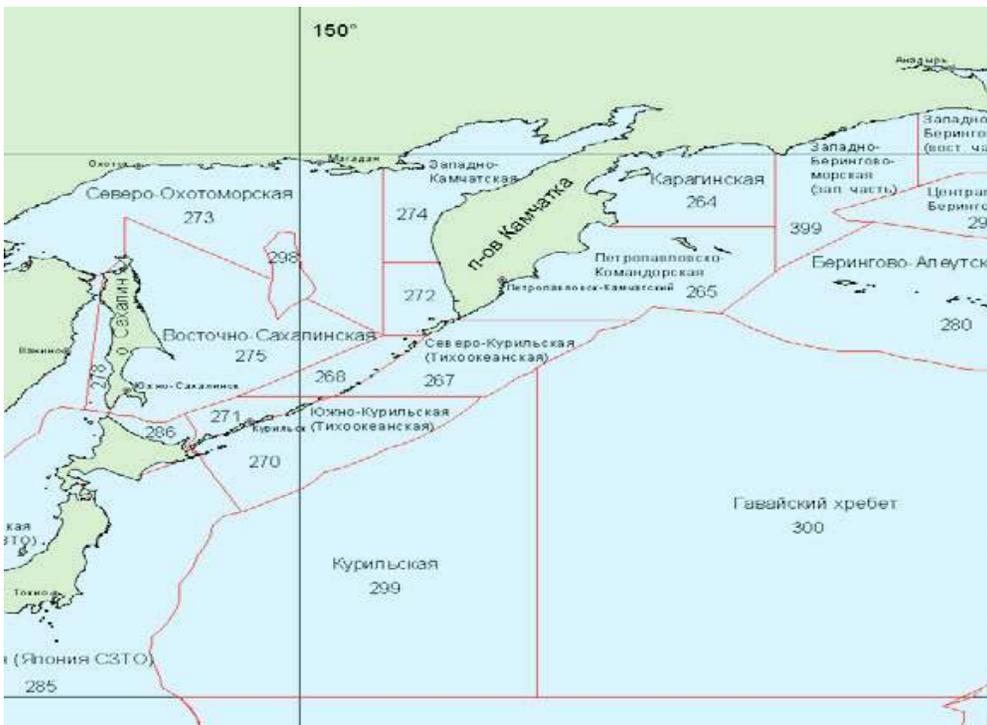


그림 2. 쿠릴열도와 인접한 어업 구역

연어 어획량의 감소는 양어장 건설을 촉진시켰다. 1956년까지 이투릅 섬에는 1개의 오래된 연어 부화장 있었는데, 2500만개의 연어 알을 부화하는 규모였다. 1957년에서 1962년까지 4개의 연어 부화장이 더 생겨났다. 알의 부화량은 9000만개로 늘어났다. 1970~80년대는 1억8000천만으로 더 성장했다. 그러나 인공 부화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3. 개방 이후 쿠릴 어업산업단지의 경제

90년대 개혁의 결과로 쿠릴에는 어업, 어류 가공, 어류 판매, 해산물 판매 등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다. 외국 자본의 투자 시도들도 있었다. 한국의 투자로 파라무쉬르 섬에 유한회사 《마라폰》과 주식회사 《선라이즈》 등 2개의 어류가공공장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불법어업과 밀수, 뇌물수수 등의 확산은 공식적인 어획량의 감소를 야기시켰다. 1991년과 비교하여 1994년에는 2.3배 어획량이 감소 했다. 그러나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어획량과 해산물 판매량은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다.

1차 쿠릴열도 개발 연방 프로그램의 시행결과로 하루 1000톤 이상의 해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류가공능력이 갖춰졌고, 하루 저장 용량이 1000톤에 달하는 대형 냉장고가 건설되었으며, 연간 7000만 마리를 부화 시킬 수 있는 양어장이 재건설 되었다.

어업 선단의 구성은 배가 6척으로 증선 되었다. 6개의 치어 부화장을 건설하는 2차 연방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완료 되지 않았다. 주요 가공 공정이 해안으로 옮겨 온 것과 연관해 어류 가공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도처에서 해상어업가공 기지의 수요가 없어지고, 원양 냉동 트롤선 같은 대형 선박이 사라졌다. (<그림 3>)



그림 3. 쿠릴열도에서 어업을 가능하게 해준 어업 회사 선박의 기술장비(파란색: 대형 선박, 붉은색: 중형 선박, 연두색: 소형 선박, 보라색: 보조 선박)

해양 생물 자원의 어획량 변화. (그림 4) (단위: 100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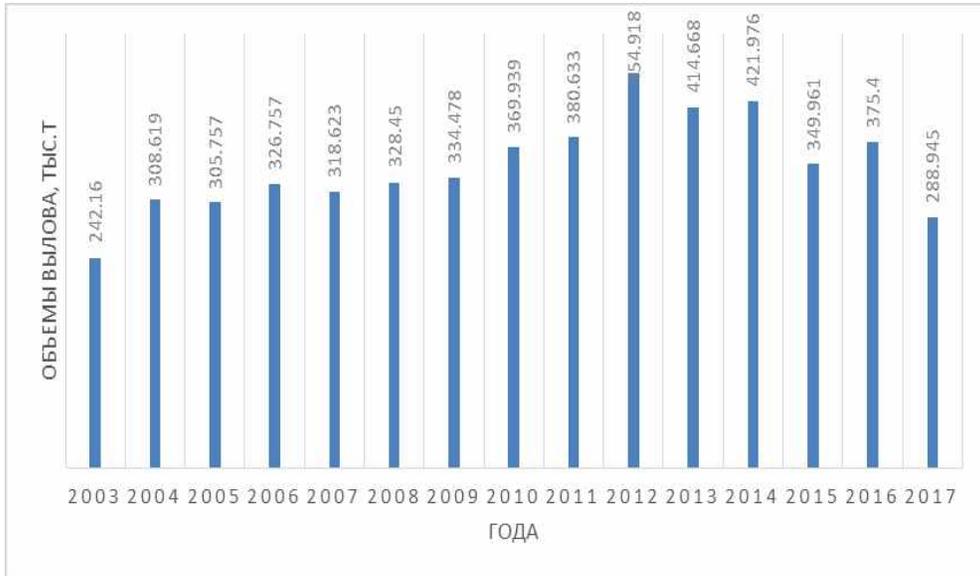


그림 4. 북 쿠릴과 남 쿠릴 어업구역에서 수생 생물자원의 어획량

2013년부터 어획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는데, 남 쿠릴과 북 쿠릴 어업구역에서 어족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과거부터 주요 어업산업 구역으로는 북 쿠릴 지역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주요 어획 대상으로 연어 보다는 명태, 가리비, 크랩 쪽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쿠릴 열도 개발 신 연방프로젝트의 실행은 케타(연어과로 몸집이 크고 흔하며, 가격이 비싸다) 치어 방류를 위한 부화장 건설과 어류 가공 산업의 발전 및 《쿠릴》 선진사회발전지역에 양어장 시설의 건설이 포함된다.

결론

일본이 지배하던 시기에 연안 어업의 기반이 발전되었고, 가장 경제적인 구조였다. 이 시기에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은 어족자원 보존정책과 허가제의 메커니즘을 통한 어획량에 대한 엄격한 조정관리였다. 소비에트 시대는 해양 어업의 창설과 항구 기반시설 근대화를 거부하는 형태로 어업산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0년대는 어족

자원의 고갈과 기술기반의 노후가 진행되었다. 연방차원의 쿠릴열도 프로젝트는 2000년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연방 프로젝트의 개념은 쿠릴 선진사회발전지역에서 세제 특혜를 제공 하는 가운데 기업투자를 끌어들이는 것과 연관 있다.

Развитие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трасли экономик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Аннотация

Проведены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звития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трасл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и постперестроечный период. Сделаны выводы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развития рыбодобычи, рыбоводства по каждому этапу развития.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отрасль, рыбопереработка, рыбоводство, вылов.

Введение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отрасль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условиях слабой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экономики островов по – прежнему остается главной доходобразующей для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отраслью. От перспектив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сегодня зависит будущее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 состоя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стровов.

1. Рыбное хозяйство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Все острова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в промысловом отношении японцами делились на три района: 1) южны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южная Чисима), исключая острова от Хоккайдо до Эторофу, 2) средни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средняя Чисима) от Эторофу до Парамусира и 3) северны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северная Чисима), включавшая острова Сиринки, Парамусир, Симусю и Араидо (Алаид).¹⁾

1) Лагунов И.И. О рыболовстве японцев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р

На южны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еще в конце XIX в. нач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много небольших полукустарных заводов и рыбных баз, ловивших и обрабатывавших лососей и краба. Общий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них был небольшим. В дальнейшем заводы и базы на Эторофу, Сикотан и Кунасири были объединены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м обществом «Итурупи Си–Сан», промышленявшим только лосося. Там же работало АО «Ничир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о словам японцев, было семь рыбоконсервных, четыре крабоконсервных завода на острове Эторофу и один на острове Сикотан. Все эти предприятия имели по одной линии и работали до сентября 1945 г.

На средни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рыболовство было ограничено особым указ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понии. Только в 1943 г. из-за острой нужды в рыбных продуктах, это правило было нарушено. Попытки таких фирм, например, «Nippon Sea Animal» и «Hokkaido Fishery Cooperation» организовать здесь рыболовство не увенчались успехом,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из-за недостаточного опыта и дефицита промыслового снаряжения.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на средни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фактически не было. Правда, части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дислоцированные здесь, производили лов рыбы в небольших количествах, притом кустарными орудиями лова. Очень важное промыслов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Японии имели северны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СКО), где прибрежное рыболовство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ойны давало до 1,5 млн центнеров рыбы,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лососей. Возникновение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на СКО относится к началу XX в., но в больших масштабах оно развернулось только в 1932–1933 гг., когда небольшое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е общество «Нишидо» успешно развернуло вылов трески на 10 тресколовных базах,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островах Парамусир и Симусю. В эти же годы оно построило крабоконсервный завод в Муроками, на севере острова Парамусир. С 1934 г. японцы в рамках прибреж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начинают промышленять лососей ставными неводам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а вос-

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амчатки (Выпуск 7, 2004).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fishkamchatka.ru/library/books/2787/12432>

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островов Парамусир и Симусю. В дальнейшем количество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ществ, в т.ч. работавших на условиях концессий, увеличилось.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осло число ставных неводов, разрешения на постановку которых они получали у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Это привело к убыткам таких обществ. Известно, что лососей на СКО ловили не только ставными неводами, но и дрейфтерными сетями с моторных шхун, уходивших на промысел в море на расстояние до 50 миль. Наибольшего развития концессионный японский промысел лососей достиг в период 1936–1939 гг. За эти годы в водах Северных Курил вылов увеличился почти вдвое — с 107 до 197 тыс. т.²⁾ Ежегодно, в тот период,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ежегодно работало около 100 неводных участков, а в дрейфтерном лове лососей участвовало по 200 шхун.³⁾ Японские ловы лососей у Северных Курил в 1934–1944 гг.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превышали ловы на Камчатке.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еще с довоенного периода действовало 10 японских рыбодных заводов (ЛРЗ),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вшихся в основном на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е кеты. Общий объем закладываемой икры превышал 180 млн. шт.⁴⁾ Рыборазводное дело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не получило развития из-за низкой температуры воды и слож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В 1933 г. различными японским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ми обществами на СКО были построены первые 11 механизированных рыбоконсервных заводов. К августу 1945 их насчитывалось 37, большая часть которых была уничтожена в период бомбардировок. Активность японского промысла в район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доказывается данным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ми на Рис. 1.

2) Глубоковский М.К., Лепская В.А., Ведищева Е.В., Кловач Н.В. Промысел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водах северны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стория,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перспективы: сборник «Труды ВНИРО». Т. 158, 2015. С. 75–88

3) Богданов А.С. Рыб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Рыбное хозяйство. № 8. 1946. С. 3–16

4) <http://fish-industry.ru/zavody/1717-lrz-na-yuzhnyh-kurilskih-ostrovah-chast-1.html>

Рис. 1. Объёмы уловов на береговых участках западного и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ий Камчатки, Охотского побережья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Японией и СССР за 1934 – 1945 гг.⁵⁾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союзников стали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сокращения вылова с 1943 г. Но до сих пор японское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е наследие вызыва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 части знаний о миграции лососевых и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рыбного сырца. В 1935—1940 гг. японцы завершили ряд широких океанограф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Японском, Охотском и Беринговом морях с массовым мечением лососей в открытом море. В результате опытных дрейфов и мечения многих тысяч штук взрослых лососей красными целлулоидными метками, они установили пути массовых нерестовых миграций красной (нерки), кеты, горбуши и кижуча из районов Алеутских и Командорских островов к берегам восточной, а затем через проливы СКО — к берегам западной Камчатки и в какой-то мере к охотскому побережью.

Что касается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рыбного сырца, то известно, что из голов лососей вытапливался жир и использовался в отдельных случаях как топливо для двигателей внутреннего сгорания. Из голов и внутренностей трески вырабатывался клей. Но так как он получался низкого качества, то с 1942 г. рыбные отходы стали перерабатываться на кормовую муку и удобрительный тук.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олее длительного хранения при посолке лососей применялась белая глина в смеси с солью, которая благодаря своим свойствам клея хорошо проникает в тело рыбы и предохраняет ее от гниения.

2.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трасл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рыбная отрасль продолжает играть ве

5) Лагунов И.И. О рыболовстве японцев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амчатки (Выпуск 7, 2004).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fishkamchatka.ru/library/books/2787/12432>

душую роль в экономик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Глав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была нехватк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малочисленность, маломощность и ветхость промыслового и обслуживающего флота, слабая механизация, а также малые мощности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и хранению 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Первая проблема была решена переселением нескольких тысяч семей рыбаков – колхозников. В июле 1947 года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начинают создаваться переселенческие рыболовецкие колхозы.⁶⁾

Малочисленный рыболовный флот в основном состоял из изношенных, маломощных и морально устаревших судов. Поэтому основной промысел осуществлялся вблизи берегов. Главным объектом промысла являлась сельдь. Но к началу 50-х годов по причине, прежде всего, интенсивного промысла в Охотском море в возможности наращивания прибреж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были исчерпаны.

В конце 50-х годов нагульная сельдь почти перестала подходить к северным Курильским островам и повсеместно снизились подходы лососевых.⁷⁾ Освоение океаниче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активного промысла) становится жизненно важной задачей. К началу 60-х год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 фактически заново создан рыбопромысловый флот. В 1954 году добыча рыбы рыболовецкими судами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а прибрежный лов. А в 1961 году по «Сахалинрыбпрому» пассивный лов составил всего 3,7 %, активный — 96,3 %, по «Сахалинрыбакколхозсоюзу»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30,4 % и 69,6 %. Но возникла новая проблема, связанная с приемкой и переработкой рыбы, т.к. не хватало береговых мощностей. Поэтому с 1958 года флот стал пополняться плавучими базами, производившими прием, переработку рыбы и даже выпуск консервов в районе промысла. Одновременно флот пополнялся транспортными судами – рефрижераторами, лихтерами, танкерами. В начале 60-х годов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лись большие морозильни-

6) Высоков М.С. Истор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чебник. Гл.19 / М.С. Высоков .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www.kuriles-history.ru>

7) Высоков М.С. Истор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чебник. Гл.20/ М.С. Высоков .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www.kuriles-history.ru>

ые рыболовные траулеры (БМРТ).

С конца 50-х годов промысловый флот Курил добывает камбалу, морской окунь в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Берингова моря, у берегов Приморья – минтай, у западного берега Камчатки – камбалу, минтай, треску,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Охотского моря – сельдь, в южной части Курильского архипелага – сайру.

В 70-е годы почти 2/3 улова составлял минтай. Переработка улова и выпуск товар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оизводилис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плавбазах, плавконсервных заводах, а также на судах типа БМРТ и РТМС (Рыболовный траулер морозильный (супер)). В начале 80-х годов именно эти суда давали более 90% выпуска пищевой рыбопродукции и 75% консервов.⁸⁾

В 70-е годы имеющие выход к морю государства объявляют зоной своего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права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прибрежную полосу шириной 200 миль. В 1976 году СССР тоже установил у своего побережья двухсотмильн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зону, и теперь, в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е распоряжение советских рыбаков перешли значительные части акваторий Японского и Берингова морей, почти все Охотское море и прилегающая к Курильским островам полоса Тихого океана.

8) Высоков М.С. Истор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чебник. Гл.21/ М.С. Высоков .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www.kuriles-history.ru>

ен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ССР в 1946 году на о. Итуруп до 1956 года действовал 1 ЛРЗ (восстановленный старый японский завод) мощностью 25 млн. икринок. В период с 1957 по 1962 год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еще 4 ЛРЗ. Объемы закладки возрастают до 90 млн. Последующее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ов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в 1970–80–е годы до 180 млн. позволило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уловы на уровне 12–14 тыс. тонн. Однако увеличение уловов наблюдалось только там, где расположены мощные ЛРЗ в заливах Курильский и Простор. Судя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ерестовых стад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была низкой (на уровне естественного), т.к. при низкой температуре невозможно достичь необходимого подращивания молоди.¹⁰⁾

3. Экономика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урил постперестроечного периода

Реформы 90–ых годов внесли в рыбную отрасль,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отраслей больше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озникаю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фирмы, занятые добычей, переработкой и продажей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На о. Парамушир с участ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начинают строить два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а: ЗАО «Марафон» и ООО «Санрайз».

Вместе с этим, огром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лучили браконьерство, контрабанда и связанная с ними взяточничество, что привело к снижению официальных данных по вылову. По данным статистики РФ в 1994 году рыбы по сравнению с 1991 годом было выловлено в 2,3 раза меньше (уловы упали с 856 до 375 тысяч тонн), но по данным статистики Японии объемы сбыта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сахалинскими и курильскими рыбаками увеличились.¹¹⁾

В 1993г.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ринимается Федер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

10) <http://fish-industry.ru/zavody/1717-lrz-na-yuzhnyh-kurilskih-ostrovah-chast-1.html>

11) Высоков М.С. Истор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чебник. Гл.23/ М.С. Высоков .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www.kuriles-history.ru>

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а 1994 – 1995гг. и до 2000г.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8 августа 2003г.).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в поселках Рейдово, Рыбаки, Китовый (о.Итуруп), Крабозаводское (о. Шикотан), Южно –Курильск (о.Кунашир) введены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мощности общим объемом более 1 тыс. тонн в сутк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рыбы, крабов,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и других), построено 2 холодильника мощностью 1 тыс. тонн единовременного хранения в сутк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 Рейдовый рыболовный завод мощностью 70 млн. штук молоди в год. Промысловый флот был увеличен на 6 судов.¹²⁾

В 2006г. принимается вторая Федер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 –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2007 – 2015гг»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28 октября 2015г.), гд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косвенно связанных с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м комплексом¹³⁾ и ввод 6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ов. В итоге не было введено ни одного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¹⁴⁾ Поэтому, если по итогам реализации первой программы происходило укрепление 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рыбодобывающих компаний, то с 2006г. наблюдается сокращ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судов. (Рис.3) Меняется концепция рыбопереработки, связанная с переносом основных процессов переработки на берег. На рыболовных судах, чаще всего средних размеров, происходит первичная переработка, сортировка и заморозка. Поэтому повсеместно происходит отказ от плавбаз и больших судов типа БМРТ. Все порты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рассчитаны на малотоннажные суда. А рейдовая разгрузка влечет за собой большие затра

12) О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1994–1995 годы и до 2000 года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8 августа 2003 года) (фактически утратило силу в связи с истечением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docs.cntd.ru/document/9004925>

13) Концепция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2016–2025гг.»: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7.12. 2014 №2572–р.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s://docviewer.yandex.ru>

14)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на Курилах не было запущено ни одного нового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 результаты контроль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Бюллетень счетной палаты.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audit.gov.ru/activities/control/6501/>

ты по доставке. Государство перестало субсидировать предприятия рыбного сектора. Поэтому наибольше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начинают пользоваться маломерные и средние суда.

Рис. 3. Техническая оснащенность судами рыболовных компаний,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промысел у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¹⁵⁾

Меняются объемы улова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Рис.4).

Рис. 4. Объемы вылова ВБР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й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й зонах^{16) 17)}

С 2013г. происходит разворот тренда вылова на понижающий. Рыбная продукция продолжает занимать наибольшую долю в вылове. Поэтому падение захода сайры, минтая, трески, лососевых существенно меняют структуру вылова. Наблюдается истощение рыбных ресурсов Южно –Курильской зоны и Северо – Курильской зоны. Эти зоны теперь мало интересуют иностранные рыбодобывающие компании. Квоты перестают пользоваться спросом.

По–прежнему главной промысловой зоной остается Северо – Курильская зона, но ее специализация теперь больше связана с выловом крабов, гребешка, минтая, чем с добычей лососевых.

Принятая в конце 2014г. Концепция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2016–2025гг.»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а не только перенос планирования программ, но

15) Промысел биоресурсов в водах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современная структура, динамика и основные элементы [Текст] / Под общ. ред. А. В. Буслов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ахалинск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океанографии, 2013. – С.17.

16) Промысел биоресурсов в водах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современная структура, динамика и основные элементы [Текст] / Под общ. ред. А. В. Буслов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ахалинск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океанографии, 2013. – С.11 .

17) Сведения об улове рыбы, добыче других в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производстве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за январь – декабрь 2011–2017гг.: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наблюдение. Адрес доступа: www.gks.ru

и основ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их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на региональную власть, что существенно ограничивала возможност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развития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урил и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обновления парка судов. Основной акцент в мероприятиях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пции теперь делаетс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ов,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хся на выведение молодежи.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власть возлагает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в глубокую переработку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и рыбопереработку в условиях ТОСЭР «Курилы»¹⁸⁾.

Выводы

Развитие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трасл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ак японского периода, так и современного периода основывался на прибрежном рыболовстве, как наиболее экономичном. Именно в этот период зарождается рыболовное дело и технологии переработки, хране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ая роль государства в этот период заключалась в жестк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рыбодобычи через механизм концессий и политику сбережения рыбных ресурсов. Прорывом можно считать развитие океаниче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которое было связано с огромными затратами, субсидируемых государством. Но это был период полного отказа от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тагнации рыболовства. Отказ государства в 90-ые годы от регулирования рыбодобычи, рыболовства и поддержки переработки и привели к истощению рыбных ресурсов и снижению возможностей обновления 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Огромные вливани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двух Федер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роисходили бессистемно и без должного контроля, что привело к большому количеству объектов незаверш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т.ч. 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трасли. Разработан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Концепци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ую инициативу, что хар

18) О создании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ы":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08.2017г. №992.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government.ru/docs>

актерно для экономики ТОСЭР. Но масштабы ее в условиях истощения рыбной базы будут целиком зависеть о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арантий и преференций, выгоды условий концессии.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1. Балькин П.А., Бонк А.А., Старцев А.В. Оценка состояния запасов и управление промыслом морских рыб: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направления 111400.62, 111400.68, 35.03.08, 35.04.07 «Водные ресурсы и аквакультура» очной и заочной форм обучения – Всемирный фонд дикой природы (WWF).2014.63с.
2. Богданов А.С. Рыб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Рыбное хозяйство. № 8. 1946. С. 3–16
3. Высоков М.С. Истор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чебник. Гл.19, 20,21 / М.С. Высоков .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www.kuriles-history.ru>
4. Глубоковский М.К., Лепская В.А., Ведищева Е.В., Кловач Н.В. Промысел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водах северны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стория,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перспективы: сборник «Труды ВНИРО». Т. 158.2015. С.75–88
5.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на Курилах не было запущено ни одного нового рыбозавода – результаты контроль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Бюллетень счетной палаты.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audit.gov.ru/activities/control/6501>
6. за январь – декабрь 2011–2017гг.: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наблюдение. Адрес доступа: www.gks.ru
7. Концепция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2016–2025гг.»: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7.12.2014 №2572-р.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s://docviewer.yandex.ru>
8. Лагунов И.И. О рыболовстве японцев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амчатки (Выпуск 7, 2004).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fishkamchatka.ru/library/books/2787/12432>
9. О создании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ы":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08.2017г. №992.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government.ru/docs>

10. О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1994–1995 годы и до 2000 года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8 августа 2003 года) (фактически утратило силу в связи с истечением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Адрес доступа: <http://docs.cntd.ru/document/9004925>
11. Промысел биоресурсов в водах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современная структура, динамика и основные элементы [Текст] / Под общ. ред. А. В. Буслов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ахалинск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океанографии, 2013. – 264 с. .
12. Сведения об улове рыбы, добыче других в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производстве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за январь – декабрь 2011–2017гг.: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наблюдение. Адрес доступа: www.gks.ru
13. <http://fish-industry.ru/zavody/1717>
14. <http://fish-industry.ru/zavody/1717-lrz-na-yuzhnyh-kurilskih-ostrovah-chast-1.html>

<Summary>

2차 세계대전과 동북아에서 영토 분쟁 World War II and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진 율리아 (Yulia Jin)*

World War II was the most significant event of the 20th century that had a profound impact on boundary issues. Unlike Europe, Asia went through remarkable changes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Empire of Japan. In Asia, the war against Japan was mostly led by the US. The US made efforts to drag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with Japan since 1943. Stalin agreed conditionally, and decided to enter the war after Germany's surrender. The US wanted the Soviet Army with great experience and skills in land warfare to fight the million of the Japanese Kwantung Army.

The Soviet Union had to be rewarded for taking part in the war with Japan. However, Stalin did not reveal his interests and made the US think about it. As a result, Roosevelt transferred southern Sakhalin and Kuril Islands to the Soviet Union and considered Russia's historical interests in Manchuria, and also offered critical discretion over the postwar settlements of Northeast Asia, to which the Soviet Union agreed. This is the Yalta Conference in February 1945 and the Potsdam Conference in July 1945, and that was when the basic agreement about the boundaries of the Far East was made.

Three months after Germany's surrender, the Soviet Union entered war with Japan on August 9, 1945. Until September 7, the Soviet Army seized all regions

* 사할린 향토박물관(Sakhalin Museum)

as planned, and southern Sakhalin and Kuril Islands were also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along with Manchuria. Korea was divided by the 38th parallel, with the north seized by the Soviet Union and the south by the US. Japan and the islands that belong to Japan were put under control of the US Army led by General D. MacArthur.

However, not long after the war ended, conflicts arose among the allies of the anti-Hitler coalition that led to the Cold War, which also affected the postwar settlements of Asia. The ideological conflict made certain things impossible, such as sovereignty over the Kuril Islands, Korea as an independent unitary state, and the end of the Chinese Civil War. As a result, some issues were resolved such as repatriation of civilians in southern Sakhalin and Kuril Islands, or establishment of the new boundaries, but still many issues remain unresolved. These unresolved issues are emerging today as military conflicts. The US and the Soviet Union with nuclear weapons have been refraining from being engaged in direct conflict, but regional disputes have been secretly arising. The first case was the Korean War. Two blocs emerged, such as the NATO led by the US and the Warsaw Treaty Organization (WTO) led by the Soviet Union, to hold each other in check.

With regard to Japan, there was the Treaty of San Francisco in 1951. Japan lost control over southern Sakhalin, Kuril Islands, Korea, Taiwan and Manchuria, and its military strength was restricted. However, the Treaty was clearly political and inflammatory. Furthermore, reference to many islands of dispute such as the Kuril Islands and Dokdo were deleted. The Soviet Union and socialist states did not sign the Treaty, and the confusion went on after that. The Cold War ended along with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and so did the socialist camp, but issues still continue to increase. Russia and Japan did not sign a peace treaty, because Japan continues to claim sovereignty over the Kuril Islands. The dispute over the islands is becoming more intense in Japan and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the East Sea (Sea of Japan), and there are many other humanitarian issues

(repatriation of detainees to their native countries, compensation for compulsory mobilization, compensation for war crimes) that still remain unresolved.

〈요약문〉

2차 세계대전은 그 충격과 범위에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계 문제에 중요한(아마도 가장 현저하게)영향을 끼쳤다. 유럽에서와 같지는 않았으나, 아시아는 무엇보다 일본 제국의 청산과 관계된 큰 변화를 겪었다.

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은 주로 일본의 전쟁행위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 전쟁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되었고,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일본은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고,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나라들과 지역들은 반 히틀러 연합의 동맹국들에 의해 향후 처리문제가 결정되었다.

아시아에서 대 일본 주요 전쟁들은 미국이 수행했다.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은 일본의 진주만 습격과 함께 시작되었고, 미국의 군사력(주로 해군)은 일본을 막기 위해 전쟁에 개입했다. 당시 소련은 히틀러의 군대와 유럽에서 처절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을 막기 위한 전력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F.D.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을 저지하기 위한 전투로 소련의 힘을 끌어들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루즈벨트의 특별한 관심은 중국 대륙에서 활개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있었다. 관동군의 숫자는 사병과 장교를 합해 백만이 넘었고, 육지에서 전투는 미국에게 추가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을 필요로 했었다. 그래서 1943년부터 이미 루즈벨트는 소련을 일본과의 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스탈린은 조건부로 이 요청에 동의했다. 유럽 전선에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을 끝낸 다음에 아시아 전선에 참전을 약속했다. 그것은 백만의 관동군이 그에 상응하는 병력을 막기 위해 극동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것에 의거한 것이었다. 적어도 연합국들은 히틀러의 군대에 대항해 힘든 전투를 수행하며 시련을 겪은 소련의 붉은 군대는 해상 전투에 익숙한 미국의 군대보다 육상전에서 더 뛰어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소련이 일본을 막기 위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보상을 받아야만 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소련-미국간 협상에서 스탈린은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심사를 먼저 밝히지 않았고, 이것을 미국 대표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그 결과 루즈벨트는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소련에게 양도하고 만주에서 러시아의 역사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또한 동북아 전후 해결에 대한 중대한 결정권을 소련에게 제시했다. 스탈린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소련에게 필요한 관심사를 잘 이해 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이 제안에 동의했다.

미국과 소련간의 결정은 주로 이 문제들을 정리한 1945년 2월 알타회담과 1945년 7월 포츠담회담을 통해서 이뤄졌다. 바로 그 회담장에서 극동 지역의 국경에 관한 기본 합의가 이뤄졌다. 포츠담 회담에서는 일본에게 제안될 무조건적인 항복에 관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소련은 약속을 지켰다. 독일의 항복이 있는 후 정확히 3개월이 지나고(포츠담 선언문에 기록된 것처럼),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중립에 대한 협정 파기를 선언 했고 공식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을 개시했다. 그날 바로 소련군 총 사령관 A.M. 바실레프스키가 이끄는 붉은 군대는 소련-일본, 소련-중국 국경을 건넜고, 일본군과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은 길지 않았다. 사기가 떨어지고 큰 손실을 입은 관동군은 경험 많고 무장을 잘 갖춘 붉은 군대에 저항 할 수 없었다. 이미 8월 말까지 상당수의 일본군은 포로로 잡혔고, 9월 7일까지 소련군은 계획한 모든 지역을 장악했다.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완전하게 소련에게 점령되었다. 만주 지역(그 중에서도 일본이 만주에 세운 괴뢰국가 만주국)또한 소련군에 의해 점령 되었다.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며 분단되었다. 일본과 일본에 속한 섬들은 D.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미군이 상륙하여 완전히 통제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 후 얼마 되지 않아, 반 히틀러 연합의 동맹국들 사이에는 냉전으로 이어지는 분쟁이 시작 되었다. 비록 이 분쟁들은 주로 유럽지역(폴란드, 터키 그리고 그리스)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전후 처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념의 대립은 일본의 식민지의 상실과 관계된 문제들, 쿠릴열도 소유권의 확고한 정립, 독립된 단일국가로써 한국의 재건 그리고 중국에서 내전의 종식 등의 문제를 분쟁 없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전후 처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고위급 회담에 외무 장관, 특별 대표단 등 이 참여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또한 일본을 위한 동맹 협의회, 극동 위원회, 한국을 위한 연합위원회 등 전권 위원회들이 창설되었다. 그 결과 남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민간인 송환, 새로운 국경선 정립 등의 일부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다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오늘날 군사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무기를 소유한 소련과 미국 같은 초강대국들은 직접적인 충돌은 자제하고 있지만, 지역간 분쟁들은 비밀스럽게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한 분쟁의 첫 사례는 한국전쟁이었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소련, 이 시기에 공산당이 승리한 중국)이 지원했고, 남한은 유엔의 깃발아래 수많은 동맹국들과 미국이 지원했다.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초강대국들은 미국의 주도아래 자본주의 국가들이 참여한 NATO와 소련의 주도아래 사회주의 진영을 단결시키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의 2개의 블록을 등장시켰다.

일본과 연관해서는 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공고히 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1951년 작성되었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남 사할린, 쿠릴열도, 한국, 대만, 만주 등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고, 침략 야욕을 다시 꿈꾸지 못하게 군사력과 해군력 소유를 제한 받게 된다.

그러나 조약의 본문에는 더 상세한 내용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고, 내용의 일부는 명백하게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소쿠릴 압초대, 독도처럼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된 섬들에 대한 언급은 삭제되었다. 그래서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상한 소문을 남기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났다. 그 시기 이후로 2차 세계대전 후 해결 되었어야만 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혼란스러움은 계속 되었다. 냉전이 소련의 붕괴와 함께 끝이 났고, 사회주의 진영도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계속 축적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평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쿠릴열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계속 선언하면서 영토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남한, 북한, 중국과 동해(일본 해)에서 섬을 둘러싼 논쟁들이 심화되고 있고, 그 밖에 인도주의적 차원의(억류자들의 본국 송환, 강제 이송된 사람들에게 대한 물질적 보상, 전쟁 행위 및 범죄로부터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유럽 국가들, 미국, 아시아간의 해결되지 않는 모순을 발생시킨 2차 세계대전은 이 모든 모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순들을 만들어냈다.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ин Ю.И.

Вторая война по своему накалу и размаху была не только самым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XX века, но и оказала значительное (пожалуй, самое знач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границы государств. Пусть и не так, как в Европе, но Азия также претерпела существ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связанны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ликвидацией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в Азии в основном сводилась к действиям Японии. По сути началась она с агрессии Японии против Китая, а закончилась с подписанием Акта о капитуляции 2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Япония потерпела разгромное военное поражение, а судьба стран и территорий, ею оккупированных, решали союзники по антигитлеровской коалиции.

Основную тяжесть войны в Азии выдерживали на себе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Их вступление во Вторую мировую войну началось с нападения Японии на Перл–Харбор и именно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в основном морские) сражались проти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ыносил на себе всю тяжесть борьбы в Европе против гитлеровской армии и не имел практических сил воевать против Японии. Однако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езидент Ф.Д. Рузвельт был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привлечении советских сил для борьбы против Японии.

Особенну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Рузвельта вызыв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добиться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ской Квантунской армии, дислоцировавшейся на материковом Китае. Контингент ее составлял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и война на суше потребовала бы от СШ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людских и матери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Поэтому уже с 1943 года Рузвельт пытался вовлечь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 войну против Японии.

Сталин согласился, однако пообещал сделать это тольк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в Европе и капитуляции Германии. Он исходил из того, что миллионная Квантунская армия потребует переброск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армии. Тем не менее, союзники понимали, что Красная Армия, прошедшая через горнило тяжелейшей войны против гитлеровской армии, имеет лучший боевой опыт в войне на суше, чем американская армия, которая привыкла вести войну на море.

Разумеется, вступление в войну против Японии дл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должно было быть вознаграждено. При этом стоит учесть, что в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Сталин никогда не озвучивал свой возможный интерес сам, а представлял сделать это американски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В итоге Рузвельт предложил ряд уступок – передачу СССР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озвращ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учет российск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в Маньчжурии, а также весомый голос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послевоен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талин согласился, отметив, что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езидент хорошо понимает интерес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Азии.

Особенно Сталина порадовали предложения Рузвельта по поводу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оссия уступила да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Японии еще при царской власти – по договорам 1855 г. (Южные Курилы)¹⁾, 1875 г. (Северные Курилы)²⁾, 1905 г. (Южный Сахалин)³⁾ – тем не мене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часть из них (Южный Сахалин) воспринимались в советск

1) По Симодскому трактату 1855 г.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впервые договорились считать границу между дву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проходящей между островами Уруп и Итуруп (Южные Курил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изнавались японскими, Северные – российским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 нераздельным владением обоих государств.

2) П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му мирному договору 1875 г. Россия уступала Японии все принадлежащие ей Северные Курилы в обмен на безраздельное владение островом Сахалином.

3) Проиграв Русско-японскую войну 1904~1905 гг., Россия по Портсмутскому мирному договору 1905 г. уступила Японии южную часть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а до 50-й параллели.

ом обществе как «исконно русская земля», уступленная агрессору. Стоит добавить, что Северный Сахалин, как локализованный небольшой островок земли, не мог полноценно развиваться в условиях «окруж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сложностей навигационных путей, тяжелого климата, отсутствия глубоководных портов и выхода в Тихий океа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езидент показал советскому лидеру свое знание и понимание положения Росси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Решения между США и СССР принимались в основном на конференциях – определяющими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были Ялтинская (в феврале 1945 г.) и Потсдамская (в июле 1945 года) конференции. Именно там были заключены основны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границ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Потсдаме также было принято требование к Японии о безоговорочной капитуляции.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сдержал свое слово. Ровно через три месяца после капитуляции Германии, 8 августа в 17 часов по московскому времени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М. Молотов вызвал в Кремль японского посла Сато. Молотов зачитал и вручил японцу зая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ССР об объявлении войны. Сато получил разрешение отправить заявление по телеграфу, что и было сделано спустя определенное время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перевода заявления на японский язык. Стоит сказать, что эта информация до Токио так и не дошла вовремя и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знало об объявлении войны из сообщения Московского радио 9 августа в 4 часа⁴). 10 августа войну Японии объявила и Монголь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⁵).

В тот же день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под общим командованием марш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А.М. Василевского перешли советско-японскую и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ую

4) Черевко К.Е., Кириченко А.А.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9 августа – 2 сентября 1945 г.). Рарекционные архивы (предыстория, ход, последствия). М.: МППА «БИМПА», 2006. 320 с. С. 243.

5)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941~1945. В 12 т. Т. 5. Победный финал. Завершающие операц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Европе. Война с Японией. М.: Кучково поле, 2013. 864 с. С. 495.

ю границу и вступили в бои с японской армией.

9 августа 1945 г. около 1 часа ночи по хабаровскому времени передовые 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отряды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1-го и 2-го ДВФ пересек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границу и начали наступле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ю Маньчжурии, к боевым действиям приступил и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С рассветом в наступление перешли главные силы фронтов. Операция предполагала разгром Квантунской армии и овладение важнейшими центрам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Китая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тр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 хингано-мукденском, харбино-гиринском и сунгарийском⁶⁾.

Наступ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началось с удара авиации по командным пунктам, штабам и узлам связи противник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ами фронтов с утра 9 августа бомбардировочная авиация нанесла удары по важнейшим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 станциям и узлам, а также по военным объектам в городах Харбин, Чанчунь, Гирин.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удара,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овали сотни советских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ов и штурмовиков, связь между штабами и формированиями японских войск в Маньчжурии в первые же часы войны была нарушена, и командование Кванту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потеряло управление ими⁷⁾.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начал подготовку к десантным операциям для овладения военно-морскими базами и портами противника на побережье Кореи. Одновременно его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е силы и соединения торпедных катеров нанесли удары по кораблям, береговой обороне и другим объектам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ортах Юки, Расин, Сейсин⁸⁾.

В течение первого дня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1-й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армии и 5-й армии пробивали брешь в укрепленных районах и продвинулись в глубь Маньчжурии до 20 км. На правом крыле фронта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35-й армии 1-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перешли в наступление в направлении Хутоу и

6) ЦАМО РФ. Ф. 66. Оп. 178499. Д. 8. Л. 231-233.

7)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941~1945. В 12 т. Т. 5. Победный финал. Завершающие операц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Европе. Война с Японией. М.: Кучково поле, 2013. 864 с. С. 495.

8) Там же. С. 496.

в районе западнее Павло–Федоровки. После артиллерийской и авиацио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проведенной по Хутоускому укрепленному району, и 15–минутного 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налета по району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западнее Павло–Федоровки главные силы армии форсировали реки Уссури и Сунгач. Сломив сопротивление неприятеля, они преодолели обширный болотистый район на западных берегах этих рек и развернули бои с целью расширения плацдармов и прорыва Хутоуского укрепленного района. К исходу дня соединения армии, продвинувшись на глубину 5–12 км, перерезали железную и шоссейную дороги в районе 14 км юго–западнее Хутоу.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единения 25–й армии обходили и блокировали узлы сопротивления Дуннинского и Дунсинчженьского укрепленных районов. К исходу дня они, углубившись в оборону противника до 10–12 км, перерезали дорогу Дуннин – Тумынь в пяти направлениях на всем ее протяжении и овладели рядом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На левом крыле фронта части юж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25–й арм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ртиллерии корабле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начали штурм долговременных укреплений японцев на границе с Кореей. В тот же день они форсировали реки Хуньчунхэ и Тумыньцзян и занял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г. Кэйко. 10–12 августа основная группировка войск фронта, уничтожая узлы сопротивления, развивала наступление в обще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 Муданьцзян. На правом крыле фронта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35–й армии, овладев Хутоуским укрепленным районом, основными силами продолжали наступать в направлении на Мишань.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1–й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армии 11 августа заняли города Лишучжень и Бамянтун, а 12 августа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войсками 35–й армии овладели г. Мишань и Мишаньским укрепленным районом.

К исходу 12 августа передовые части 1–й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армии на дальних подступах к Муданьцзяну форсировали р. Мулинхэ, а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5–й армии, овладев 11 августа г. Мулин, также вышли к этой реке. Одновременно главные силы 25–й армии, преодолевая сопротивление противника, вели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Ванцин. В районе Муданьцзян враг оказывал упорн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е, переходя в яростные контратаки. Войска фронта, успешно отбивая эти контратаки, завязали бой на внешнем обводе муданьцзянских укреплений японцев. Соединения левого фланга 25-й армии 11 августа с боем овладели Хуньчуньским укрепленным районом противника и, стремительно наступая вдоль побережья в направлении Сейсина,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кораблям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к исходу 12 августа овладели портами и городами Юки и Расин.

В течение 13 и 14 августа наступление продолжилось. На правом крыле фронта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35-й армии к исходу 13 августа овладели г. Дунань и наступали в направлении Линькоу. 1-я Краснознаменная армия овладела г. Линькоу, ее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форсировали р. Муданьцзян и вошли с северо-востока в г. Муданьцзян, где завязали упорные уличные бои. К исходу 14 августа с востока к ни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5-й армии⁹⁾.

14 августа войска 1-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в условиях труднопроходимой горно-таежной местности и яростн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противника продвинулись в глубину Маньчжурии на 120-150 км, прорвав сильно укрепленную полосу обороны. Войска фронта овладели семью мощными укрепленными районами (Хутонским, Мишаньским, Пограничным, Дуннинским, Дунсинчженьским, Хуньчуньским и Кэнхынским), вышли к рубежу обороны, подготовленному противником по линии Линькоу - Муданьцзян, и завязали бои на внутреннем обводе сильно укрепленного опорного пункта противника - г. Муданьцзян, который запирает выходы в Центральную Маньчжурию со стороны Приморья.

На хинганско-мурма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ойска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фронта 9 августа в 00 часов 10 минут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без артиллерийской и авиацио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начали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сильными передовыми отрядами. В 4 часа 30 минут на всех операцион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ереш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границу и главные силы фронта. Ввиду того что главные силы Кванту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9)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941~1945. В 12 т. Т. 5. Победный финал. Завершающие операц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Европе. Война с Японией. М.: Кучково поле, 2013. 864 с. С. 497.

ки войск были расположены далеко в глубине Маньчжурии, войска фронта устремились к перевалам хребта Большой Хинган. К исходу дня на правом крыле и в центре они продвинулись общевойсковыми соединениями до 50 км и подвижными соединениями – на 120–150 км, а на левом крыле в ходе боя овладели Чжалайно́р–Маньчжурским укрепленным районом, крупными узлами дорог, городами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и станциями Маньчжурия и Чжалайно́р, форсировали р. Аргунь на участке Богдановка – Старо–Цурухайтуй, продвинувшись на отде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до 40 км. Группа войск МНР главными силами (25–я мотострелковая и 43–я танковая бригады, 3–й отдельный танковый полк, 5, 6, 7, 8 и 59–я кавалерийские дивизии со средствами усиления) на долонно́р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одвинулась на 55 км, имея передовые части на подступах к Нарто–Сумэ, а часть сил (7–я бронетанковая бригада, 27–я мотострелковая бригада и 30–й мотоциклетный полк) выдвигалась вдо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из района 25 км юго–восточнее Дзамьин–Удэ в направлении на Эрлянь.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17–й армии (278, 284 и 209–я стрелковые дивизии со средствами усиления) на чифы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 исходу 9 августа продвинулись главными силами до 50 км, а передовыми частями – до 70 км, имея их в районе озера Табун–Нур. В это же время 6–я гвардейская танковая армия (9–й гвардейский механизированный корпус, 7–й механизированный корпус и 5–й гвардейский танковый корпус, насчитывавшие механизированных бригад – 6, мотострелковых бригад – 1, танковых бригад – 5, мотострелковых дивизий – 2, мотоциклетный полк – 1 со средствами усиления), развивая наступление в обще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 Чанчунь, продвинулась на глубину до 150 км. Ее передовые части уже находились на подступах к перевалам Большого Хингана¹⁰).

12–я воздушная армия, поддерживая войска фронта, наносила удары по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 узлам противника Халун–Аршан, Солунь, Хайлар и по станциям У

10)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941~1945. В 12 т. Т. 5. Победный финал. Завершающие операц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Европе. Война с Японией. М.: Кучково поле, 2013. 864 с. С. 500.

чагоу, Ньюфантай, прикрывала наступавшие войска с воздуха. В течение дня 9 августа авиация фронта произвела около 500 самолетовылетов. Авиация противника активности не проявляла.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36-й армии и 39-й армии при ак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е авиации овладели Чжалайнор-Маньчжурским и Халун-Аршанским укрепленными районами и устремились вперед. В это же время 6-я гвардейская танковая армия и советско-монгольская конно-механизированная группа разгромили войска прикрытия противника и повели наступление к Большому Хингану.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прикрываясь частью сил на угрожаем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начали отходить на тыловой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рубеж, проходивший по железным дорогам Тумынь - Чанчунь и Чанчунь - Дайрэн, на линии этих дорог японцы предполагали контратаками задержать продвижение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и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ведению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тыловых районах Маньчжурии¹¹⁾.

Забайкальский фронт продолжал стремительно про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На калганском и долоннорск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японцы по-прежнему не могли оказать серьезн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11 августа танковые и механизированные соединения 6-й гвардейской танковой армии преодолели Большой Хинган и, продвинувшись за сутки до 180 км, неожиданно для японск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вышли на Центрально-Маньчжурскую равнину в район Лобэй. 36-я армия овладела г. Хайлар и развила наступление к перевалам хребта. Однако отдельные гарнизоны Хайларского укрепленного района, укрывшись в дотах,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высотах за чертой города, продолжали ожесточенно сопротивляться. Для их уничтожения 36-я армия подтягивала тяжелую артиллерию. 53-я армия продолжала выдвигаться за 6-й гвардейской танковой арми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ойска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фронта преодолели Большой Хинган, перед ними открылис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быстрого продвижения вперед. 6-я танковая армия овладела Таонанем и двинулась на Мукден и Чанчунь. Соединения 36-й армии, наступавшие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Большого Хингана, вышли к г. Бухэду, тем самым отрезав пути сообщения осно

11) Там же.

вных сил Кванту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от войск, находившихся в северном и северо-западном районах Маньчжурии¹²⁾.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дней войска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фронта, продвинувшись в глубину у Маньчжурии на 250–400 км и развернув наступление на Центрально-Маньчжурской равнине, всеми своими силами вышли к основным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и промышленным центрам – городам Калган, Жэхэ, Мукден, Чанчунь, Цицикар. 39-я армия, выдвинувшись в Центральную Маньчжурию, продолжала развивать наступление в юго-восточном, а затем и юго-западн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с задачей 23 августа главными силами выйти в район Чейлинцзы¹³⁾.

В иной обстановке, но также успешно проходило наступление войск 2-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генерала М. А. Пуркаева. Наступление фронта на приморско-маньчжур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чалось актив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Амурской военной флотилии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баз на р. Сунгар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единения 15-й армии форсировали Амур и своими передовыми частями и захватили плацдарм на маньчжурском берегу. В течение 9 и 10 августа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15-й армии и 5-го отдельного стрелкового корпуса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отрядами пограничников и соединениями кораблей Амурской военной флотилии форсировали реки Амур и Уссури, очистили от противника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берега этих рек на участке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до 120 км (от устья р. Сунгари до устья р. Хор) и овладели городами Лобей, Тунцзян, Фуйюань, многим и другими населенными пунктами, а также Гацзяским и Эту-шаньским узлами сопротивления Сунгарийского укрепленного района. Левый берег р. Амур в районах, откуда удобнее и легче можно было форсировать реку и совершать короткие рейсы,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сильно заболоченную местность, почти недоступную

12)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941~1945. В 12 т. Т. 5. Победный финал. Завершающие операц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Европе. Война с Японией. М.: Кучково поле, 2013. 864 с. С. 501.

13)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941~1945. В 12 т. Т. 5. Победный финал. Завершающие операц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Европе. Война с Японией. М.: Кучково поле, 2013. 864 с. С. 504.

ую даже для пехоты. Возможность сосредоточения здесь войск исключалась, поэтому командованию 15-й армии пришлось размещать войска для форсирования р. Амур в районах, удаленных от объектов атаки на 20-40 км вниз по течению. Разумеется, это увеличивало протяженность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каждого рейса и потребовало использовать боевые корабли Амурской военной флотилии для переброски передовых отрядов и частей первого эшелона десантов.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ля десантирования боевых кораблей с их артиллерией позволило перебросить десанты через широкую реку в минимальный срок, подавить огневые точки японцев, особенно опасные при длинных рейсах, и обеспечить высадку, атаку и наступление десантов в прибрежной полосе. Одновременно 5-й отдельный стрелковый корпус форсировал р. Уссури, сломил сопротивление незначительных сил прикрытия, оборонявших Жаохэйский укрепленный район, и, овладев городами Дуаньчжэнь и Жаохэ, а также рядом друг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 Жаохэйским узлом сопротивления, к исходу 10 августа продвинулся на глубину 11-23 км на фронте свыше 80 км. Соединения корпуса, действуя в условиях сильнопересеченной заболоченной местности и бездорожья, к исходу 14 августа овладели г. Баоцин и продолжали развивать наступление в направлении Боли. В связи с успешным наступлением на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й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переходе 11 августа 2-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в наступление и на остальных участках фронта от Благовещенска до Бикина, а также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 утра 11 августа в наступление перешли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2-й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армии. Ее передовые отряды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Зее-Бурейской бригадой речных кораблей еще 9-10 августа форсировали р. Амур и захватили плацдармы на правом берегу. Армия вела наступление в двух направлениях: главным и силами - на Цицикар,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й группировкой - на Бэйяньчжэнь. На цицикар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ступление развивалось в сторону Мэргэнь, а на бэйяньчжэнь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шли бои с целью окружения частей 123-й пехотной дивизии и 6-го пограничного гарнизона противника, насчитывавших до 20 тыс.

человек.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с боями отходили к городам Сунью и Сюньхэ, взрывая склады боеприпасов и мосты на дорогах. К исходу 11 августа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2-й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армии овладели городами Сахалян, Айгунь, Цикэ, Сюньхэ и рядом друг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В течение 12-14 августа они нанесли поражение противнику в большей части узлов сопротивления Суньуского укрепленного района и вышли к р. Суньбилахэ, захватив переправы через нее. Соединения и части 15-й армии в течение 13-14 августа вели упорные бои по уничтожению отдельных узлов сопротивления Фуцзиньского укрепленного района, которые располагались в горах и прикрывали основ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к Цзямусы. К исходу 14 августа наши войска ликвидировали эти узлы сопротивления. 15-я армия получила возможность наступать на Цзямусы с севера и северо-востока.

В результате за шесть дней операции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нанесли серьезное поражение войскам Кванту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овладели 16 из 17 укрепленных районов и продвинулись на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на глубину от 50 до 400 км. Особенно успешно действовали войска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фронта, которые, преодолев хребет Большой Хинган, вышли основными силами на Центрально-Маньчжурскую равнину и на глубине 250-400 км овладели городами Долоннор, Линь-си, Таонань, Ванемяо. За это же время войска 1-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заняли города Линькоу, Мулин, Расин и продвинулись на 120-150 км. 2-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овладев в Маньчжурии городами Сахалян, Хаоличжэнь, Баоцин, углубился на территорию противника на 50-200 км. Маньчжурская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омные трудности, развивала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ысокими темпами,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ивались созданием мощных удар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решитель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войск, широким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одвижных соединений и смелым выдвиганием их в первые эшелоны фронтов и армий¹⁴⁾.

14)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941~1945. В 12 т. Т. 5. Победный финал. Завершающие операц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Европе. Война с Японией. М.: Кучково поле, 2013. 864

Быстрота и практически одновременный выход советских и монгольских войск на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на Маньчжурскую равнину сорвали планы японск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на длительную оборону и переход в контрнаступление. Видя безнадежное положение сво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 Маньчжурии,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14 августа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 капитуляции на условиях Потсдам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от 26 июля 1945 г. и уведомило об эт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ША, СССР и Англ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заявлением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штаб Кванту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14 августа обратился по радио к штабу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прекратить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но ни словом не обмолвился о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 Маньчжурии. В то же время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частью продолжали сопротивление и не складывали оружия.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й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аршал А.М. Василевский 17 августа в радиোগрамме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ему войсками Кванту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предложил «с 12 часов 20 августа прекратить всякие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на всем фронте, сложить оружие и сдаться в плен... Как только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начнут сдавать оружие,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прекратят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¹⁵⁾. В радиোগрамме разъяснялось, что указанный выше срок давал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штаб Кванту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мог довести приказ о прекращении сопротивления и сдаче в плен до всех своих войск.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Маньчжурск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15–20 августа) был завершен разгром основных сил Кванту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противника, освобождены важнейш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центры региона. Наступление Красной армии в Маньчжурии развивалось настолько стремительно, что противник оказался не в силах сдержать натиск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общевойсковые объединения Красной армии при ак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е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и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смогли завершить расчленение и

с. С. 506.

15)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ССР: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юнь 1941 – сентябрь 1945). М.: Политиздат, 1947. Т. 5. С. 754.

разгр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японских войск в Маньчжури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20 августа заставить ее сложить оружие. Началась массовая капитуляция японских войск. Очагов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некоторых гарнизонов противника, порой ожесточенное, уже не могло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лиять на ситуацию в пределах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ча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театра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Уже к исходу августа большая часть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была взята в плен, а к 7 сентября взяты под контроль все намеч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При этом стоит сказать, что именно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и отчасти Корея по требовали от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рилож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усилий. Советско–германская война – самая масштабная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по размаху битв, также как и по задействованным силам, артиллерии, самолетам – была войно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ухопутной, проходящей на равнинах Восточ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Европы.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сложности представляли только форсирования рек, взят города и растянутость линии фронт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не только пришлось преодолевать высокие горные хребты (такие как Хинган) и водные преграды, но и совершать морские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Корейские порты Сейсин, Расин и др. были взяты боевыми кораблям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а Курильская десантная операция полностью проходила только силами морских десантов. Трудности с коммуникациями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позволили закончить операцию только к 7 сентября¹⁶⁾.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полностью перешли под контроль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Маньчжурия (в частности прояпонское марионеточ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Маньчжу–го) также контролировалась советской армией. Корея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по 38–й параллели на зоны оккупации – север контролировался СССР, юг – США. В Японии и прилегающих островах высадились и полностью взяли под свой контроль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йска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генерала Д. Макартура.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Н. Крюкова

16) Чернышев А. Триумф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СССР. Реванш за Цусиму. М.: Издательство «Э», 2015. 128 с.

было основано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которые немедленно занялись наведением порядка на контролируемых территориях и регистрацией населения. После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прекращени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и первого адаптационного периода,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овело репатриацию япо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ереселение на острова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перестройку вс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н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способ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основание и укреп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партийных органов, активное внедрение на да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советских законов, рус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¹⁷⁾.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Маньчжурии также были основаны военн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днако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еред ними стояла совсем другая задача¹⁸⁾.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помочь» местному населению оправиться от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и начать построение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чтобы впоследствии передать им бразды правления.

Однако вскор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между союзниками по антигитлеровской коалиции начались конфликты, выродившиеся позже в холодную войну¹⁹⁾. И хотя конфликт зародился в основном в Европе (по польскому, турецкому и греческому вопросам), он затронул и вопросы послевоен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в Азии.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вылилось в не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конфликтн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Японии (связанные с потерей ею колоний), твердого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оздания единого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а также прекраще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Китае.

При этом вопросы послевоен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пытались решить на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встречах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 т.д., а также созданием полномочных комиссий (например, Союзный

17) Савельева Е.И. От войны к миру: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1945~1947 г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12. 112 с.

18) ЦАМО РФ. Ф. 238. Оп. 1584. Д. 167. Л. 2–30.

19) Более подробно об этом: см. Печатнов В.О. От союза – к холодной войне: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945~1947 гг. М.: МГИМО(У) МИД России, 2006. 184 с.

Совет для Япон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миссия, Союзная Комиссия для Кореи). Часть вопросов были решены (например, репатриац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становление некоторых границ и т. д.), однако весь массив проблем не разрешился до сих пор.

В итоге, ряд нерешаемых проблем переродился в настоящие военные конфликты. При этом сверхдержавы СССР и США из-за наличия у них атомного оружия сдерживались от прямого конфликта, однако вступали в периферийные войны негласно. Первой такой войной была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ког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пала на Южную, при этом Север поддерживал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страны (СССР и Китай, в котором к тому времени к власти пришл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а Юг –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с союзниками под флагом ООН.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длилась три года, стоила жизни миллионам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и привела к страшным разрушениям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на не привела к значительным победам ни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Граница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осталась практически неизменной, а сверхдержавы перешли от скрыт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с оставшими элементам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 открыто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е по отношению друг к другу.

Дл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друг другу сверхдержавы создали два блока – НАТО, включающий страны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во главе с США, и ОВД (Организация Ва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л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лагерь во главе с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С Японией был подписан Сан-Францис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в 1951 году, который закрепил итог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Азии. Япония отказалась от притязаний на свои бывшие колонии (Южный Сахалин,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Корею, Тайвань, Маньчжурию и т.д.), были ограничены ее военные и морские силы, предприняты меры к недопущению возвращения агрессивных замыслов. Однако в тексте договора не были прописаны более мелкие детали, часть заявлений носила явно популистский и демаго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были вычеркнуты положения, регулирующие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многих спорных островов (таких как Малая К

урильская гряда и острова Токто). Поэтому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страны отказались подписывать договор и со скандалом покинули Сан-Франциско.

С того периода множество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ли быть решен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о решены не были, не перестают расстраи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холодная война закончилась с развало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проблемы только накапливаются.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не подписывают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поскольку последняя продолжает упорствовать в своих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етензиях, заявляя, что не отказывалась от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Также осложняют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Японие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РК, КНДР, Китаем – с другой, споры вокруг островов в Японском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не решены многие гуманитарные проблемы (репатриации, материальных компенсаций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мещенным лица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военных операций и преступлений). К сожалению,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случившаяся из-за неразрешимых противоречий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Европы, Америки и Азии, не только не разрешила все эти противоречия, но и породила ряд новых.



【 제 3 부 】



“독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Summary〉

중국의 해양전략과 남중국해 도서개발 China's Maritime Strategies and the Development of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이 정 태 (Lee, Jeongtae)*

The ultimate purpose of China's maritime strategies is to expand its maritime space in order to secure living space for the nation. The reason why the continental nation pays attention to maritime affairs is that it wants to expand its living space that has already reached its capacity to 'maritime spaces.' This is why China recently starts to position itself as a maritime continental state and expresses its intention to make inroads to the sea. In line with that, President Xi Jinping's government puts 'defending core interests' and 'maritime rising' to the fore. The government tends to be more active and aggressive than his predecessors's passive diplomatic strategies including Deng Xiaoping's 'taoguang yanghui (韬光養晦, hide our capabilities and bide our time),' and Hu Jintao's 'direction towards peaceful development.' 'The Revival of Great China' and 'the Chinese Dream' are the most typical aggressive strategies of Xi Jinping. The first step for the 'maritime rising' of Xi Jinping's government will be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which will be expanded to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for China to secure the South China Sea which the biggest maritime and strategic interests lie on. If China has jurisdiction over the South China Sea, it will be able to neutralize the India-Pacific strategy

* 경북대학교 교수(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o block the relationship between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South China Sea is an axis that connects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China can secure a bridgehead to make inroads into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China is aggressively seeking to develop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claiming its historic rights to the so-called nine-dash line. It has already developed 7 sand dunes and reefs to create artificial islands and its military facilities have been stationed in them. In this regard, Philippines filed claims to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s (PCA), and the PCA ruled that the artificial islands developed by China are invalid and illegal. However, the court has not been able to control China's actions or change the situation. Maritime countrie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ve tried to put a brake on China's unilateral development of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xpansion of its jurisdiction, insist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However, since they are third parties, not the parties involved in the issue, there is little they can do.

Regarding China's expansion to the South China Sea, the coastal states of the South China Sea are in the dilemma of choice. If China's 'One Belt, One Road (一帶一路)' strategy is successfully executed as the declaration of Xi Jinping's government, the coastal states can share interest together. China's 'One Belt, One Road' connects Malaysia, Thailand, Laos and Yunnan Province that form the longitudinal axis of the North-South Economic Corridor in Southeast Asia, and is also connected to the China-Indochina Peninsula Corridor that, in turn, connects Nanning, Hanoi, Bangkok, Malaysia and Singapore. Starting from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ACFTA) Agreement in 2002, the bilateral trade between ASEAN and China has been expanded to logistics in 2004, to services in 2007, to investment in 2009 and came into effect in 2010.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 China accounted for 7.6% of ASEAN's external trade in 2003, and the share has increased to 13% in 2012, and to 16.8% in 2015, becoming the biggest trading partner.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China's aggressive maritime strategies and entrance to the South China Sea might be a white elephant, but it can also be a golden opportunity. For this reason, they cannot help but hold risk factors such as security threat and economic dependence, and opportunity factors such 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Under this circumstance,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creation of a regional community in East Asia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China needs to secure a yuan bloc to respond to a dollar bloc, which is also an essential factor for the success of its economic globalization – 'One Belt, One Road.' Therefore, when the space called the South China Sea becomes a space for all that can be shared by China and Southeast Asia, it will bring benefits and peace not only to China and Southeast Asia, but also to East Asia. One way to make the 'South China Sea of Peace' is that China develops and East Asian countries jointly manage, use and share the responsibility like today. (End)

〈요약문〉

중국 해양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권확보를 위한 해양공간의 확장이다. 대륙국가 중국이 해양에 주목하는 것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생활공간을 ‘해양’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스스로 해륙국가(해양국가+대륙국가)라고 칭하면서 해양진출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핵심이익사수’, ‘해양굴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시진핑 중국정부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나 후진타오의 ‘평화발전의 길’에서 제시된 소극적인 외교전략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다. ‘위대한 중화의 부흥’, ‘중국의 꿈’이 대표적이다. 시진핑 정부가 해양굴기의 첫 단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가 될 것이고 태평양, 인도양으로 확대될 것이다. 때문에 가장 큰 해양이익과 전략적 이익이 걸린 남중국해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대만-미국관계를 차단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인도양-태평양 연결축선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양과 태평양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셈이 된다.

중국은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도서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7개의 사구, 암초 등을 개발하여 인공도서를 만들었으며 군사시설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소가 중국의 인공도서개발이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중국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된 해양국가들이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도서개발과 관할권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당사국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확대와 관련하여 당사국인 남중국해 연안국가들은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시진핑 정부의 공언대로 일대일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남중국해 연안국가들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가 동남아 남북경제회랑의 종단축인 말레이시아-태국-라오스-윈난성을 연결하고 있으며, 난닝-하노이-방콕-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 이르는 중국-중남반도 회랑으로 연결되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 간의 양자 무역도 2002년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ACFTA: ASEAN-China Free Trade Area)협정을 시작으로 2004년 물류분야, 2007년 서비스 분야, 2009년 투자분야의 협

정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실질적으로 발효되었다. 양자 간 관계발전을 보면 2003년에 아세안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였던 것이 2012년 13%로, 2015년에는 16.8%로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동남아시아국가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전략과 남중국해 진출이 계륜(鷄肋)이 될 수도 있지만 호기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안보위험이나 경제중속과 같은 위험요인과 인프라개발과 경제, 사회발전이라는 기회요인을 동시에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지역공동체 형성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도 달러화블럭에 대응할 수 있는 위안화블럭을 확보해야 할 입장이고, 이것이 일대일로라는 경제세계화의 승패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중국해라는 공간은 중국이나 동남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되면 중국과 동남아,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 모두에게 이익과 평화를 줄 수 있다. 현재처럼 중국이 개발하고 동아시아가 공동으로 관리, 이용하면서 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평화의 남중국해'로 만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의 해양전략과 남중국해 도서개발

I. 서론

중국 해양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권확보를 위한 해양공간의 확장이다. 대륙국가인 중국이 해양에 주목하는 것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생활공간을 ‘해양’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스스로 해륙국가(해양국가+대륙국가)라고 칭하면서 해양진출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핵심이익사수’, ‘해양굴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시진핑 중국정부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나 후진타오의 ‘평화발전의 길’에서 제시된 소극적인 외교전략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다. ‘위대한 중화의 부흥’, ‘중국의 꿈’이 대표적이다.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굴기의 첫 단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가 될 것이고 태평양, 인도양으로 확대될 것이다. 때문에 가장 큰 해양이익과 전략적 이익이 걸린 남중국해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대만-미국관계를 차단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인도양-태평양 연결축선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양과 태평양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셈이 된다.

중국은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도서관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7개의 사구, 암초 등을 개발하여 인공도서를 만들었으며 군사시설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소가 중국의 인공도서개발이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중국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된 해양국가들이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도서관발과 관할권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당사국이 아닌 제3자로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개발과정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살펴

보고 중국의 대응과 향후전망을 분석하려 한다. 만약 중국의 의도대로 남중국해 인공 도서개발을 통해 거점을 확보하고 남중국해와 연안국들에 대한 공조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면 남중국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남중국해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는 샌프란시스코체제의 변화, 궁극적으로는 중미 간 패권 전이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남중국해문제가 국제법적 판단을 벗어나 군사적 분쟁의 장이 된다면 남중국해 주변 동아시아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논리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분쟁과 갈등의 중심으로 남을 것이다.

II.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와 분쟁의 성격

1. 전략적 가치

중국의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과거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다. 즉 원유수급로인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차단당했던 일본의 실패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시진핑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정책의 한 축인 해양실�크로드의 성패도 남중국해 확보여부에 달려있다.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해상실�크로드를 건설하면 육상실�크로드의 한 축인 동남아시아 남북경제회랑을 구축하는데도 유리하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말레이시아-태국-라오스-윈난성을 연결하는 종단축과 난닝-하노이-방콕-말레이시아-싱가포르를 잇는 중국-중남반도 회랑을 연결할 수 있다.¹⁾ 남중국해는 또한 중국과 아세안(ASEAN)의 연결축이 되는 공간이다. 아세안과 중국 간의 양자 무역은 2002년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ACFTA: ASEAN-China Free Trade Area)협정을 시작으로 2004년 물류분야, 2007년 서비스 분야, 2009년 투자분야의 협정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실질적으로 발효되었다. 양자 간 관계발전을 보면 2003년에 아세안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였던 것이 2012년 13%로, 2015년에는 16.8%로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1) 이봉걸, “중국의 꿈,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Trade Focus*, Vol. 14, No. 16. (한국무역협회, 2015); 이수행·조응래, “중국의 일대일로와 시사점,” 『이슈&진단』, No. 193 (경기연구원, 2015).

동남아시아국가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전략과 남중국해 진출이 계륜(鷄肋)이 될 수도 있지만 호기가 될 수도 있다. 안보위협이나 경제중속과 같은 위험요인이 되는 동시에 인프라개발과 경제, 사회발전이라는 기회요인을 가질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발전이 추동하는 지역협력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에 편승하여 기회를 공유하고 싶다. 중국도 동아시아중심의 발전전략이 유리하다. 기축통화경쟁에서 달러블럭에 대응할 수 있는 위안화블럭을 확보해야 할 입장이고, 이것이 일대일로라는 경제세계화의 승패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중국해라는 공간이 중국이나 동남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되면 중국과 동남아,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 모두에게 이익과 평화를 줄 수 있다. 현재처럼 중국이 개발하고 동아시아가 공동으로 관리, 이용하면서 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남중국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분쟁의 성격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는 전통적인 안보문제이다. 분쟁의 역사를 추적하면 중국-인도, 서구열강들, 서구-일본, 미국-소련, 미국-중국의 경합이 수 천년동안 이어진 공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임의 구도 역시 동-서양, 중-미의 경합으로 정리된다. 안보문제에서 핵심은 군비경쟁이다. 다양한 비전통적 해결방식이 동원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비경쟁이다. 미국은 비전통적 안보에서 주제가 되는 항해의 자유나 해양이용의 문제를 이슈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안보영역에 대응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은 도서개발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안보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남중국해 분쟁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여전히 현실주의적 수단이 지배하는 남중국해는 미국의 항모, 필리핀해역 주둔과 중국의 항모, 전함 배치, 전투기 발진 등 군사적 상호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중미무역전쟁 등의 시장경합이 G2, 신형대국관계, G20, ASEAN+3 등 미중협력의 자유주의 기제를 공고화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적대적 대항관계가 지속과 협력 공존관계로 전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문제의 해법 역시 현실주의적 국가능력이 총동원하면서도 국제법이라는 자유주의적 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셋째, 남중국해 분쟁은 시대청산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식민전쟁시대부터 태평양전쟁이후 고착된 샌프란시스코체제까지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는 냉전의 유산인 대만문제와는 다르다. 서구의 동아잡식과 동서양의 충돌이 만들어낸 역사의 잔재, 식민전쟁 시대를 정리하는 의미이다. 중국은 아시아를 식민전쟁 시대 이전으로 되돌리려하고 미국을 비롯한 식민지경영 국가들은 식민지시기 획득한 권리를 유지하려 한다. 냉전이 정리된 시점에서 일본, 유럽, 미국이 중심이 된 인도-태평양전략이 제안되고 중국봉쇄가 시도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Ⅲ. 남중국해 분쟁의 실제: 중국의 인공도서개발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1.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제소의 전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문제에 대한 중재재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16.7.12) 재판의 진행은 1994년에 발효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필리핀이 제기한 15개의 문제에 대해 관할권 있음을 증명한 후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결정하였다. 핵심은 중국이 주장한 구단선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한 것,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도서 건설 지형들을 암초(Rocks)라고 규정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섬이라고 정의한 것 등이다. 중국은 재판결과를 두고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없음과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였지만 판결내용은 향후 다위다오/센카쿠, 쿠릴열도/북방4개 도서, 독도 등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가 되었다. 역사적 권원의 근거가 될 실효지배의 조건이나 도서의 조건 그리고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책임문제 등이 부각되었고, PCA 결정이 남중국해의 공해영역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남중국해 연안국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게 된(negative zero-sum game) 셈이 되었다. 덕분에 항해의 자유를 원하던 미국과 일본 등 역외 국가들은 어부지리를 취하게 되었다.

남중국해문제가 PCA에 상정된 원인을 추적하면 크게 ‘남중국해 요인’과 ‘중국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남중국해 요인’은 남중국해가 가진 다양한 전략적, 경제적 가치

들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해상교통로이고, 석유·가스 자원 등 천연자원과 어족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 해역이다. 그 때문에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패권쟁탈, 이익경쟁의 중심지가 되었고, 냉전 시기 미소의 반목시대를 거쳐 현재는 미중 패권의 대상해역이 된 것이다. 남중국해가 인접 아세안 5개국과 중국에 동시에 연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국가들을 둘러싸고 복잡한 외교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분쟁을 승급시킨 원인이다.

‘중국 요인’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팽창이다. 중국은 명실 공히 경제규모 세계 제2의 국가로 성장하여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논할 자격을 갖춘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런 중국이 14억이 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공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고 남중국해는 핵심대상지역이 된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남중국해 개발과 중화세계의 복원을 위한 남진정책에¹⁾ 박차를 가하였고 필연적으로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연안국 간의 분쟁은 유럽시장의 붕괴로 어려움에 처했던 미국에게 아시아복귀(Pivot to Asia, Rebalancing Asia)의 명분을 주었고, 미국의 개입으로 남중국해는 중미패권경쟁이라는 새로운 권력투쟁의 장으로 재편되었다. 미국의 접근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반접근거부전략(A2/AD)을 표방했다. 남중국해의 수역의 90%가 포함된 구단선을 경계선으로 주장하며 집행관할권을 강화했다. 2000년 이후에는 필리핀, 베트남 해역으로 공세적인 확장정책을 추진하면서 남중국해에 산재한 암초와 산호초, 모래톱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인공섬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결국 팽창하는 중국과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 남중국해라는 조건은 남중국해를 분쟁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급기야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은 모순된 입장에 놓였다. 국가이익의 측면에서는 중재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야 하지만 세계리더로서의 조건을 갖춘 중국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제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2. 중국의 인공도서개발의 상황과 실제

중국은 1980년대에 들면서 남중국해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남사군도의 베트남 남

1) 이정태, 『중국의 남진정책』,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참조.

부해역 가운데 6개의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에 군의 감시시설을 설치하고 그 중 하나인 영서초(永署礁)를 인공섬으로 개발하고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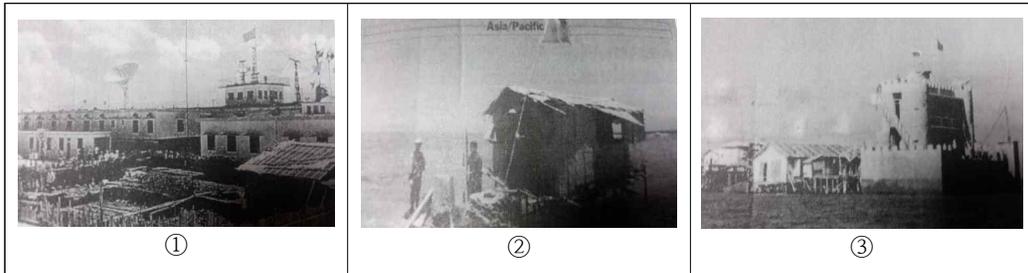


도표 1. 중공이 남사군도의 영서초(永署礁)에 건설한 인공섬²⁾

1990년대에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남중국해 개발에 착수했다. 남사군도의 필리핀령 팔라완(Palawan)섬 서쪽 해역의 미스치프 환초(Mischief Reef)에 진출하여 환초가운데 4개의 지점에 감시시설을 구축하고 군사거점으로 만들었다. 중국이 환초에 판자집을 세우고, 조립식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고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이들 인공도서를 해군기지 내지 어업기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³⁾ 중국이 장악한 남중국해의 인공도서-영서초, 미스치프는 일본과 미국 등이 서태평양에서 바시해협을 통해 말라카해협, 인도양을 경유하여 중동에 이르는 중동 루트의 핵심지역이다. 서사군도의 주도인 용싱다오(永興島)에도 부두, 활주로, 각종 통신장비를 설치하였다.⁴⁾ 중국의 활동이 동중국해로 확대되면서 춘샤오(春曉) 가스전 개발에 착수하게 되자 일본과도 마찰이 일어났다. 2000년대 들면서 중국은 서태평양으로 진출범위를 확대하면서 오키노토리시아

2) ① 중국은 1980년대 말까지 영서초(Fiery Cross Reef)를 인공섬으로 개조하고 남사군도지배의 거점으로 삼았다. 인공도서 내에는 농작물 경작지도 조성하였다. ② 중국은 1980년대 남사군도에 진출하고 베트남 해역 인근의 6개 산호초에 군의 감시시설로 고각옥이라는 제1세대 판자집을 건설했다. ③ 중국은 제1세대 판자집 건설에 이어 조립식 주택식의 건물을 세우고(제2세대), 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 영유권을 주장했다(제3세대): 히라마쓰 시게오, 이용빈 역,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백년대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p.88-89.

3) 히라마쓰 시게오, 이용빈 역,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백년대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89.

4) 동중국해역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이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해저 석유자원에 대한 채굴권을 설정하였다. 당시 3국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동개발하자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동중국해대륙붕은 중국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면서 3국에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후 3국의 석유개발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석유매장은 조어도 인근에 가장 많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지조도를 둘러싸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둘러싼 섬의 조건문제로 일본과 충돌했다.

2013년 필리핀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의 인공섬 건설의 불법성관련 문제를 제소한 이후에도 중국의 도서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중국이 진행한 인공섬 건설현황과 모습이다.⁵⁾

 <p style="text-align: center;">①</p>	 <p style="text-align: center;">②</p>	 <p style="text-align: center;">③</p>
 <p style="text-align: center;">④</p>	 <p style="text-align: center;">⑤</p>	 <p style="text-align: center;">⑥</p>
 <p style="text-align: center;">⑦</p>	<p>① Yongxu Jiao(永暑礁, Fiery Cross Reef) 개발상황, 2015년 1월 현재 3,110미터 활주로 건설</p> <p>② Nanyun Jiao(南薰礁, Gaven Reefs)/2014.3~/도서중심에서 300미터 정도의 언덕길 조성</p> <p>③ Huayang Jiao(华阳礁, Carteron Reef)/2014여름~/빌딩 건축물 공사</p> <p>④ Dongmen Jiao(东门礁, Hughes Reef)/2014 여름~/380평방미터의 콘크리트 플랫폼 건설</p> <p>⑤ Chigua Jiao(赤瓜礁, Johnson Reef)/2014 후반</p> <p>⑥ Meiji Jiao(美济礁, Mischief Reef)/최근 중국해군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해역/3km의 활주리와 부대시설이 완성</p> <p>⑦ Zhubi Dao(渚碧礁, Subi Reef)/1988년 점령 후 2014년 확대 대형선박 접근을 위한 준설작업과 활주로 공사 진행</p>	

도표 2.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도서 개발현황: <http://amti.csis.org>

5) 남중국해 해역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들의 해양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베트남 역시 남중국해역의 Beixiao Dao(北小島 Sand Cay, 1975년 베트남이 점령 방어구조물과 시설 건설), Xi Jiao(西礁 West Reef, 1975년 이후 베트남 점령 시설물과 부두를 건설) 등에 대해 인공도서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 PCA판결의 내용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관련 사건에 대한 PCA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첫째, 중국주장의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의 법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역사적 권리에 기초해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계선인 구단선이 역사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판결했다.⁷⁾ 중국의 역사적 근원에 따른 구단선의 권리주장은 근거가 미약하여 성립될 수 없고, 오히려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를 일시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주권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했다. 유엔해양법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남중국해 이용은 공해의 자유이용에 관한 행위였지 배타적인 주권행사는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⁸⁾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남중국해 인접국들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고려하여 중국의 구단선주장이 타국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남사군도의 개별도서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역사적 권원에 대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중국은 개별도서에 대한 영유권 근거를 입증해야할 처지가 되었다.⁹⁾

둘째, 남중국해 지형에 대한 법적 지위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중국해 지형 대부분에 대해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제소사항 가운데 필리핀은 중국이 점유하거나 간척을 통해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해양지형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¹⁰⁾ 해당 지형들이 해양법협약상 ‘도서(island)’인지 ‘암석(rock)’인지,

6) PCA남중국해 중재결정 보도자료,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Hague, 12 July 2016.

7) 이와 관련한 논의는 정갑용,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의 합법성 검토”, 『독도연구』 제16호, (2014.6) 참조.

8) 이창위, Brian K. Murphy 등은 중국이 실효지배를 입증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창위, “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1호, (2009.6), Brian K. Murphy, “Dangerous Ground: The Spratly Islands and International Law,” *1 Ocean and Coastal Law Journal* 187, (1995) 참조.

9) 현대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권원은 일반적으로 발견(Discovery),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승계(Cession), 선점(Occupation), 시효(Prescription), 정복(Conquest) 등이 있다.: 김대순, 『국제법론』(서울: 삼영사, 2005), p.745.

10) 남사군도(Spratly Islands)는 최대 230여 개의 섬, 암초, 산호초, 모래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간조노출지 또는 수중암초인지를 가려달라는 주문이었다. 해양법협약상 ‘도서’는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협약 제121조 3항) 반면 암석은 12해리 영해만 가질 수 있으며, 만조시 수면 아래로 잠기는 간조노출지는 영해도 가질 수 없다.(협약 제121조 1항) 해양법협약에서는 ‘도서’와 ‘암석’의 구별기준을 ‘인간의 지속적인 거주’와 ‘자체 경제생활’(협약 제121조 3항)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지형에 관한 결정과정에서 협약 제121조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나름의 규정을 제시했다.¹¹⁾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남사군도의 가장 큰 섬인 태평도(太平島, Itu Aba Island, 長島, 大島)를 해양법협약 상 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하고 본 사안의 대상인 그 보다 작은 개별 지형물들에 대해서는 모두 암석 또는 간조노출지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첨예화된 스카보로섬은 섬이 아니라 암석으로 판단함으로써 중국은 스카보로섬 12해리 외측해역에 대한 관할권행사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반면 필리핀은 스카보로섬 12해리 외측해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할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도서의 지형적 조건은 ‘자연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된 인간 공동체이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거나 순수하게 추출적인(extractive) 성격이 아닌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형의 객관적인 능력’이라고 정리된다. 재판소는 남중국해 지형물의 인공구조물과 인력배치 상황에 주목하고 이들의 존재가 외부자원에 의존하고 지형매립, 담수화설비, 기반산업의 건설을 통해 거주가능성을 증진시키려고 변형시켰다고 보았다. 해당 지형에 공무원이 거주하는 것은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안정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능력을 창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국이 설치한 썬샤시(三沙市) 등의 행정구역에 대한 법적 권리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일부 어민들의 거주나 사용 역시 안정적인 공동체의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Itu Aba(太平島), Thi-tu Island(中業島),

의 면적은 약 50만km²에 달한다. 그러나 스프래틀리 군도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군도 전체의 육지 크기가 3km² 정도에 불과하고, 항상 수면위에 나와 있는 섬, 바위 및 산호초의 면적은 약 2.1km²에 불과하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도서는 약 50여개 정도이다. : Michael A. McDevitt, M. Taylor Fravel & Lew M. Stern, “The Long Littoral Project: South China Sea,” *CNA*, March 2013, p.39.

11) 박찬호, “필리핀-중국 해양분쟁 중재결정 내용 분석”, 『필리핀-중국 해양분쟁에 대한 PCA결정과 한 일관계』, 대구대학교 영토평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6.8.11.), p.13 참조.

West York Island(西月島), Spratly Island(南威島), North-East Cay(北子礁), South-West Cay(南子礁)를 포함한 남사군도의 해수면 위에 있는 지형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바위섬 내지 산호초라고 결정했다.¹²⁾ 셋째, 간척과 인공섬 건설, 타국의 어업활동 규제 등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소는 중국의 간척과 인공섬 등의 건설행위가 주변 해양생태계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협약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조항의 위반을 인정했다. 중국은 최근 대규모 매립과 남사군도 7개 지형에서의 인공섬 건설이 산호초환경을 심각하게 손상, 훼손시켰고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 산호, 대왕조개를 대규모로 채취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당국이 환경훼손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지시키지 않은 것은 협약 제182조 및 194조 산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넷째, 중국선박이 스카보로섬 주변 수역에서 필리핀 선박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필리핀 선박과 선원들에게 심각한 충돌위험을 야기했고, 이는 중국이 해상충돌방지를 위한 국제규칙에 관한 협약상 의무와 해상안전에 관한 협약(1972)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국법집행선박의 행위는 필리핀의 전통적 어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¹³⁾

IV. 중국의 대응전략과 전망

1. 중국의 해양전략과 인도-태평양 진출

PCA의 판결과 무관하게 중국은 중국의 길을 가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해양전략을 보면¹⁴⁾ 잘 드러난다. 첫째, 양용(兩容)이다. 양용은 현존하는 협력체제에 함께 융화되어 겸용한다는 방안으로 중국이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플랫폼에 편승하여

12)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7개의 지형물은 대부분 산호암초(reefs: 礁)이며, 면적이 크지 않다.: 王高成, “大陸擴建南沙島礁的意義分析”, 『大陸與兩岸情勢簡報』, (2014.11).

13) 중국은 법집행선박을 동원하여 2012년 4월과 5월 두 차례 스카보로섬에 출어한 필리핀어부들의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

14) 왕이웨이 지음, 한민화 옮김, 『중국, 그래도 중국』, (서울: 서울문화사, 2016), pp.213-216 참조.

중국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쟁세력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군사동맹체제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미국의 인력, 기술, 경험과 지리적 여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의 장점을 상호 결합시키는 모델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의 협력모델처럼 나토는 하드 안보를, EU는 소프트안보를 책임지는 결합을 통해 중복과 경쟁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 일대일로를 통해 함께 융합하는 것이 가능하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둘째, 양분(兩分)이다. 이는 당면문제를 나누어 처리하고 책임도 양분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이나 인민해방군이 경제나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이해당사국들과 분담한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개발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대표적이다. 문제나 위협에 공동대처하고 위협을 함께 감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이익분배에서도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셋째, 양궤(兩軌)이다. 연선 및 역외국가의 다양한 태도와 입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안보와 경제의 두 수레바퀴를 동시에 움직인다는 전략이다. 영토 및 해양주권 갈등은 양자회담형식을 빌어 해결하여 해상실크로드를 진척시킴으로서 해상실크로드나 일대일로가 중국 단독의 전략이 아니라 환태평양경제협력관계(TPP)와 함께 한다고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양자와 다자의 축을 동시에 운용하려 한다. 자유무역구와 양자간 투자협정과 같은 연선국가와의 양자관계를 운용하면서 동시에 다자간 경제회랑을 연결하여 육상과 해상을 묶는 연결고리로 활용하려 한다.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의 경제회랑처럼 상호보완적 장점을 극대화하여 경제협력, 호혜공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양궤의 구체적인 내용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동시에 집중하는 것인데 남중국해는 해상실크로드의 중요거점으로, 인도양은 고대 해상실크로드의 종착역으로 건설한다는 방안이다. 남중국해와 인도양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말레이반도의 크라운하를 통해 말라카해협을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¹⁶⁾

15) 중국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2016년 10월 20일 개최된 '확장역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한다는 논의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의 등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양용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계산은 다를 수 있다. 냉전 이후 나토의 성격변환을 고려하면 중국이 일대일로를 연결하는데 나토의 아시아 확대를 오히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16) 중국은 태국남부의 지협 102km에 물길을 내는 크라운 운하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총 공사비 30조원

중국의 의도대로 남중국해와 인도양 두 바퀴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은 양계를 통합 운용하려 한다. 이는 전략적으로 유럽을 공략하여 미국을 제압할 수 있고, 러시아, 걸프협력기구, 인도, 이란, 터키 등과 협력하여 미국을 요행으로 피하지 않고도 정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한다. 중국은 육상실크로드 정신을 기반으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을 갖춘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일대일로로 서쪽종착역인 유럽의 힘을 빌어 미-중-러 삼각관계를 조화롭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유럽과 중국의 전면적인 전략동반자관계가 형성되면 해양협력, 제3자 협력, 네트워크협력을 추진하여 일대일로의 리스크 최소화할 수 있어서 정책, 인프라, 무역, 자금, 민심 등 5통에 집중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중국은 유럽연합을 상하이협력기구(SCO)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유럽-중양아-중동-서아시아-북아프리카의 시장을 관리운용하려 한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발언권 강화와 인터넷 거버넌스의 민주화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고려하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목적은 일차적으로 남중국해역과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태평양진출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해군은 현재 북해함대(칭다오靑島), 동해함대(닝보寧波), 남해함대(잔장湛江) 등 3개 함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함대의 태평양진출을 위해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해양확보가 필요하다. 북해함대와 동해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미야고 해역을 통해 남하해야 하고, 남해함대는 하이난다오 동쪽으로 진출해서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의巴士海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동중국해 가스전, 하이난다오, 오키노토리시마(충지조도)로 연결되는 삼각해역을 확보하여 일본열도와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해상봉쇄의 망을 돌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양계전략 즉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동시에 진출하는 전략을 완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축 내지 베이스캠프가 되는 남중국해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다. 중국해군의 태평양 진출과 남중국해에 대한 분쟁당사국들의 주장과 해양경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개통될 경우 동서아시아의 연결에서 말라카해협을 경유하는 것보다 1200km 이상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니카라과를 관통하는 제2파나마운하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총 공사비 42조원의 자금투입이 계획되었고, 완공후 50년 동안 중국이 운영권을 갖는다. 이는 AIIB의 출범과 함께 중국경제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제신문』, 2015.6.1.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인공섬 개발지역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도표 3. 중국해군의 서태평양 진출 노선도와 남중국해 분쟁현황¹⁷⁾

2. 미국변수와 협력게임 전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변화는 9.11테러를 전후로 크게 달라진다. 9.11테러 이전에는 동아시아 안보와 국제관계가 소위 “중국위협론”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중심 재배치였다.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배치를 확대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등급도 높였다. 중미관계에서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동아시아의 주축국인 중일관계도 정체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9.11을 계기로 미국의 ‘적’개념이 변화되었다. 반테러 국제공조가 국제관계와 지역협력의 핵심쟁점이 되었고 국가 간 협력에서 새로운 이익의 교집합이 되었다. 즉 상호 적대감이 공동의 적 창출로 협력관계 내지 파트너로 전환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다양한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아세안과 한, 중, 일간 “ASEAN10+3” 정상회의에서 반테러 선언에 합의했다.

남중국해분쟁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본질적으로는 영유권 분쟁이라는 전통영역의 안보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서개발, 미국의 항행의 자유라는 비전통영역의 안보문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남중국해 게임은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죄수의 게임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두 죄수 간의

17) ① 중국해군의 서태평양 진출 노선도: 히라마쓰 시게오, 이용빈 역,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백년대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95, ②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③ 난사군도 도서암초현황과 시설물: <http://amti.csis.org>

‘소통단절’인데 만약 두 죄수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양자모두 부정하거나 인정하는데 합의가 될 것이고, 양자 협력은 양자모두의 부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극대의 이익을 주는데, 이때 관건은 상호신뢰이다.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신뢰가 있는가? 상호 이익의 극한점을 알고 있다는 것은 소통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고 단지 상대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합의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정책(Pivot to Asia, Rebalancing)의 파트너로서 가장 적합한 아시아 상대국은 어느 국가일까?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아니면 한-일-대-필로 이어지는 동맹국?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최대 이익파트너는 중국이다. 동맹국체제를 부활시키면 중국시장과 동남아시아의 절반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 이미 미국동맹의 하부구조를 끌어안고 있는 중국과 중국시장 그리고 중국의 하부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이 된다.

3. 지역협력체 구상과 역내 국가들의 계산

미국과 중국이 경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비전통 안보 이슈가 날로 많아지고 있다. 끊임없는 긴장, 동란 및 충돌을 가져다주는 테러리즘과 분열주의 등, 다국적 범죄행위인 마약, 밀수, 인구매매 등, 이밖에도 에너지, 생태, 환경, 대규모 살 성성 무기 확산, 해로안보, 해적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국가들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확산의 속도, 규모의 증대, 상호영향과 손해의 연대성 때문에 한 국가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또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으로 이들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때문에 반드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새로운 이념 즉 협력안보 모델을 구축해야한다. 최근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 IS토벌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러시아의 군비지원과 중국, 미국의 묵시적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분야의 협력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 아시아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12월 한, 중, 일 3국은 아세안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비공식정상회의를 진행했다.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진행된 “10+3” 재무장관 회의에서 “치앙마이 협의”를 통해 각국은 화폐교환에 동의했으며 공동의 기

금을 설립하여 투기성 외환공격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한, 중, 일 3국이 지역 금융협력의 첫 시도가 되었다. 최근 한국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는 사회안보분야의 협력이다. 이 분야에 대한 동력은 주로 반테러와 사스(SARS)에 대한 공동 대응에서 만들어졌다. 2001년 6월 상하이협력 기구가 성립되면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열주의를 타격하는 상하이 공약”을 체결했다. 2003년 4월 사스가 대규모로 폭발할 무렵에 한, 중, 일 3국과 아세안의 보건부 장관은 특별회의를 통해 사스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해 5월 16일에는 한, 중, 일과 아세안은 “민용 항공기 사스 퇴치 결의”를 통과시켰다. 셋째, 환경협력이다. 한, 중, 일 3국의 환경장관회의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 황사, 산성비, 대기 및 물 오염, 사막화 등의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3년12월 제5차 3국 환경부 장관회의에서 3국은 정보공유의 “역내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결정했다. 각방은 공동 성명서에서 다음 절차로 동북아의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황사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건립할 것을 표명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동아시아협력현상을 두고 다수의 학자들이 동아시아공동체형성을 예견한다. 즉 국제정치는 “높은 정치(high politics)”와 “낮은 정치(low politics)”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높은 정치”는 정치, 군사 안보 영역을 가리키고 “낮은 정치”는 경제, 문화, 환경 등 영역을 가리킨다. 세계화와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라 “높은 정치”와 “낮은 정치”의 한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국제무정부상태에서 국가 간은 “높은 정치”영역에서 주로 상대적 수익을 중시하기에 조화가 어렵고 충돌이 많아질 수 있지만 “낮은 정치”에서는 국가 간의 분쟁이 핵심이익이 아니기에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군사적 독점을 타파하는 파워의 등장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제2위의 핵 강국이다.¹⁹⁾ 미국은 민주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의 민주정체를 보호해야할 의무감을 가

18) 婁偉, “21世紀初東北亞合作安全模式探悉”, 『吉林大学碩士學位論文』(2006.4)

19) James Clay Moltz, “The Russian Economic Crisis: Implications for Asian -Pacific Policy and Security,” in *Power and Prosperity: Economics and Security Linkages in Asia-Pacific*, ed. by Susan L. Shirk, Christopher. P. Twomey (New Brunswick, N. J.: Transactions Publishers, 1996), pp.181-196.

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불안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동맹의 하부구조인 한국, 일본, 대만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책임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의 효력과 시효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며 미국정부의 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행정부의 경우이다. 안보동맹이 자연스럽게 경제동맹으로 연결되었던 기존의 질서체계와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안보비용부담을 강요하고 있으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맹국가들의 피로도와 부담을 증폭시켜 관계의 망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안보우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은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 시장을 공유하고 동맹 국가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남중국해에 대한 해법도 같은 선상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동아시아해역을 중국과 공유하고 이익을 양분하는 것이 최적이다.

〈Summary〉

소련 해체 이후 신문 보도를 통해 본 독도와 타케시마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변화

Changes in Russians' Views of Dokdo and Takeshima in Newspaper Report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김 상 현*

Since Dokdo was discovered by the West in the mid 19th century, it has been called by the West by three different names: 'the Liancourt Rocks' by France in 1849; 'Menelai' and 'Olivutsa' by Russia in 1854; and 'the Hornet Rocks' by the United Kingdom in 1855. In the early 20th century, Japan incorporated Dokdo into its territory, and named it 'Takeshima.' Since Russia had not been aware that other countries discovered Dokdo until the late 19th century, it continued to use Menelai and Olivutsa. In the early 20th century, Russia started to use the three names above and added the name Takeshima later.

The Soviet Union used the name 'Jukdo' using its Hangul sound in the Hydrographic Pilot for the Japan Sea published in 1962, denying the name Takeshima. As it used the name Т о к т о in the Hydrographic Pilot for the Soviet Union in 1970, the Soviet Union started to more strongly deny Japan's dominium over Dokdo. In the Hydrographic Pilot for the Russian Federation and Korean Peninsula published in 2001, Dokdo was drawn in the East Sea as it seemed to belong to the Korean Peninsula. Russia mainly used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 War considering its relation with North Korea, and continuously seemed to consider the

* 대구대학교 외래교수

position of Korea in terms of the issue of Dokdo out of its dissatisfaction with the Treaty of San Francisco.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at emerged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showed a more friendly attitude toward the position of Korea in the name of the succession of the legitimacy of the Soviet Un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Russia's interest in Dokdo started to appear in newspapers in the 2000s. The name Takeshima had been used more frequently in newspaper reports than the name Dokdo until the end of 2004. However, as its interest in Dokdo sharply increased in 2005, the name 'Докто (Dokdo)' started to gain an advantage over the name 'Такэсима (Takeshima)' in terms of the use of the names in media reports. Newspapers or pro-government media that gained public confidence put a greater emphasis on the use of Dokdo, while anti-government newspapers tended to use Takeshima more frequently. Still, the number of solely using the name Dokdo start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cases that used both the names Dokdo and Takeshima, but with the name Dokdo first, has continued to grow.

However, in terms of territorial waters, the name Japan Sea used more exclusively than the name East Sea, while only some media used both the names East Sea and Japan Sea, but with the name East Sea first.

The share of newspaper reports that used the name Takeshima (54%) between 2001 and 2002 was higher than that of Dokdo (31%), but the share of newspaper reports that used the name Dokdo between 2005 and 2006 was 45% (Takeshima, 34%), showing an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its exposure to the media. Until now, the results of the survey (every two years) show that the share of the name Dokdo has been over 10% higher than that of the name Takeshima. The cases that used both the two names have steadily accounted for about 20% of the total number of news reports. One thing interesting is that the use of the name Liancourt sharply increased between 2003 and 2004, and sharply decreased in the next year. The use of the name Liancourt started to slightly increase from 2009

again. The name Liancourt was hardly used alone, but mostly along with another name. The names Dokdo and Liancourt were used together, but there was almost no report that used both the names Takeshima and Liancourt. The media of Russia seem to intentionally avoid using the name Takeshima, which indicates the growing anti-Japan sentiment in Russia.

〈요약문〉

1849년 프랑스 ‘리앙쿠르’, 1854년 러시아 ‘메넬라이’와 ‘올리부짜’, 1855년 영국 ‘호넷’ 등 이미 19세기중반에 독도는 서구에 의해 발견되며 3개의 명칭을 가지게 된다. 20세기 초 일본은 독도를 자국으로 편입시키며 타케시마의 명칭을 사용했다. 러시아는 19세기 후반까지 타국의 독도 발견을 인지하지 못해 메넬라이와 올리부짜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세기 초반에 위 3개의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타케시마 명칭을 추가했다.

독도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1962년 발간된 일본 해 수로지에서 한글의 음을 딴 죽도 명칭을 사용하며 타케시마를 부정하다가 1970년 소련 수로지에 독도(Токто)명칭을 사용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더 강하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1년 러시아연방 한반도 수로도에는 독도가 동해에서 한반도에 귀속된 형태로 그려져 있다. 러시아는 냉전 기간에 북한을 고려해 한반도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독도 문제에 있어 줄 곳 한국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소련 붕괴 이후 새로이 등장한 러시아연방정부도 소련의 정통성을 승계한다는 명목에서 한국의 입장에 보다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련 붕괴 후 신문 보도를 통한 러시아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4년 말까지는 보도에서 명칭 사용이 독도 보다 타케시마가 사용 횟수가 많았으나, 2005년부터 독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독도(Токто)가 타케시마(Таке-сима)보다 언론 보도를 통한 명칭 사용횟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공신력 있는 신문이나 친 정부 언론들은 독도 명 사용에 더 비중을 두었고, 반 정부 신문의 보도에서는 타케시마 명 사용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보였으나 독도의 단독 표기가 증가하고, 독도, 타케시마 공용표기에서 독도 우선 표기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 반해 영해 표기에 있어는 동해 보다 일본 해 단독 표기가 월등히 많았으며, 일부 언론만 동해와 일본 해 공용표기에서 동해 우선표기를 보였다.

2001~2002년 독도와 타케시마 명칭의 신문보도에 사용 횟수는 31~54%로 일본이 우세했으나 2005~2006년 보도에서 45~34%로 독도의 언론 노출 횟수가 더 증가 추세를 보이며 현재까지 매 기간(2년 단위로 조사)마다 10% 이상의 더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두 명칭의 공용표기 경우는 전체 보도에서 20% 내외로 꾸준한 사용을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리양쿠르의 사용은 2003~2004년 급증했다가 이듬해부터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2009년부터 조금씩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양쿠르 명칭의 경우 단독 표기는 거의 없고 공용 표기를 주로 했는데, 독도와 리양쿠르의 공동 표기는 보이지만, 타케시마와 리양쿠르의 공동표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타케시마 명 사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내 반 일본 정서의 증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소련 해체 이후 신문보도를 통해 본 독도와 타케시마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 변화

인류 역사에서 인간들은 영토 획득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 왔다. 과거에는 생산수단이 토지와 생산주체인 국민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땅 위에서 전쟁이 있었다면, 대 항해시대 이후 유럽에서 시작한 물 건너 새로운 토지의 개척, 즉 식민지를 활용한 새로운 영토의 확보가 해양선박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다. 인구가 늘어가며 다양한 산업의 발달과 함께 어업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해양 영토에 관한 일차적 관심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근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하며 해양에서 강대국들의 각축전은 더욱 심화된다. 물류이동을 위한 해로의 이용과, 식민지에 딸린 해양 어업권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의 근대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과거의 중요시 하지 않았던 무인도를 포함한 크고 작은 섬들이 이제는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되면서 더욱 강대국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근대사에서 섬과 연관되어 주목 할 만한 큰 사건으로는 1982년 발발한 포클랜드 사태를 꼽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약 500Km 떨어진 포클랜드제도는 영국령이지만 실제 영국에서는 약 13000Km나 떨어진 대서양 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1965년 UN에서 모든 형태의 식민지 지배는 종결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약 130년의 실효지배를 통해 이 섬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함을 알고 있었고, 지배권을 포기 할 수 없었다. 1982년 아르헨티나의 공격으로 영국과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영국은 원거리 전투를 위한 물리적 지원이 힘든 상황임에도 결국 승리로 이끌어갔다. 영국의 포클랜드에 관한 이러한 집착은 단순히 130년간의 실효지배를 통한 영토라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일까? 포클랜드는 지리적으로 영국이 남극으로 가는 전진 기지의 역할을 했고, 파나마 운하가 어떤 이유로 차단될 경우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대체 항로의 중요한 길목에 있으며, 포클랜드 인근 석유 매장 설까지 들고 있었으니 영국으로서는 포기 하기 어려운 전략적 영토가 아니었을까 한다. 아르헨티나로서는 당장 이 섬의 유용가치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전쟁이었기 때문에 정권 유지에 활용할 중요한 카드였다. 이 섬의 영유권은 현재 영국이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대 항해 시기 스페인에 의해 처음 개척되었지만 정착은 서서히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 여러 차례 지배층의 바뀜을 거치다가 영국이 최종적으로 점령하여 현재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파견된 군대까지 주둔함으로 실질적인 소유의 논쟁을 하기에는 아르헨티나로서도 명분이 없다. 그와 다르게 지구 반대편 동 아시아에서는 러-일간 쿠릴열도, 중-일간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한-일간 독도(타케시마)간 영토 분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4개국에 걸친 분쟁 가운데는 일본이 있다. 제국주의시대 일본이 서구 열강과 더불어 식민지 쟁탈에 참가했던 것이 큰 이유이다. 다오위다오(센카쿠)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편입했고, 독도는 러일전쟁 당시 1905년 2월22일 전략적 군사거점지역으로 시마네현에 귀속시켰다.

16~18세기 후반까지 유럽 고 지도에서 우리의 동해를 통칭하던 이름은 동양해(Oriental Sea, Mer Orientale)였다. 이 해역의 탐험이 있던 후인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 당빌(D'Anville)이 그린 지도에서 이 명칭은 한국, 일본, 중국 연안해와 동해를 지칭하며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와서 동해만을 일컫는 바다 이름이 되었다. 이후에 제작된 서양의 지도에 '한국 해', '조선해', '동양해', '일본 해'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해전이 전쟁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인식을 야기시켰고, 전쟁 후 강대국들이 주축이 되어 1919년 영국 런던에서 국제수로기구를 만들기로 합의 했다. 1921년 국제수로기구는 사무국을 만들어 대양의 경계선과 확정된 해역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1928년 한국 해, 동양 해, 일본 해의 다양한 표기가 일본 해로 정해지게 된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배제한 일본의 국제사회 일본 해 명칭 등록은 독단적이고 향후 재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한국은 1957년 IHO에 가입하고 1991년 유엔회원국이 된 후 유엔지명표준화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일본 해 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서방 매스컴 홍보 등으로 동해 되찾기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자, 각국의 지도제작사 일부 매스컴 등에서 동해와 일본 해 병행표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일본 해 명칭을 지키기 위해 총력으로 외교 로비를 펼쳤고, 2000년대 이후 서구의 일부 언론, 국제기구 등에서는 동해/일본 해 병기 표기에서 다시 일본 해 표기로 돌아가고 있기도 하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동해(east sea)라는 명칭은 분쟁의 헤게모니에 속하

지 않은 서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정확히 어느 지역에 위치한 동쪽 바다인지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보통명사일 뿐이라, 이미 익숙한 일본 해 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담고 있는 명칭이 더 편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독도/타케시마 명칭에 대한 논란도 동해 명칭의 논란 선상과 조금은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섬들이 위치한 바다가 어떤 바다에 있는가가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섬 소유권 논쟁에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 러시아인들이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미디어에 노출 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러시아 최대 검색사이트인 야andex(www.yandex.ru) 뉴스 검색을 통해 실시했다.

러시아의 조선 진출은 19세기 말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일 당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러시아도 조선으로 진출했다. 1884년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하기 이전 러시아는 이미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 남하 정책을 펼치며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한반도로 본격적인 진출은 조선말기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이 각축전을 벌일 당시 이뤄졌으며 1884년 조선과 수교를 맺었다. 하지만 1860년 군사도시로 블라디보스톡을 건설하며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한 남하 정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 1854년 극동 탐사선인 ‘올리부짜’호의 호위선 이었던 올리부짜(Olivutsa-Оливуца)호는 마닐라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던 중 독도를 발견하고 동도와 서도를 각각 ‘메넬라이’와 ‘올리부짜’로 명명한다. 러시아보다 앞서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가 독도를 발견해 ‘리앙쿠르 암초’로 명명했으나 러시아는 발견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러시아 올리부짜호의 발견 이듬해인 1855년 영국 군함 호넷(Hornet)함에 의해 독도가 탐사되며 ‘호넷’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이미 독도는 19세기에 외국 열강들에 의해 3개의 다른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올리부짜호가 독도를 처음 발견한 당시의 사료를 살펴보면 섬의 소유를 한국(당시는 조선)쪽으로 보는 뉘앙스가 강하게 보여진다.

«В начале 1854 года «Оливуца» уж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одолжила плавание по южным морям до Манилы. Только в марте корвет взял курс к берегам Сибири. В Японском море у берегов Кореи моряками корабля была открыта скала, названная в честь своего корвета Оливуцей ...»

“1854년 초반”올리부짜”함은 이미 마닐라 남쪽을 따라 항해를 계속했다. 단지 3월에 서야 함선은 시베리아 해안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본 해 한국(조선)연안에서 선원들은 바위섬을 발견하고 함선의 이름 올리부짜에서 따서 ….”

당시 국제 사회에서 동 해 라는 표기가 아니라 일본 해 명칭을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 연안에서 섬을 발견했다라는 문장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일합방 이후 러시아(1917년 이후로는 소련)의 독도에 대한 표기는 혼용된다. 박종효가 러시아 해군성 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수로지와 정치지도는 독도에 대한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지도는 1900년부터 독도를 리양쿠르라고 표기한 지도가 있는가 하면, 1910~1930년에는 독도를 발견한 연도순에 따라 여러 발견 선박의 명칭을 사용하고 맨 밑에 타케시마(竹島)를 4번째로 기록해 놓았다. 즉 4번째로 일본이 발견했다는 의미이다. 일본도 일본해군(海軍) 수로국(水路局)에서 1886년 수로지의 발행을 시작하면서 독도를 1886~1894년까지 리양쿠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897년이 되어서야 수로지 제4권에서 타케시마(竹島)라고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일본도 국제적으로는 리양쿠르호가 서양지도상에 없는 독도를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이어서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이 발견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발행된 소련 정치지도에는 독도를 리양쿠르 혹은 산호초로만 표기하다가 1962년에 소련해군 수로국에서 발행한 동해수로지(주: 원명 일본해 수로지)는 한글의 음을 따 러시아어 표기로 죽도(Чукто)라고 호칭하고 일본어 표기 타케시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어서 1970년에 소련 국방부 수로국에서 발행한 수로지에는 도서명칭을 독도(Токто) 혹은 죽도(Чукто)라고만 표기했으나 독도에 대한 설명부분에서는 전부 한국어 호칭을 따라 독도(Токто)라고 하였다. 1962년 발행한 수로지와 내용은 같으나 독도의 지명을 죽도(竹島)에서 독도라고 개칭하였다는 것이 다르다.



그림 1. 1962년 독도의 동도와 서도의 러시아 호칭

러시아 해군 수로측량국의 동해(일본해) 1962년 수로도에 작성된 독도의 명칭은 직역하면 독도의 동쪽(Восточный из островков Токто)과 독도의 서쪽(Западный из островков Токто)으로 현재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독도의 명칭 “Токто”으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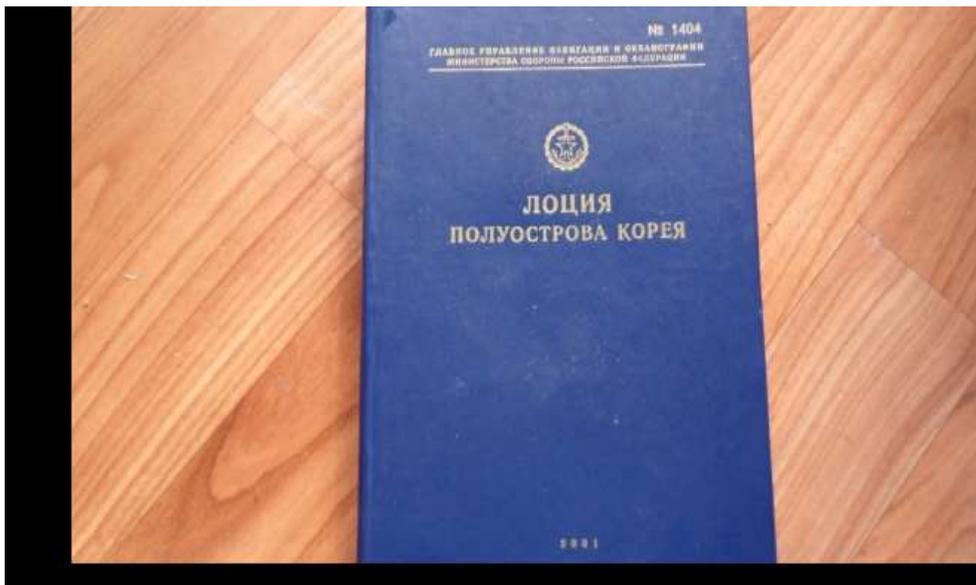




그림 2.

2001년 러시아 연방 국방부가 발행한 ‘해양지형 및 항해 주요 운영’에 관한 한반도의 수로도에 실린 독도는 한반도의 영토에 귀속되어 있다. 러시아 해군 전집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인들은 19세기 독도의 발견직후부터 섬의 소유권은 한국(당시는 조선)에 있다고 인식한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독도는 2차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독립과 함께 한국의 실효 지배하에 있게 되나,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기인해 독도에 대한 반환 사실이 부재함을 근거로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게 된다. 소련체제가 붕괴되며 러시아는 대통령제를 표방한 러시아연방으로 새로운 체제의 국가로 등장했다. 1998년 모라토리엄을 겪으며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은 2000년 대까지 근 10년간 국내 정치와 경제 불안정에 국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 기간을 보내며, 대외적 문제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많지 않았다. 2000년 블라지미르 푸틴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며 러시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며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첨예화 되기 시작한 시점을 떠나서 러시아의 입장은 푸틴 집권이전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지가 적었고, 러-일 간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가 열친정부 이후 다시 재 점화 되면서 러시아 언론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커지기 시작했다. 푸틴 집권 이전까지 러시아언론에서 언급된 독도(타케시마)와 관련된 기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신문보도에 대한 조사 시기를 푸틴 집권 이후로 잡았다.

표 1. 독도의 연도별 러시아보도 노출 횟수

기간 \ 명칭	Токто (독토)	Токдо (독도)	Докдо (독도)	Такэсима (타케시마)	Лианкур (리양쿠르)	독도, 타케시마 공용표기
1999.1.1~2000.12.31	1	0	0	1		1
2001.1.1~2002.12.31	4	0	0	7	0	2
2003.1.1~2004.12.31	6	1	1	7	3	4
	8					
2005.1.1~2006.12.31	151	11	9	129	2	74
	171					
2007.1.1~2008.12.31	88	2	22	86	2	57
	112					
2009.1.1~2010.12.31	118	6	39	58	13	53
	163					
2011.1.1~2012.12.31	606	9	34	481	134	318
	649					
2013.1.1~2014.12.31	513	5	37	329	69	273
	555					
2015.1.1~2016.12.31	301	1	7	228	67	153
	309					
2017.1.1~2018.7.31	444	0	39	355	142	212
	483					

러시아 언론 검색 사이트에서 독도(타케시마)명칭을 사용한 기사는 2000년 이전까지는 없었고, 첫 번째 언급은 2000년 10월 11일 코메르상트 《Коммерсантъ》지 10페이지에 북한 조명록 원수의 워싱턴 방문을 알리는 기사에서 발견되었다. 코메르상트지는 북한의 중앙방송을 인용해 《북미관계의 호전으로 북한이 일본에 일제강점기 동안의 보상과 함께 《뒤에 숨기고 있는 칼을 버려야 한다》며 일본을 비난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메르상트》지는 공신력 있는 러시아의 주간지로 주 6회 발행하며 사회, 정치, 비즈니스 관련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신문이다.

독도에 관한 후속 기사는 2002년 8월 13~16일 간 4개가 검색 되었는데, 러시아 언론은 한국의 '2004년 한국정부의 독도 자연보호구역지정' 보도를 인용하여, 한국은 독

특한 해양 환경을 고려해 독도를 자연특구로 지정하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을 알리려는 시도로 본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일본 총리의 «2000년 가을에 영토 공격이 있었던 독도는 원래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인터뷰를 인용하여 리아노보스티는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리아노보스티는 타케시마의 명칭을 «남한에서 독도라고 부르는 타케시마 섬에 … (…на острове Такэсима, который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зывают Токто.)»로 표기하고, ‘일본 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독도의 일본 소유에 좀더 무게를 두는 뉘앙스로 전했다.

2002.08.13일자 코메르상트지는 «일본 해, 동해 에 위치한 한국인들이 독도라고 부르는 섬을 일본은 타케시마로 부르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섬»으로 기술하며, 분쟁의 대상이 된 섬에 한국 정부가 2004년까지 국립 공원을 건설하겠다는 의도는 실제로 독도 소유권의 한국 입장을 굳히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같은 신문 8월 16일자 보도에서는 한반도 일제강점기 해방 57주년 기념행사를 소개하며 일본과 대립된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한과 북한이 동일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한국의 동해 명칭 사용을 국제수로기구에 제소한 부분을 언급했다. 기사의 마무리로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는 남한과 북한의 화해를 꺼려하지 않으며, … 남한과 북한 정부 양측에 해방 57주년 축하인사를 보냈다»며 한국측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 2004년 2~5월 간 러시아 신문 보도에서 독도와 타케시마 공동 명칭 사용 4건 중 3건이 독도 우선 표기를 하였다.

2004. 2월 6일자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ЕГОДНЯ» 사할린 지역신문은 독도 우표 발행을 언급하며, 한국정부가 우표에 독도를 표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한국 측에 동의 했으며, 한국 정부의 동해 명칭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본 기사에서 독도의 단독 표기와 타케시마의 독도와 공용 표기가 각각 5회와 1회 사용되었다. 쿠릴열도에서 일본과 분쟁 상태에 있는 사할린 지역은 일본에 대한 반감을 독도 관련 기사에서 한국 측에 힘을 실어주며 사할린의 입장을 보여 주었다.

«일본과 한국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섬들»에 관한 대화를 계속 할 것이다»라는 2006년 6월 13일자 러시아 국제통신 “РИА Новости”의 기사에서 «Южная Корея не считает нужным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зая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понии по поводу спор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в частности, на слова о том, что контролируемые Сеулом острова Токто, которые Токио считает своими, были "незаконно оккупированы"»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 한국에 의해 컨트롤되고 있는 독도를 일본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한국측에 점령되어 있다는» 일본정부의 성명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전문으로 실었으며,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 무계를 실어주던 것과 다르게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기사에서 언급된 독도, 타케시마 공용표기 3회 모두 독도가 우선 표기되었다.

반 정부 성향의 독립신문(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는 2005년 5월 23일자 기사에서 러시아와 일본간 영토 분쟁을 언급하면서 다오위다오와 독도 문제도 언급했다. 중국, 한국, 일본간의 분쟁지역을 표기할 때 양국의 명칭들을 모두 사용 했으나, 일본식 명칭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반 정부 성향을 보였다. 코메르상트지는 2005~2006년의 모든 보도에서 전반적으로 독도의 한국식 명칭을 우선적으로 사용했다. 2006.2.22일자 리아노보스티는 «일본에서 타케시마의날 기념»의 표제아래 «**В среду в японской префектуре Симанэ на юго-западе страны отмечают “День островов Такэсима”, как здесь называют группу вулканических островов Токто, находящихся под суверенитетом Южной Кореи, но на которые претендует Япония.** - 수요일 시마네현 남서쪽에서 한국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일본이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화산 섬들인 독도를 지칭하는 «타케시마의 날»을 기념했다.»를 전문으로 «타케시마의 날»행사를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마지막에 일본 중앙정부의 관방장관 아베 신조의 말을 인용해 «중앙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현의 주도적인 행사» 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행사의 의의를 격하시켰다. 2004년 이후 2005~2006년 사이 독도에 관한 러시아 신문보도는 약 16배 정도 양적으로 증가했다. 국내 뉴스도 이전 기간 보다 2005~2006년 사이 약 15배 증가했다.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가 국 내외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음을 보여주고 러시아에서도 비중 있게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국내 2007~2008년 독도 관련 뉴스의 언론노출은 전 기간보다 약 2700건 늘어 난 것과 비교하여 러시아 언론에서 노출은 감소했다가 2011년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러시아 인터넷 뉴스 «Вести.ru»에 실린 2012년 12월 17일자 보도에서는 독도 명칭의 사용이 좀 흥미롭다. «Стоит заметить, что Япония имеет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споры со всеми соседями: помимо Южных Курил, она оспаривает у Южной Кореи острова Токто(Лианкур), а у Китая—Сенкаку(Дююйдао). - 일본은 이웃 모든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갖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남 쿠릴 외에도 일본은 한국의

독도(리앙쿠르), 그리고 중국의 센카쿠(다오위다오)와 분쟁 중에 있다.»며 기사에서 독도를 타케시마가 아니라 리앙쿠르와 공용 표기했으며, 독도를 우선 표기했다. 그에 반해 일본-중국과 분쟁지역 명은 센카쿠를 우선 표기 했다. 2012년 9월 18일 리아노보스티에서는 «Там же находятся и спорные Парасельские острова, на которые претендуют Китай, Тайвань и Вьетнам. Острова Токто (Лианкур) в Японском море никак не могут поделить Япон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 거기에는 중국, 대만, 베트남이 서로 주장하는 시사(파라셀)군도가 영토분쟁에 있다. 일본 해의 독도(리앙쿠르)를 일본과 한국이 나눌 수 없다.» 독도를 리앙쿠르와 공동 표기했으나, 일본 해 단독 표기를 했는데, 타케시마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독도의 한국소유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바다 표기에 동해를 공용표기 하지 않은 것은 아직 러시아에서 동해명칭에 대한 이해가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 독도 관련 다수 기사에서 동해, 일본 해 공용 표기 사용을 했으나, 리아노보스티의 이러한 어휘 사용은 동해표기에 대한 한국의 더 많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러시아에서 동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기사는 2002. 8. 16일자 러시아뉴스 닷컴에서 «일본은 ‘일본 해’와 이별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표제아래 한국과 일본간 영해 명칭 문제를 다루었다. 일본이 모나코 국제수로기구에 항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거의 200년간 영해 명칭을 언급하지 않다가 1992년에 갑자기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 명칭 변경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일본 외무성은 60개국에서 시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370개 간행물 가운데 97%가 일본해로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바가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일본 해 명칭이 더 보편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러시아신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의 다수 기사에서 독도 표기를 우선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해 표기에서도 동해 표기를 우선 사용했다. 심지어 동해 표기를 우선 사용하며, 독도의 단독 표기경우도 자주 보였다.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й спор с Японией обострился до невиданных масштабов, что во многом было спровоцировано личным посещением Ли спорного архипелага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Японском) море. -이명박의 동해(일본 해) 독도에 대한 개인적 방문은 많은 부분에서 자극을 주었으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은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Отметим, что на находящийся в Восточном (Японском) море архипелаг Ток

то претендует Япония. - 일본이 동해(일본 해»에 있는 독도 군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주의를 가져본다.»

코메르상트지 2012년 5월 5일자 보도에서는 «이름 전쟁»이라는 표제아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역 명칭에 관한 분쟁을 소개했다. 기사의 첫 시작을 일본 해와 동해에 관해 다루면서, 일본 해에 있으면 타케시마, 동해에 있으면 독도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며 바다의 명칭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나름 이데올로기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국제수로기구에서는 한국의 이 요청을 받아들임에 있어 서두르지 않았고, 실제 거의 모든 주요국가에서 일본 해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예외로 프랑스가 2004년 해군 네비게이션 지도에서 일본 해와 동해의 공동 표기를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는 있으나 곧 일본 해 사용으로 바꾸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언론의 많은 기사들이 독도 우선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보도의 내용적인 측면도 한국에 우호적이지만, 영해 명칭에 있어서는 거의 일본 해 사용을 선호하고, «러시아 신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경우만 자주 동해 명칭을 우선적으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2011~2012년 러시아 신문 기사 가운데 독도와 리양쿠르 명칭의 공동 사용이 71건, 타케시마와 리양쿠르의 공동 사용이 50건, 독도, 타케시마, 리양쿠르의 공동 사용이 45건 검색 되었다. 독도와 리양쿠르 공동 사용이 26건이 되고, 타케시마와 리양쿠르의 공동 사용은 5건으로 독도 명칭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은 한국 소유임에 더 무게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독도 명칭의 언론 노출 백분율

기간 \ 명칭	독도 Токто	독도 Токдо	독도 Докдо	타케시마 Такэсима	리양쿠르 Лианкур	독도, 타케시마 공용표기
1999.1.1~2000.12.31	1	0	0	1		1
2001.1.1~2002.12.31		31%		54%	0	15%
2003.1.1~2004.12.31		36%		32%	14%	18%
2005.1.1~2006.12.31		45%		34%	1% 미만	20%
2007.1.1~2008.12.31		44%		33%	1% 미만	22%
2009.1.1~2010.12.31		57%		20%	5%	18%
2011.1.1~2012.12.31		41%		30%	9%	20%
2013.1.1~2014.12.31		45%		27%	6%	22%
2015.1.1~2016.12.31		41%		30%	9%	20%
2017.1.1~2018.7.31		40%		30%	12%	18%

표 3. 러시아 언론에서 독도의 표기 현황

	Токто	Токдо	Докдо
2003.1.1~2004.12.31	75%	12.5%	12.5%
2005.1.1~2006.12.31	88.3%	6.4%	5.3%
2007.1.1~2008.12.31	79%	2%	19%
2009.1.1~2010.12.31	72%	4%	24%
2011.1.1~2012.12.31	94%	1%	5%
2013.1.1~2014.12.31	92%	1%	7%
2015.1.1~2016.12.31	97.4%	0.3%	2.3%
2017.1.1~2018.7.31	92%	0%	8%

2003년 이후 러시아 언론에서 사용된 독도의 표기법은 3가지로 Токто, Токдо, Докдо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Токто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사용하던 명칭이고, 1972년 발행된 소련정부의 일본해(동해)수로지에 Токто로 표기되어 있다. Докдо는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트랜스크립션한 형태이다. 이 둘의 합성형태 Токдо는 언론에서 사용빈도가 점차 줄어가며 현재는 거의 사용 되지 않고 있다.

표 4. 뉴스 보도 외에 안덱스 검색엔진을 통한 독도 관련 검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8월 8일 기준)

	검색	월 노출 횟수
독도	49만4000건	279
타케시마	69만6000건	67
독도 섬	약 2000만 건	46
타케시마 섬	약 2000만 건	35

축적 된 정보의 수는 타케시마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월 노출 횟수에서는 독도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러시아에서 타케시마보다 독도가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Summary〉

근현대 독도 / 다케시마 영유문제의 역사적 추이와 전망

— 내셔널리즘, 글로벌리즘, 로컬리즘의 교착 —

The Historical Process and the Prospect of the Issue of Territorial Rights
over the Takeshima/Dokdo Island in Modern Days :
The Interaction of Nationalism, Globalism and Localism

사카모토 유이치 (Sakamoto, Yuichi)*

The dispute of territorial rights over Dokdo/Takeshima (竹島) is a critical important factor that has recently turned the Korea-Japan relations to become the worst in history. This is a study o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o peacefully resolve this issue. As a premise, this study determines the title to territory in modern international law with the global logic of territorial expansion agreed by the imperial powers for modern nation-states to have understanding interest of nationalism. However, unlike the Western world, the Empire of Japan seized its neighboring state Korea, which was an independent nation. The boundary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Korea was unclear, and the citizens of the two countries carried out livelihoods activities in the locality, frequently crossing the nationalistic 'border.' As a result, Japan as the suzerain state inevitably dragged the Joseon people into their activities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so-called 'colonial modernity' was inevitably expanded. The Empire of Japan included Dokdo/Takeshima as its own territory in the process of the Russo-Japanese War. This is why after the Japan-Korea Annexation in 1910, the

* 리츠메이칸대(Ritsumeikan University)

fisheries of Dokdo were dominated and used by the Japanese people in Ulleungdo. Once the colonization was stabilized, Joseon people also began fishing there. As the Japanese people decreased at the end of the colonial era, the potential title to territory was actually established as the local living sphere^{area} for livelihood of the Joseon people. After Japan's defeat in 1945, the GHQ-SCAP gave a series of orders to separate Dokdo/Takeshima from the Japanese territory. As a result, the potential title to territory of the Joseon people stood out since the colonial period, which led to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in the Treaty of San Francisco in September 1951, the title to Dokdo/Takeshima was handled indefinitely due to the military strategy against East Asia by the US. Furthermore, it was unofficially indicated as the Japanese territory in the 'Rusk documents.' However, Korea announced the so-called 'President's declaration of sovereignty (Syngman Rhee Line)' in February 1952 just before the Treaty went into effect, reinforcing effective control over the island. This dispute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faced constant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in the end it remained indefinite in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signed along with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June 1965. Despite such lack of grounds in international law, it has already been over 60 years since Korea dominated Dokdo. In fact, it is impossible to deny this. It seems desirabl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spect the historic title of Dokdo/Takeshima as the local living sphere for the residents, and give up on the sovereignty over Dokdo/Takeshima in terms of fishery and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요약문〉

독도/다케시마(竹島)영유를 둘러싼 분쟁은 최근 한일관계가 역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되어버린 중요한 요인이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현대사 연구이다. 우선 그 전제로서, 근대 국제법의 영역 권원을 근대 국민국가가 내셔널리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제국주의 열강끼리 합의한 글로벌적인 영토확장 논리로 파악한다. 그러나 일본제국은 구미제국과 달리 인접지역, 특히 독립국가였던 한국을 병합하였다. 일본제국과 한국의 경계영역은 뚜렷하지 않았고 양국 주민들은 내셔널리즘적 ‘국경’을 넘나들며 로컬리티적 생업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종주국인 일본의 경제개발활동은 필연적으로 피지배민인 조선인들까지 끌어들이게 되었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작용을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제국은 일러전쟁 과정에서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독도는 울릉도에 있던 일본인들이 어장을 점령하여 사용하였다. 식민지 지배가 안정된 뒤에는 조선인들도 그곳에서 어업활동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 식민지 말기에는 일본인이 감소함에 따라 사실상 조선인들의 로컬리티적 생업지역으로서 잠재적 영역 권원이 성립되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후 GHQ-SCAP는 일련의 지시를 통해 독도/다케시마를 일본 영역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 결과 식민지 시기부터 조선인들의 잠재적 권원이 두드러졌고 곧 한국 정부의 실효지배로 이어졌다. 그러나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독도/다케시마에 대한 귀속여부가 미국의 동아시아의 군사전략으로 인해 애매하게 처리되었다. 심지어 ‘러스크서한’에는 일본령으로 비공식 통고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측은 조약 발효 직전인 1952년 2월에 이른바 ‘대통령주권선언(이승만라인)’을 선포하여 실효 지배를 강화했다. 이 영유분쟁은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도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1965년 6월 한일조약과 함께 체결된 ‘분쟁처리에 관한 교섭공문’에서 애매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렇듯 국제법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한국이 독도를 지배한 것은 이미 60 여년에 이르렀다. 사실상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로컬리티적 생활영역이라는 역사적 권원을 존중하여 어업이나 자연자원보전 관점에서 독도/다케시마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要旨文〉

近現代における竹島／獨島領有問題の歴史的推移と展望

— ナショナリズム・グローバリズム・ローカリズムの交錯 —

坂本 悠一*

竹島／獨島領有を巡る紛争は、かつてなく悪化している日韓関係の重要な要因となっている。本稿は、その平和的な解決のための近現代歴史学からの接近の試みである。まず前提として、近代国際法における領域権原を、近代国民国家がナショナルな利害を貫徹させるために帝国主義列強間で合意したグローバルな領土拡張理論として把握する。しかし欧米とは異なって、隣接諸地域とくに独立国家であった朝鮮を併合した日本帝国主義の境界領域にあっては、こうしたナショナルな「国境」を跨いだ両国の住民のローカルな生業活動が展開されていた。その結果、宗主国である日本の経済開発活動は必然的に被支配下の朝鮮人をも巻き込んで、いわゆる「植民地近代化」作用を齎さずにはおかなかった。1905年に「無主地先占」として合法的に日本帝国の版図に編入された竹島／獨島は、10年以降の植民地支配下において、まず鬱陵島在住の日本人の、続いて朝鮮人の漁場ともなっていた。その傾向は、日本人の減少に伴ってますます進行し植民地末期には事実上朝鮮人のローカルな生業地域として、潜在的な領域権原が成立していた。1945年の日本の敗戦により、GHQ-SCAPは一連の指示により竹島／獨島を日本の領域から分離し、その結果として植民地期の潜在権原が顕在化し、まもなく韓国政府の実効支配へと繋がった。しかし1951年9月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は、竹島／獨島の帰属は米国の東アジア軍事戦略から曖昧にされ、「ラスク書簡」で日本領と非公式に通告したが、韓国側は条約発効直前の52年2月にいわゆる「大

* 執筆者：坂本悠一 所属／職位：立命館大学コア研究センター／客員研究員

連絡先：〒603-8374 京都市北区衣笠高橋 40-603

E-mail：yu-sakamoto@kjb.biglobe.ne.jp

この論文は『社会システム研究』32号(立命館大学社会システム研究所、2016.03)に掲載されたものである。

- 본문 중의 한글 번역은 한국 독자들을 위해 필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

統領主権宣言(李ライン)」を宣布して、同島を囲い込み周辺の警備を強化した。この紛争は日韓会談でも難航し、結局は1965年6月の日韓諸条約のなかの「紛争処理に関する交換公文」で曖昧な決着をみた。このように、国際法的な根拠には乏しいものの、韓国の支配はすでに60年余に及んでおり、これを否定することは実際には不可能である。日本側としては、地域住民のローカルな生活領域という歴史的な権原を尊重し、漁業や自然資源保全の観点から、その領有権を放棄することが望ましい選択肢であろう。

キーワード：竹島／独島，近代領域権原，「無主地先占」，「固有領土」論，韓国併合，「植民地近代化」，「ラスク書簡」，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日韓条約

■はじめに一領土問題に向き合う歴史学研究者の基本的姿勢

近年になって日本を巡る領土紛争は、日韓朝間の竹島／独島問題のみならず、尖閣諸島問題、「北方領土」問題として噴出し、東北アジア地域の平和と友好を阻害する重大な要因となっている。これらの領土問題には、それぞれに歴史的淵源が伏在しており、各国の歴史学研究者にとっても、重要な研究課題として突き付けられている。しかし、とりわけ近年になって激化している竹島／独島領有権問題をめぐる論争では、領有権を声高に主張する政治性を帯びた論述が、過剰化している¹(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정치성을 띤 논조가 과잉되고 있다)。韓国では東北亜歴史財団独島研究所が国家的プロジェクトであるのにたいし、日本では一地方自治体にすぎない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がそうした国家的課題を担う機関となっている。しかし竹島問題研究会の場合、史資料の発掘にはある程度の成果を挙げてはいるものの、会の公式的主張である「日本固有の領土」という枠組から乖離した見解は、会の出版物からはすべて排除されている²(일본의 다케시마연구회는 연구회의 공식 주장인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틀과 괴리를 가진 견해는 연구회의 출판물에서 전부 배제하고 있다)。したがって、筆者は「固有の領土」などといった恣意的前提を全面的に排除して、日韓両国だけでなく米国を含めた関係各国の一次史料をできるかぎり客観的に解釈して一定の結論を得る、という基本的姿勢によって、この課題に接近していきたい。

I. 近代領域権原と領土概念

本稿が対象とする領土問題では、関係各国とも「固有の領土」なる用語が無前提に使用されているが、その語源を辿れば中国の古典『易経』に由来し、漢字文化圏にだけにしか通用しない概念である。したがって、その英文表記については定訳がなく、日本では ‘inherent Territory’, ‘a part of Territory’, ‘an integral part of the Territory’ などを使用し、韓国・北朝鮮では‘고유영토’と対抗的にそれぞれ使用している。 まったく非歴史科学的な概念の捏造としか言えない³(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완전히 비역사적, 비과학적 개념의 날조로 밖에 볼 수 없다).

領土問題の歴史学的研究においては、史的な実証が不可欠であるが、その基準となる基礎的な理論的前提が要請されている。まず、 いわゆる「近代領域権原」なるものは、「近代国民国家(Nation State)」の成立を歴史的な前提とした国際法的な概念である(이른바 ‘근대 영역 권원’이라는 것은 ‘근대국민국가(Nation State)’의 성립을 역사적 전제로 한 국제법 개념이다). 具体的には、1894年に当時のドイツ帝国宰相ビスマルクによって招請され、翌95年2月に調印された「ベルリン一般議定書⁴」が嚆矢となった。それは非欧米地域とりわけアフリカ大陸における領土獲得競争の激化に伴う紛争の防止を目的としていた。なかでも議定書において、領域権原として「無主地先占」が条文化されたことが注目される。その内容は、単なる「発見」による領域支配を根本的に否定し、「実効支配」を不可欠の要素とした領域権原を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な法体系として定式化した(그 내용은 단순한 ‘발견’에 의한 영역 지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실효적 지배’를 불가결 요소로 한 영역권원을 국제표준적 법체계로서 정식화했다)。しかしその実態は、近代国家を形成しないアフリカ諸国における先住民の生活領域を、西欧列強による帝国主義的侵略によって自国領に併合するといった行為を正当化するものであった。この原理は、19世紀末から20世紀初頭にかけて列強間の植民地獲得競争の過程において、一定の調停的役割を果たすものの、ついには第一次大戦という未曾有の世界戦争へと繋がった。要するに、近代国際法なるものは、近代国民国家の枠組みを前提したナショナルな「先進国クラブ」の規範であったことから、これを超越したグローバルな国際基準としては定着せず、国家間の利害対立による大幅な修正という憂き目に遭った。結局は大戦後のサン・ジェルマン条約(1919年 8月・連合諸国とオーストリアの

講和)によって、無主地先占規定から「事前通告」の義務が削除されるという重要な変更が加えられた⁵。しかし、その概念自体は爾後も存続し、国際司法機関である「常設国際裁判所」(PCIJ・1920年12月設立)および「国際司法裁判所」(ICJ・1946年 4月設立)における領域紛争裁定の基準として採用され、判例としてもなお依然として消滅には至っていない。

要するに近代領域権原なるものは、こうした西欧列強間のグローバルな国際的基準としての近代国際法の構成部分として確立されたものと言える(근대 영역권원은 이러한 서구 열강 간의 글로벌한 국제적 기준으로서의 근대 국제법의 구성 부분으로서 확립된 것일 고 할 수 있다)。近代国際法について、その基本的性格を再度確認しておく、「19世紀に世界的規模にその適用範囲を拡大した当時の国際法のルールは、欧米列強の世界支配に有利な、ある意味でこれを正当化する機能を持った法体系であった」とくに当該問題で争点となる「無主地先占」の概念については、「当時の欧米の『文明国』の基準に照らしてこれに達していないとされたアジア・アフリカの土地は、いかに現地の人々が現実的に共同体を形成して平和的に暮らしていようと、国際法上は無主地とされ、先占による領域取得の対象とされた」(‘무주지 선점’의 개념에 대해서는, ‘당시 서양의 『文明국』의 기준에 비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아프리카의 땅은, 비록 현지인들이 현실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국제법상 무주지로 되어, 선점에 의한 영역 취득의 대상이 되었다)との指摘⁶は、肝に銘じておく必要がある。

さて近代国際法学における領土取得の権原としては、通説的に①「先占(occupation)」②「時効(prescription)」③「割譲(cession)」④「併合(annexation)」⑤「征服(conquest)」⑥「添付(accretion)」の6種が挙げられる⁷。この問題について戦後日本で最も体系的に研究した太寿堂鼎は、古代ローマ法以来の欧州各国における各種の文献を渉猟しつつ、「先占は、地理上の発見以来、非ヨーロッパ地域の獲得を目指すヨーロッパ諸国の、植民地分割の闘争の過程にうちに生まれてきた法原則であった」と喝破したうえ、この先占の要件として、①その主体は国家であること、②その客体は無主の土地であること、③国家が領有の意思をもった行為であること、④実効的な占有として地方的権力の確立を要することと定義した⁸(이 선점의 요건으로서 ①주체가 국가일 것, ② 그 객체는 무주지일 것, ③ 국가의 영유 의사를 가진 행위일 것, ④ 실효적 점유로서 지방적 권력 확립을 요한다고 정의했다)。

II. 前近代における竹島／独島領有権

筆者は近現代史研究者であるので、前近代史については一次史料を解読した研究は困難である。したがって本題に入る前に、これまでに日韓両国で通説となっていると判断される成果を自身の理解に拠って整理しておきたい。

1. 6世紀の新羅による「于山国」征服

この史実は『三国史記(サングサキ)(新羅本記(シルラポンキ))』(西暦512年 6月条)に初出するが、「于山国に武陵(ムルン)・于山(ウサン)の二島がある」との記録は、遙か後年の李朝時代の『宗実世録(セジョンシルロク)(地理誌(チリジ))』(1432年)によるもので、「当該国に二島が存在したという」程度の情報しかない。ただし同様の記録は、その後も『高麗史(コリョサ)(地理志(チリチ))』(1451年)、『新增補東国与地勝覧(トングツギヨジスラム)』(1531年)などの官撰地誌類にも表れている。また17世紀になると、後述する安童福が日本側に鬱陵(武陵)・子山(于山)ともに朝鮮領土だと主張したとの記述がなされている(『宗実肅録(スクジョンシルロク)』巻30・1696年)。しかし、多数の地誌・地図類の歴史の変遷を子細に検討した池内敏の研究によれば、512年以降竹島／独島(ドクト)が一貫して朝鮮領であったという、韓国や北朝鮮で主流となっている領有権主張の根拠には到底なりえない⁹(512년 이후 일관되게 다케시마/독도가 조선땅이었다는 한국이나 북한에서 대세를 이뤄 온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도저히 될 수 없다)とされる。

2. 17世紀日本の伯耆国商家による「竹島(鬱陵島)経営」

これは1417年に始まった李氏朝鮮王国の「空島政策」に乗じて、鳥取藩米子の大谷(おおや)・村上(むらかみ)両家に限定して非公式に許可され実行されたものであった(『일본의 울릉도 도해는』 돛토리 번 요나고의 오오야・무리카미 양가에 한정하여 비공식적으로 허가, 실행되었다)。しかし後述する朝鮮人漁民との競合を受けて、1695~96年には江戸幕府が鳥取藩への調査を独自に行ない、96年には公式に「元禄竹島渡海禁令」を同藩に発出すること

によって停止された。さらに1838年には、石見国浜田藩の今津屋による密輸事件を契機に「天保竹島渡海禁令」が、今度は全国法令として通達された¹⁰。

3. 安竜福の渡日と「領土交渉」

1693年に空島時代の鬱陵島で密かに漁撈に従事していた安竜福(アンヨンボク)らは、米子の大谷船と遭遇し、彼と朴於屯(パクオトン)の2人が鳥取まで連行されたが、対馬を経て朝鮮に送還された。さらに1696年には、鬱陵島と竹島／独島が朝鮮領であることを主張するため、今度は自らの意志で渡日したが、その直前に江戸幕府が「元禄竹島渡海禁令」を发出していたため、実質的には効果はなかった。ただ1693年の鬱陵島での衝突連行が、幕府をして「渡海禁令」を出すに至らしめた日朝交渉の契機とな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しかし彼は朝鮮政府を代表する立場にはない密漁者であり、その行動によって竹島／独島が朝鮮領であることが認定されたことにはならない¹¹(안용복은 조선 정부를 대표하는 지위가 아닌 밀어업자이며, 그의 행동으로 다케시마/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정 될 수는 없다)。ただし韓国においては、彼を「朝鮮の領土を護った英雄」として評価する見解が教科書などでは大勢を占めている。

以上を要約すると、前近代における竹島／独島の位置は日朝両国の境界領域にあり、こうした史実は近代国家(国民国家)の領有権問題に直接的に繋がるものではない(전근대의 다케시마/독도의 위치는 조-일 양국의 경계 영역에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근대 국가(국민 국가)의 영유권 문제로 직접적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と考えられる。

Ⅲ. 近代前期(明治期)における竹島／独島領有権

1. 1877年の日本太政官指令

日本の明治維新政府は、1876年10月の島根県による「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うかがい)」を受けて、旧幕府文書などを精査したうえで、翌77年 3月「竹島外一島之義、

本邦関係無之(これなき)義」との太政官指令を決定した¹²。これは竹島(鬱陵島)・松島(竹島／独島)ともに日本領土外と解したことであり¹³，過去の江戸幕府による2回の「渡海禁令」と併せて，中央政府が3度に涉りその領有権を否定した(일본중앙 정부가 3번에 걸쳐 독도 영유권을 부인했다)というきわめて重要な事実を意味する。

2. 朝鮮政府による鬱陵島開拓と日本人の侵入

先の明治政府の決定や，度々に涉る「竹島(鬱陵島)開拓願」の却下にも拘わらず，同島に不法に侵入し伐木などに従事する隠岐島民をはじめとした日本人は跡を絶たなかった。これにたいし朝鮮政府は15世紀初頭以来450年以上に涉った「空島政策」を撤回し，1882年に「鬱陵島開拓令」を出して陸地住民の移住を奨励するに至った(조선 정부는 1882년에 ‘울릉도 개척령’을 반포하고 육지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기에 이르렀다)。また翌83年には朝鮮政府の抗議による日本人の一齐引揚げも実施されたが，その後も侵入渡島は継続された¹⁴。また1902年 4月に至って，これら在留日本人の保護と取締のため，釜山(プサン)領事館の警察官駐在所が設置された。当時同島に移住した朝鮮人は，羅道巨全文島(チョルラドコムンド)などからの季節的通漁者を除いて，多数が全島の内陸部に散在して居住し，農業とりわけ初期には火田で開墾した農地での耕作(大豆・大麦・馬鈴薯・玉蜀黍)を主な生業としていた。また漁業については若布・海苔などの採取に限られており，漁業や商業は専ら移住日本人が独占していた¹⁵。

3. 竹島／独島における海驢猟と「独島」呼称

前述のように，鬱陵島に渡島する日本人が増大し，また移住する朝鮮人も累増するなかで，大韓帝国政府は禹用鼎(ウヨンジョン)を同島に派遣して視察にあたらせるなど，実効支配を強化していった。また竹島／独島にたいする認知も，鬱陵島在住の日韓両国民の間に高まったと考えられ，朝鮮人が同島で海^{アシカ}驢猟を行なった可能性もある¹⁶。しかし当時においては，隠岐島と鬱陵島を往復する日本人の方が実際に見聞する可能性がより高く，それは海驢の大量捕獲を開始する契機となった。また日本海軍も1904年 2月の日露開戦を契機に，日本海一帯で軍事要地の調査を実施し，その過程で同年9月25日軍艦新高(にいたか)が，

当時「りゃんこ島」と通称されていた竹島／独島の韓国名が「独島」であるとの記録を残していた¹⁷ことが堀和生によって明らかにされた。したがって、竹島／独島の「独島」なる呼称はこれをもって嚆矢とし(1904년 2월의 니다카호의 기록이 다케시마/독도의‘독도’라는 호칭의 시발점이다)、これ以前に遡及することは史料上困難である。

4. 1900年10月の大韓帝国勅令第41号

こうした情勢のもとで、竹島／独島にたいする認知を強めつつあった韓国政府は、1900年10月25日に「勅令第41号」を公布施行し、鬱陵島を江原道(カンウァンド)「鬱島郡(ウルドクン)」に昇格し、その管轄区域を「鬱島全島・竹島・石島」と規定した¹⁸。韓国においては、ここに言う「竹^{テド}島」は鬱陵島に近接する現「竹嶼(チュクソ)」であり、「石島(トルド)」が現「竹島／独島」に該当するという解釈が、政府だけでなく研究者を含めた圧倒的多数の見解となっている¹⁹。しかし、この勅令には経度緯度で地域が特定されず、「石島」の名称も全羅・慶尚(キョンサン)両道の方言の音譜転訛により「独島」と説明されるが確定的な実証はなされていない²⁰。さらに決定的な弱点は、この「石島」にたいする行政権の行使など実効的支配はまったく実施されていない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この勅令は『官報』に掲載されたという公然性を有するものの、国際法的な効力において致命的な欠陥があり、これをもって韓国政府の竹島／独島にたいする近代的な領有権が確立したとは到底言い難い(대한제국 칙령41호가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근대적 영유권을 확립했다고는 도저히 말하기 어렵다)。

5. 1905年大日本帝国による竹島／独島の領土編入

1904年9月29日、隠岐島在住の漁業者であった中井養三郎(なかいようざぶろう)が、前年に竹島／独島で行なった海驢猟を独占するため、日本の外務・内務・農商務各省に「りゃんこ島領土編入並に貸下願」を提出した。これは、翌05年1月28日に閣議で承認されて「竹島」と命名され、翌 2月22日には島根県告示第40号で、「隠岐島司の所管」とされた²¹。しかし、この時期は日露戦争の最中であり、日本海軍はバルチック艦隊との主戦場を鬱陵島と竹島／独島近海と想定しており、すでに1904年9月2日には鬱陵島に望楼と電信線を開設し、同年11月には竹島／独島にも、同様の施設の設置予備調査を行っていた。その直後の「領土

編入」願書と閣議決定は、海驢嶺の保護を表向きの看板としていたが、眞の狙いは軍事施設の建設にあった(그 직후의 ‘영토 편입’원과 각의 결정은, 강치 사냥의 보호를 표면상의 이유로 하고 있지만, 진짜 의도는 군사 시설의 건설에 있었다)ことは、当時の日本政府部内でも内務省の強い反対を押し切った肝附兼行(きもつきかねゆき)海軍水路部長や山座円次郎(やまざえんじろう)外務省政務局長の発言趣旨²²から明らかである。したがって、その目的は帝国主義戦争を遂行するための軍事的なものであったが、(그 목적은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인 것이었다)当時の竹島／独島はまったく人の住まない国際法定義以前の「無主地」であり、その領土編入を地方的告示であれ公示したことは、当時の国際法上いわゆる「無主地先占」に該当し有効と見なさざるを得ない(영토 편입을 지방 고시라고 하더라도 공시를 한 것은 당시의 국제법상 소위 ‘무주지 선점’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しかし、当時竹島／独島にたいする領有意識を強めつつあった韓国の官民は、自国領土にたいする侵害として認識してい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당시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영유 의식이 강해지고 있던 한국의 관민은 자국 영토에 대한 침해로 인식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まず1906年 3月28日に島根県竹島調査団が来島するに及んで韓国人として初めてこの領土編入措置の情報に接し驚愕した鬱島郡守沈興沢(シンフンテク)は、その旨を翌日に江原道觀察使李明来(イミョンネ)に報告し、さらに韓国政府の内部大臣李址鎔(イヂヨン)と参政大臣朴齊純(パクチェスン)にも伝達され、彼らはこれを遺憾としたという。また当時の韓国で代表的な新聞『皇城新聞(ハンソンシンムン)』と『大韓毎日申報(テハンメールシンボ)』が、その経緯を報道し、いずれも日本による自国領土への侵略と捉えていた²³。なお、竹島／独島おける仮設望楼と電信施設の開設は日本海海戦終了後の05年 8月19日のことであり、実戦のうえで役割を果たすことはなく、翌年には「竹島漁獵合資会社」に払い下げられた。また編入措置は経度緯度の明記された告示だけでなく、現地調査も実施したうえで、土地台帳への記載や漁業鑑札の発給も実行されている²⁴。これにたいする韓国側の抗議は、1905年11月のいわゆる「保護条約」により外交権が剥奪されていたことから、不可能であった。こうした経過を総合的に考察すれば、この領土編入は帝国主義的な領土拡張の一環とは解釈できるが、当時の近代国際法の基準に照らして無効とまでは評価できない(이 영토 편입은 제국주의적인 영토 확장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의 근대 국제법 기준에 비추어 무효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IV. 近代後期(植民地期)における竹島／独島領有権

1. 韓国の保護・併合と竹島／独島

日本帝国主義は日露戦争の勝利によって、ついに1910年8月に韓国を併合し、これによって、鬱島郡も朝鮮総督府慶尚南道(キョンサンナムド)(大韓帝国期の1907年に江原道から移管)の統治下に入り、さらに14年には慶尚北道(キョンサンブクト)に移管された。在住日本人の人も14年9月には、一時的に2,000名を超えるまで急増し、これは同島総人口の約23%を占めるものであった²⁵これら移住民の出身地は、島根・鳥取の両県で約 8 割を占め、島根県ではその過半数が隠岐諸島の出身であった。これら日本人の居住地は郡庁所在地である面道南洞(ナンミョントドン)に集中し、生業としてはとくに漁業が最多で、公務および商業がこれに次いでいた。他方この時期の朝鮮人は専ら農業に従事していたから²⁶、鬱島郡の日朝住民間では、生業面での一種の棲み分け状況が生じ、その限りでは福原裕二の言うように「共棲状態」が続いていた。しかし、その内実を見ると、資力や教育水準の面において日本人植民者の優位は揺るがず、行政面でも歴代島司はすべて日本人で、少数の下級朝鮮人吏員が存在したのに留まる²⁷(그 속 사정을 보면, 재력과 교육 수준 면에서 일본인 식민자의 우위는 변함없었으며, 행정면에서도 역대 도사[島司]는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소수의 하급 조선인 관리가 존재한 것이 전부였다)。

2. 鬱島漁業の変遷

ところで、当初は日本人がほぼ独占していた鬱島郡の漁業について見ると、烏賊(イカ)漁次いで鯖(サバ)漁などの沿海漁業が主であり、その豊漁と不漁が定住人口の増減にかなりの影響を及ぼしていた。これにたいし、朝鮮人は農業を生業の中心とし、副業として沿岸での若布・海苔などの採取を行っていたため、人口は安定的に増加し1930年には1万人の大台に達した²⁸。また、前述した竹島／独島における漁業にかんしては、すでに1902年頃に鬱島郡在留の日本人(隠岐・天草・志摩地方からの出稼者を含む)たちが、鮑(アワビ)を採取するために出漁したという記録がある²⁹。翌03年から本格化した海驢猟については、既に述

べた中井養三郎ら 4名の隠岐島を基地とする「竹島漁獵合資会社」の独占とはならず密猟者が加わった乱獲状態が続き、他方で鬱陵島在住の日本漁民が朝鮮人漁夫を雇って出猟する事例が見られる。例えば04年には、「ランコ島(竹島/独島)ニ棲息」する「トドト称スル海獸(海驢)」を鬱陵島民の漁船 3艘が計30人の漁師で捕獲を開始したと記録されている30。1905年に中井側が記録した史料によれば、この年に竹島/独島に赴いた密猟者計 8組のうち 3組は朝鮮人漁夫を伴っており、鬱陵島を基地として出猟したことが確実である31。さらに06年 5月初旬には、天草漁民約30人が来島し、漁獵会社側と衝突したとの記録もある32。

次に回遊性魚族である烏賊や鯖などは当時は沿海漁業であったが、漁船をはじめ一定の装備を必要としたから、当初は資金力に優る日本人漁師の独占という状況が続いた。しかし、その後はこうした日本人漁師に雇用されていた朝鮮人漁夫たちも漁業技術の伝習を受け、また資金を蓄えることに成功した少数の漁夫は自前の漁船を所有し独立して漁業を営む者も出現することになった33(그 후에는 일본인 어부에 고용된 조선인들도 어업 기술을 전수받았고, 또 자본 축적에 성공한 소수의 어부는 자기 어선을 소유하여 독립적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도 출현하게 되었다).統計史料の得られる1932年と37年の産業別戸数および人口を一瞥しておく、以下のように朝鮮人漁業者の戸数・人口が累増している。

年次	日本人漁業戸数(人口)	朝鮮人漁業戸数(人口)	出典
1932	56(195)	257(1366)	『昭和八年島行政一斑34』
1937	33(125)	314(1576)	『昭和十三年島勢一斑35』

このように日本の植民地支配下にあっても、陸地から隔絶された孤島であった鬱陵島においては、日朝両民族が比較的共生して生活する状態のもとで、従来農業にしか生業を得られなかった朝鮮人にも、日本人島民の減少に伴って漁業への進出がみられるようになった36(기존 농업으로만 생업을 유지하고 있던 조선인도, 일본인 주민의 감소에 따라 어업으로 진출하게 되었다).また竹島/独島における海驢の漁業権は、1914年頃に中井養三郎から子息の養一(よういち)の名義に継承されたが37、28年頃に実質的に隠岐島在住の有力者であった八幡長四郎(やはたちょうしろう)・橋岡忠重(はしおかただしげ)らに転売された38。また1918~19年頃には「『ウツリヨウ』島の日本人三人が、朝鮮人十数名をひきつれて竹島に来航し、アワビ等多数漁獲していた39」、もしくは21年頃より鬱陵島在住の奥村平太郎(おく

むらへいたろう)は「毎年、朝鮮人多数をひきつれて、竹島に出漁し、主として、アワビ、サザエなどの密漁を行なった40」との記録もある。おそらくこれを契機として、25年には根付漁業の権利は八幡・橋岡らから奥村平太郎に売却(いわゆる「浜売(はまうり)」)された41。さらに20年代後半から30年代前半にかけて、連年4月下旬から7月下旬にかけて鬱陵島を基地とした動力船が曳航する潜水器漁業が実施されていた42。例えば 5トンの発動機船 1艘(計 5名・うち朝鮮人 4名)が潜水器船 2艘(計14名乗組・うち朝鮮人12名)を曳航し、1日で鮑約600貫の収穫を得たとされる43。同時に奥村父子は、鬱陵島において缶詰工場を経営していた44。このように動力船の発達により、竹島/独島方面への出漁も格段に容易になり(동력선의 발달로 다케시마/독도 쪽으로의 출어도 훨씬 쉬워지게 되었으며)、例えば35年5~7月には日本人 3名の漁業鑑札により日朝双方の漁夫13名と濟州島の海女と覚しき4名の同島における海驢と鮑の操業状況が写真として残されている45。さらに、1938年以降45年まで「竹島漁獲は、九トン、二十トンの二隻の母船と運搬船とを派遣し、潜水器二艘、小舟五隻で漁撈し、乗組員は総勢約四十名で、その内監督者二~三名が日本人で、他は朝鮮人であった46」、41年には「サイシュウ島の海女十六名をひきつれ、ウニ獲に渡島した…47」とも記録されている。さらに1925年 5月には、鬱陵島に慶尙北道の水産出張所が設置され48、37年頃には毎年夏季に同島から竹島/独島に向けて「水産試験船が巡回」していた、との報道記事49もある。

3. 鬱陵島居住朝鮮人による竹島/独島での漁撈

竹島での漁業免許は名義上島根県の発給したものであったが、その後は海驢の捕獲頭数が、1916-17年当時の約200~300頭から38-39年には100頭前後にまで激減した50 ことも重なって、隠岐島を基地とした漁業権は事実上鬱陵島民に移転していった(오키섬을 기지로 한 어업권은 사실상 울릉도 주민들에게 이전되어 갔다)。その結果は当事者によっても、「ウツリヨウ島漁民(主として朝鮮人)の跳梁にまかせた」、また「ウツリヨウ島漁民(特に朝鮮人)に竹島における独占的漁獲をほしいままにさせ以て今日における韓国側の漁業実績をつくりあげるに至った」と評価されている51。こうした鬱陵島からの竹島/独島への通漁は、本来であれば植民地から「内地」への渡航に該当し、朝鮮人にたいしては関釜連絡船(下関~釜山)や阪濟航路(大阪~濟州島)のように「渡航証明書」の発給が必要なはずであるが、そう

した事実は一切確認できない. 言い換えれば, 1905年の領土編入後間もなく, 韓国併合という政治的措置によって隠岐島と竹島/独島間に引かれていた「国境線」が消滅し, 竹島/独島は隠岐島の属島から鬱陵島の属島へと転化していた(1905년 영토 편입 후 곧 한국병합이라는 정치적 조치로 오키 섬과 다케시마/독도 사이에 그어져있던 ‘국경선’이 소멸하고 다케시마/독도가 오키 섬의 부속 섬에서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전환됐다)のが実態であった.

その後日本は, 1941年末に太平洋戦争に突入するが, その前年の40年 8月17日には, 竹島は島根県隠地郡五箇村から, 海軍舞鶴鎮守府の所轄に移管された. この措置もまた軍事的要請によるものと推察されるが, 舞鶴鎮守府所属部隊の各「戦時日誌」類52 によっても, 海軍が竹島を軍事的に活用した形跡は見あたらない. むしろ41年11月28日の八幡長四郎の出願にたいして漁業を含む土地使用権を付与しており, 八幡の権利を譲渡された鬱陵島の奥村亮(おくむらりょう)(前記平太郎の子息)は, 大戦中にも竹島/独島において鮑漁を行ない, 敦賀や下関に売却している⁵³. これらの史実を総合的に観察すれば, 竹島/独島は日本の植民地支配下において, ますます朝鮮人の独島となるという皮肉な結果を招来した(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점점 조선인의 독도가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と言えよう. したがって, あえて1905年に日本政府が編入しないで, 10年の韓国併合を迎えたとしても, ことの成り行きはほぼ同様であったと推察される. 結論的に言えば, 日本帝国主義の軍事的目的によるいわばマイクロな領土編入措置よりも, 植民地支配といういわばマクロな統治行為が, 朝鮮人による領有意識を強めたのである(일본 제국주의의 군사적 목적에 의한 이른바 미시적 영토 편입 조치보다도 식민지 지배라는 이른바 거시적 통치 행위가, 독도에 대한 조선인의 영유 의식을 강화한 것이다). つまり, こうした境界領域においては, 国家的ナショナリズムを超越した地域的ローカリズムが優勢となり, 解放後の朝鮮人の実効支配に繋がる基礎が形成されていったと考られる. 事実奥村亮の使用人であった鬱陵島民の尹相述(ユンサンスル)・金茂行(キムムヘン)が, 彼の日本への引揚後, その事業を継承したという⁵⁴.

V. 現代(日本の敗戦・朝鮮の解放以後)における竹島／独島領有権

1. 連合国軍による占領政策

1946年1月29日の‘SCAPIN-No.6777’「若干の外郭地帯の日本からの政治上および行政上の分離にかんする覚書⁵⁵」で、竹島／独島もこの分離地域に含められ、「日本の定義」から除外され、施政権が剥奪された。しかし、この措置はポツダム宣言に規定された「諸島嶼の最終的決定にかんする連合国の政策」ではないとの留保がされた。つづいて同年6月22日の‘SCAPIN-No.1033’「日本の漁業および捕鯨業の許可区域にかんする覚書(通称MacArthurLine)⁵⁶」では竹島／独島もその操業地域から除外され、船舶や国民の接触も禁止された。しかし、これについても「国家統治権・国境線・漁業権についての連合国の最終政策ではない」旨の留保があった。ただし米本国では、1946年6月24日に‘SWINCC(国務・陸軍・海軍三省調整委員会)59/1’文書「旧日本支配下の委任統治領および周辺の諸島嶼にたいする信託統治などの処理方法にかんする政策⁵⁷」を作成し、「濟州島・巨文島・ダジュレ(鬱陵)島・リアンクール岩(竹島)……はすべて朝鮮の一部と考えられるべきであり、歴史的にも行政上も朝鮮の一部であって、主として朝鮮人が居住している」と明記されていた(SWINCC(국무·육군·해군삼성조정위원회)59/1는 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는 전부 조선의 일부로 봐야하며, 역사적으로나 행정상에서도 조선의 일부이며, 주로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었다)。これは対日戦後処理にあたっての米国の原初的認識として注目される。

2. 日本政府による平和条約への準備

1945年11月、日本では吉田茂外相が「平和条約問題研究幹事会」を発足させ、翌1946年1月より外務省課長級の職員により研究作業が開始された。そして同年11月以降50年12月に至る間に合計36冊の英文調書が作成されたが、うち7冊が領土問題関係で、第4冊の‘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⁵⁸’(47年6月)において、竹島／独島は鬱陵島とともに日本に帰属すべき地理・歴史的根拠があると説明している(일본의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에는 다케시마/독도는 룡도와 함께 일본으로 귀속시켜야 할 지리·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これらの調書は, 47年1月からGHQのG.アチソン(Acheson)政治顧問(Political Adviser)に秘密裏に手渡され始め, その後任W.J.シーボルト(Siebolt)にも非公式に順次手渡されていった⁵⁹.

3. 米国政府による平和条約の構想

米国政府は,すでに1946年10月から「対日講和委員会」において平和条約の草案起草を開始していたが,その内容は総じて日本にたいして制裁的ないし懲罰的なものであった.例えば47年 3月19日に国務省極東局が作成した草案,また同年 8月 5日に部分改訂された草案では,日本の領土については,日清戦争以降に日本が獲得した領土は,濟州島・巨文島・鬱陵島はもちろん竹島/独島も,経度緯度を明示して放棄す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た⁶⁰(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획득한 영토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물론 다케시마/독도도, 경도 위도를 명시하여, 포기해야 한다고 여겨졌다).さらに48年1月8日にも,改訂草案が作成されるが竹島/独島の取扱いは前 2案と変更がなかった⁶¹.しかしこの過程の最中,米ソ対立いわゆる「冷戦」が激化し,48年 9月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49年10月には中華人民共和国が成立した.これを踏まえて米国はソ連・中国などの共産圏諸国を排除しつつ,従来の「制裁的ないし懲罰的」講和を見直すに至る.その中心業務を担ったのが,47年 1月に就任した C. G. マーシャル(Marshall)国務長官によって新設された PPS(政策企画室)で,その初代室長には G. F. ケナン(Kennan)が抜擢された.

アジア「冷戦」体制を意識した国務省の条約草案 としては,1949年 9月 7日,10月 13日,11月 2日作成のもの⁶² が知られるが,そこでもなお竹島/独島は日本の領域から除外されていた.これは東京の GHQ に送付され,シーボルト政治顧問に手交されたが,彼はその内容に強い違和感を覚え,11月14日の電報および19日付の書簡において,とくに竹島/独島(リアンクール岩)について韓国領ではなく日本領に所属させるよう具申した⁶³(특히,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 한국령이 아닌 일본령에 소속시키라고 건의했다).その理由としては,「これらの島に対する日本の主張は古くまた妥当と思われ,…安全保障の見地からは,これらの島の上に測候所およびレーダー局を設置できる」として,その軍事的役割に着目している(그 군사적 역할에 착안하였다).この意見が国務省において再検討され,49年 12月 29日

の条約草案⁶⁴では、「竹島(リアンクール岩)を日本領土に帰属させる」と明記した。こうした米国草案の転換については、日本側が作成し提供した前記の「領土調書」が大きな影響を与えたものと推測される。また翌 50年 7月 18日の米国務省「解説⁶⁵」では、「竹島…1905年に日本による正式な主張がなされ、見たところ朝鮮による抗議もなく、島根県隠岐支庁の管轄下に置かれた。…竹島は朝鮮名を持っておらず、今までに朝鮮によって主張がなされたことがない」と記され、さらに占領中米空軍の爆撃演習場として使用されたこと(事実1948年 6月8日には、米軍機の誤爆により朝鮮人漁民14名が死亡・行方不明となり 6名が重軽傷を負った⁶⁶)、および前述の軍事的役割についても繰り返し述べられている。

4. 連合諸国の平和条約草案の変化

1950年 1月、D. アチソン(Acheson)が米国務長官に就任すると、ソ連・中国など共産圏諸国が参加する「全面講和」でなくても、米英などいわゆる自由主義諸国による「多数ないし単独講和」を推進すべきと判断した。この路線を遂行するためアチソンは、4月に弁護士の J. F. ダレス(Dulles)を長官顧問に任命した。彼は従来の条約草案約15案に目を通したうえ、同年 6月には韓国および日本(21~28日)を視察し、とくに日本では GHQ 幹部のみならず、両院議長・諸省庁官僚・与野党・労組代表なども会談した。その滞日中の25日に勃発した朝鮮戦争は、兵站基地としての日本をよりいっそう米国の同盟国として自由主義陣営に留めておく必要性を痛感させたものと思われる。こうした経過の後、国務省は50年 9月11日に「対日講和 7 原則」を策定したが、その第 3 項「領域」では日本の地理的範囲への言及はまったく除外されていた⁶⁷。こうして、その後の諸草案では、「竹島(リアンクール岩)」を日本領土に変更した49年12月29日草案より変化し、領土帰属を日本から除外するか、まったく触れないものとなっていく(영토귀속을 일본에서 제외시킬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게 되었다)。その後ダレスはソ連などを含む関係各国と精力的な協議をおこなったうえ、51年 3月 23日に改訂草案⁶⁸ を策定した。これは竹島/独島の日本帰属を曖昧にしたものであった。その要因として、朝鮮戦争の戦況を反映して北朝鮮が勝利する可能性を考慮したこと、および後述する英国が同島を日本領外と考えていたため、両国間の調整が難航する可能があったことから、意図的に曖昧な表現が使われた可能性が高い⁶⁹(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他方で英国外務省も、1951年 2月の第 1次、同年 3月の第 2次、さらに 4月の第 3次と講和条約草案を策定した。4月7日に確定した第 3次最終草案⁷⁰では竹島／独島を日本領外と規定し、この草案にたいして日本政府は不満の意思を持っていたが事実上黙認した⁷¹。英国草案にかんする米国との協議は難航し、結局のところ時間切れで竹島／独島の帰属を曖昧にした米国草案がそのままの形で米英共同草案となってしまった⁷²(**결국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다케시마/독도의 귀속을 애매하게 한 미국의 초안이 고스란히 미영 공동초안이 되고 말았다**)。すなわち51年 5月 3日の改訂を経て、6月14日に再改訂された米英共同草案⁷³は、同年 7月 7日に日本政府に内示され、また同月13日には梁祐燦(ヤンユチャン)初代駐米韓国大使にも示達された。これにたいし韓国政府は同月19日付で、「独島とパラン(波浪)島を朝鮮に帰属させるよう明記する」旨の公文をアチソン米国務長官に手交した。その際ダレス顧問は梁にたいし、「独島及びパラン島の位置とかつて朝鮮領であったかどうか」について質問した。これにたいし梁は、「両島とも鬱陵島の近辺であり、また朝鮮領である」と回答した⁷⁴。しかし、「パラン島」は濟州島のさらに南方にある暗礁(現離^イオ^ド於島)であった。このように韓国側の修正要求なるものは、確たる根拠に乏しいものであったが、その原因については、当時韓国政府が置かれていた時代状況、つまり朝鮮戦争時の1950年 8月には釜山に避難して「臨時首都」を置いていたこと、また梁大使は1923年からハワイで開業していた医師で、英語しかできず祖国の事情に疎かったこと⁷⁵が指摘できる。したがって、51年 8月 10日付の D. ラスク(Rusk)国務次官補による米国側回答⁷⁶は膠もないもので、「独島……平素は無人島であるこの岩礁群は、我々の情報によれば、これまで韓国の一部として取り扱われたことが決してなく、1905年頃から日本の島根県隠岐支庁の管轄下にあります」と、韓国側修正要求を全面的に拒否した(**독도…… 평소에는 무인도인 이 암초군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그동안 결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지청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라며、한국 측 수정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ちなみに「ラスク書簡」の認識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のが、国務省地理担当官であった S. W. ボッグス(Boggs)の 7月31日付報告書⁷⁷である。米国外交文書を駆使した鄭秉俊の研究によれば、彼は米国内で「唯一存在する文献的証拠である日本外務省パンフレット(前記 1947年 6月の「領土問題調書」)の陳述に次第に頼るようになった」とされる⁷⁸。この「ラスク書簡」は、米国の同盟国である韓国にたいする無慈悲な措置とも評価されよう。またこの書簡を巡って、最近では池内敏が「竹島 = 独島が日本領と確認された証拠である⁷⁹」との見解である

のにたいし、竹内猛は「当事国を拘束する証拠と言えるか否かは、議論の余地がある⁸⁰」と疑問を呈している。

5.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調印と竹島／独島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は、1951年 9月 8日に調印された。その朝鮮関係領土条項の全文は「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洲島・巨文島・鬱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請求権を放棄する」となっており、問題の竹島／独島の領土帰属については一切言及がない。したがって、その解釈を巡っては日本の国際法学者の多数は「日本が放棄した地域から竹島は除外されている」との通説的条文解釈⁸¹を述べている。

しかし、この条文自体を根拠にして朝鮮の中に竹島／独島が含まれているかどうかは、判断が困難と言わざるを得ない⁸²(**이 조문 자체를 근거로 한국에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条約締結過程における試行錯誤の経過を踏まえつつ、**ほぼ全能の権威を發揮した米国の帝国主義的な魂胆から、どちらにでも解釈できる曖昧さを残したのでないか(거의 전권을 발휘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의도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함을 남긴 것 아닌가)**と思われる。

さらに1948年8月に成立した韓国政府は、「竹島＝独島の統治権を米国軍政庁から継承し行使していた」とする竹内猛の見解⁸³や、「終戦直後から『南朝鮮』領域としてアメリカ太平洋陸軍の米軍政庁下におかれ、韓国が独立するや韓国政府の行政下におかれた」との朴炳渉の見解⁸⁴もある。事実関係は確かにその通りであり、1947年8月には南朝鮮過渡政府と朝鮮山岳会の合同調査が実施され、⁸⁵ また鬱陵島の漁民らが**大挙して竹島＝独島に渡り操業していた**からこそ、前述した米軍機の誤爆事件も起きたものである。ただし、こうした韓国側による実効支配の強化にたいしては、日本側からも、1953年5月3日に島根県と海上保安庁が仕立てた漁業調査船に隠岐島の漁師を乗せ根付漁業を試みた他、1947年から1965年にかけて島根県の漁業調査船や海上保安庁の巡視船などが、合計42回に渉り竹島／独島を目指して渡航し、うち17回は上陸に成功している。⁸⁶ こうした事実は、**公式な外交ルートとは別に、周辺近海を巡る両国漁民による生活圏を懸けたローカルな紛争が存在していた(공식 외교 경로와 별도로 주변 해역을 둘러싼 양국 어민의 생활권을 다투는 지역 분쟁이 존재했다)**ことを示唆するものである。

こうした曖昧な「国境」地域における領域支配の権原は、欧米の近代国際法の古典的概説においても、「地理的近接性」の概念として、今なお定式化されている⁸⁷(이런 애매한 ‘국경’ 지역에서의 영역 지배의 권원은, 구미의 근대 국제법의 고전적 개설서에도, ‘지리적 근접성’의 개념으로써 지금도 정식화 되어있다).ここでも、境界領域における国家的ナショナリズムを超越した地域的ローカリズムの優勢という法則が看取できる。ちなみに、こうした韓国側の事実上の統治行為にたいして取った米国政府の対応として、1952年10月3日付で東京の駐日大使館から国務省に送信した秘密書簡⁸⁸は極めて興味深い。

これは当時竹島／独島を射爆場として利用していた米極東空軍が、同年9月15日に独島で操業していた船員と海女の存在を確認せずに爆弾を投下し、ついで同月22日には鬱陵島から独島に向かっていた第2次鬱陵島・独島学術調査団が独島付近の海上で爆撃に遭遇したという事件(ともに死傷者なし)を契機に在釜山米海軍司令部にたいし注意喚起を促したものである。内容的に注目されるのは、①この射爆場が日米安全保障条約により日本政府の承認を得ていたこと、②にもかかわらず、「韓国漁夫は定期的に漁業目的でリアンクール岩へ行き」操業していたこと、③国務省は竹島／独島を「ある時期朝鮮王朝の一部であった……日本がその帝国を拡張した時併合された……」と認識していたこと、など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米国政府としては、誤爆事故などにより、この領土問題に不用意に巻き込まれないよう慎重な姿勢を堅持している。さらに1953年11月30日には、駐日米大使館のW.T.ターナー(Turner)参事官が国務省に宛てた覚書⁸⁹において、米国政府としては「ラスク書簡」の趣旨を堅持し、韓国側が納得しない場合は国際仲裁に委ねるよう勧告している。また関連する重要な文書として、「ダレス電文⁹⁰」がある。これは1953年12月19日でワシントンの国務省から東京の駐日大使とソウルの駐韓大使あてに発信された秘密電文であるが、内容は近年の国際司法裁判所(ICJ)の動向を勘案して、米国は日本側に法律的に加担しないようとの趣旨を述べている。「ラスク書簡」を発出したにも拘わらず、米国の帝国主義的で無責任な態度が透けて見える証拠として無視できない(‘리스크 서한’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서 무시 할 수 없다)。

確かに多くの論者とくに国際法学者が言うように、条文の字面だけをとってみれば「竹島を日本が朝鮮に対して放棄する島の中に含めていない」のはその通りである。しかし、こうした決着をみるには、大変な紆余曲折があった。結論的に言えば、アメリカ帝国主義の戦略的意図、とくに朝鮮戦争最中の軍事的思惑がこの島の帰属を日本領とする意思を固めたが(미국

제국주의의 전략적 의도, 특히 한국전쟁 중의 군사적 의도가 이 섬의 귀속을 일본령으로 하는 의지를 굳혔지만, 「独島義勇守備隊」の駐留(1954年 6月)や海洋警察部隊の常駐(同年 8月)など, 実態は韓國の実効支配を容認した(실태는 한국의 실효 지배를 용인했다). すなわち日本と同様に米国の目下の同盟国であった韓国はただちに「平和線(李ライン)」(後述)という実力を行使して, 警察官憲によるものとはいえ, 事実上の軍事占領を今日に至るまで継続している.

6. 日韓条約と竹島/独島の領有問題

「日韓会談」は, 平和条約調印から踵を接するかのようになり, 早くも1951年10月20日から予備会談が開始されている. そのお膳立てをしたのは, GHQのシーボルト外交局長であり, 言わば極東における米日韓「反共軍事同盟」を目指したものであった. しかし1952年1月18日に宣布された李承晩(イスンマン)大統領の「海洋主権宣言」いわゆる「李ライン」問題で, 出だしから躓く結果を招いた⁹¹. 「李ライン宣言」にかんする藤井賢二の研究⁹²によれば, 韓国の漁業行政担当者であった池鉄根(チチョルケン)(商工部水産局漁撈課長)は, 対象水域として「東シナ海・黄海の底曳網漁場や済州島東方の旋網漁場のような好漁場」を想定し「竹島周辺の日本海を重要漁場とは捉えていなかった」のであった.

しかし, その策定過程で「①対象は水産物のみならず『自然資源鉱物』をも含み, ②「範囲は海洋のみならず大陸棚まで広がり, ③「保護水域ではなく『主権』が宣言される」という重要な変更が加えられた. つまり当初は「マッカーサーラインという韓国漁業にとっての〈既得権益の確保〉を主目的として発案された」ものに過ぎなかったが, 「〈日韓会談の交渉材料〉ということも強く意識した複合的な目的・性格を持った宣言に変化・発展していた」という竹内猛の見解⁹³が妥当であろう. 竹島/独島の領有権をめぐる日韓の応酬を一瞥すると, 日本側はこれを「国際法上の問題」と捉えて会談の議題としたい意向が強く, 韓国側は「歴史問題」と捉えて議題から除こうとして, 議論が噛み合っていない. 1961年 5月のクーデターで成立した朴正熙(パクジョンヒ)軍事政権により, その「開発独裁」の資金獲得を主眼とした交渉が推進されることとなった. そして62年12月の「平正芳大(おおひらまさよし)・金鐘泌(キムジョンピル)会談」において, 「賠償金」名目ではなく「経済協力」として, 有償 2億ドル・無償 3億ドルの資金供与という内容で大筋の妥結がなされた. しかし肝心の竹島/独島の領有権問

題については、土壇場に至るまで両国の合意は成立しなかった⁹⁴。そして島の「共有」や「爆破」論など、交渉担当者個人による様々なアイデアが水面下で浮上したりするが、結局のところ「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という極めて曖昧模糊とした密約が締結されたものと推定されている。それは公式的には、65年6月22日に日韓基本条約とともに調印された「紛争処理のための交換公文」という形式を取るが、日本側はこれに竹島問題が含まれると解釈し、逆に韓国側は独島問題を対象外と解釈することで、暗黙の了解に至るという言わば玉虫色の決着であった(일본 측은 이에 다케시마 문제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반대로 한국 측은 독도 문제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양해를 하는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었다). この過程を執拗に追及したのは、ロー・ダニエル⁹⁵であるが、密約文書は史料としては提示できず、関係者にたいするオーラル・ヒストリーという手法によって、辛うじて真相に迫り得たところである。

■ むすび—竹島／独島領有問題の平和的な解決のために

以上のように、竹島／独島の領有権について、その近現代史的起源を追究すれば、①日本による朝鮮植民地支配、②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いう多国間協定、③その後の日韓諸条約ということになる(①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 ②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라는 다자간 협정, ③그 후 한일 조약이다)。とくに③の日韓条約ではその解決を棚上げし、「密約」で当面を糊塗しようとした。ところが韓国では民主化が進み、1990年代に至っていわゆる「文民政権」(1993年2月に金泳三(キムヨンサム)が大統領に就任)が誕生するに及んで、こうした「密約」は事実上廃棄され、接岸施設の建設(1995年12月~97年11月)、一般観光客の入島許可(2005年3月申告制・09年6月無制限)など⁹⁶ 実効支配が強化された。したがって問題解決の直近の手掛かりとしては、日本の植民地支配の精算を曖昧にし、請求権を「経済協力」の美名で誤魔化した日韓諸条約にこそある。韓国側の強硬姿勢はこうした曖昧な精算にたいする異議申し立てでもあると言える。

2012年8月10日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突然の独島上陸も、政権のレームダック状況の打開に領土主権のカードを切ったものと解釈できる。巷間日本側は「領土問題」と解し、片や韓国側は「歴史問題」と解しているとされる場合が多いが、本質は「歴史的に推移し

てきた領土問題と言える(本질은 '역사적 추이를 가진 영토 문제'이다)。したがって、解決の大前提は植民地支配の全面的精算に繋がって来ざるをえない(해결의 대전제는 식민지 지배의 전면적 청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のであるから、1965年の日韓諸条約が看過してきた「慰安婦」「軍人軍属」「強制動員」など、いわゆる戦後補償問題を一括して解決(「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韓国憲法裁判所が2011年8月の判決で両国政府の責任を認定して違憲としたが、15年12月の判決では合憲に覆った)する必要がある。このテーブルは「紛争処理に関する交換公文」によって設定可能であり、これが機能すれば、国際司法裁判所(ICJ)による調停などは無用の長物であろう。そして竹島/独島問題の「共同研究」については、かつて2回に渉る「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報告書は2005・10年公開)のように、密室での人選ではなく有識者から相応しい委員を公募し、かつ議題についても韓国側がかつてとった「独島問題は議題としない」という態度⁹⁷は取るべきではない。今日の日韓両国における史料発掘やその研究の水準をもって成果を突き合わせれば、解決策は自ずから拓けてくる。あえて私見を提示すれば、100%どちらかのものに帰属するという結論はあり得ない(100% 어느 쪽에 귀속된다는 결론은 있을 수 없다)と思われる。本稿で縷々述べ来たつたような歴史的淵源に照らせば、こうした境界領域においては、国家的ナショナリズムの論理よりも、周辺地域住民の生活を根拠としたローカリズムの論理を優先させるべきである(이러한 경계 영역에서는 국가적 민족주의의 논리보다도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을 근거한 지역주의(localism) 논리를 우선해야 한다)。例えば、「韓国側管理下の自然保護区⁹⁸」という芹田健太郎の提言が既に事実上の現状となっており(1982年11月6日指定)、さらに近年の「韓国による竹島の『現状維持』と自然保護区への設定、日本漁民の漁業権の確保と漁業資源の保全措置などを条件に、日本が今後主権を主張しない⁹⁹」という豊下楯彦の解決策が最も現実的ではないだろうか。そうならば、これまでの両国間のナショナルな領土紛争を止揚し、境界領域の住民によるローカルな共生環境を実現することによって、東北アジアでのグローバルな平和的国際秩序を構築できるであろう(지금까지의 양국 간의 민족적 영토 분쟁을 지양하고, 경계 영역의 주민에 의한 지역(local) 공생 환경을 실현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글로벌한 평화적 국제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その具体化にあたっては、①現行の日韓漁業協定による暫定中間水域での漁業を互恵的に実施する、②環境破壊に繋がる竹島/独島での諸施設(武器類を含む)のこれ以上の増設を中止する、③ローカルな住民交流のための交通手段として周遊航路、例えば境港~隠岐島~竹島/独島周辺~鬱

陵島～浦項(ポハン)のようなルートでの観光遊覧船なども提案したいところである。

註(文献の書誌については「参照文献一覧」に記した)

1. 坂本悠一[2014]参照.
2. 第3期竹島問題研究会[2014]参照.
3. 朴炳涉[2005], 内藤正中[2008], 池内敏[2015]参照. さらに外務官僚として, 竹島/独島にかんする韓国政府宛「口上書」の作成にも関与したと推定される川上健三[1966]においても, こうした文言は一切見られない.
4. 大寿堂鼎[1955](同[1998] 57~64頁). 条文は奥脇直也・小寺彰[2013] 862頁に抄録.
5. 大寿堂鼎[1955](同[1998] 65頁).
6. 中谷和弘他[2011] 9~10頁(引用部分の中谷執筆).
7. 大寿堂鼎[1998] 9~12頁. 許淑娟[2012] 28~32頁.
8. 大寿堂鼎[1955](同[1998] 75頁, 19頁). なお大寿堂の竹島領有についての見解は, 日本領とする国際法学者の通説と同じである(同[1966]).
9. 池内敏[2012] 215~240頁.
10. 池内敏[2012] 37~54頁.
11. 池内敏[2012] 152~187頁.
12. 『太政類典』第2編第96巻(「公文録・内務省之部・明治10年 3月」国立公文書館所蔵). 『島根県行政文書(1)』11~34頁に収録.
13. 堀和生[1987] 102~106頁. 竹内猛[2010] 73~77頁. 朴炳涉[2010(1)] 4~36頁. 池内敏[2012]137~149頁. 韓国では정태만[2012]. ただし堀・竹内・朴らが, いずれも竹島/独島を朝鮮領と捉えているのにたいし, 池内はたんに日本領外と述べるにとどめている.
14. 「韓国鬱陵島事情」『通商彙纂』第234号, 明治35年10月16日附録. 朴炳涉[2009], 竹内猛[2010]80頁. 福原裕二 [2013] 8~9頁.
15. 朴炳涉[2010(1)]参照. また池内敏[2012]275~290頁. 福原裕二[2013]11,14~15.
16. 김수희[2011]参照.
17. 「新高行動日誌(5)」(JACAR =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C09050457300・防衛省防衛研究所所蔵). 堀和生[1987] 110頁.
18. 『(大韓帝国)官報』第1715号, 光武4(1900)年10月27日. 原文は이기봉[2012] p.154, 訳文は池内敏[2012]370頁.
19. 이기봉[2012]. 日本では朴炳涉[2010(2)] 39~51頁.
20. 池内敏[2012]242~245頁. なお竹内猛[2010]は, 「直接の文献的証拠は発見されていない」としつつも, 朝鮮語方言の音韻転訛の可能性を強く示唆している(89~91・104~107頁).
21. 『島根県行政文書(1)』48~66頁.
22. 堀和生[1987] 113~115頁. 朴炳涉[2013] 50~55頁. 韓国では예영준[2012]. 肝属・山座発言については, 「中井要三郎履歴書」「竹島経営者中井要三郎氏立志伝」. なお山座は, 韓国勅令第41号が公布された1900年10月25日当時, 漢城(ハンソン)駐在日本公使館勤務であった(長谷川俊[1967]).
23. 堀和生[1987] 116~119頁.
24. 『島根県行政文書(1)』157~163頁.
25. 福原裕二[2013] 21~22頁.

26. 「韓国鬱陵(ママ)島事情」『通商彙纂』明治39年第 2号, 同年 1月13日. 「鬱島郡誌」『朝鮮総督府月報』第 1 卷第 1号, 明治44年 6月. 池内敏[2012] 275~290頁. 福原裕二[2013] 29・37~39頁.
27. 池内敏[2012] 288頁. 福原裕二[2013] 29頁.
28. 福原裕二[2013] 22~23頁.
29. 「韓国鬱陵島事情」『通商彙纂』第234号, 明治35年10月16日. 「鬱陵島ニ於ケル農工商ノ状況」『通商彙纂』明治40年第51号, 同年 9月 8日. 『竹島漁業の変遷』10頁.
30. 「鬱陵島現況」『通商彙纂』明治38年第50号, 同年 9月 3日.
31. 「竹島海驢実況覚書」『島根県行政文書(1)』91~95頁.
32. 『竹島漁業の変遷』10頁.
33. 池内敏[2012] 273~274頁.
34. 『昭和八年島行政一斑』13頁.
35. 『昭和十三年島勢一斑』6頁.
36. 池内敏[2012] 273~274頁. 福原裕二[2013] 32~34頁.
37. 『竹島漁業の変遷』13頁.
38. 『竹島漁業の変遷』14頁.
39. 「中井養一口述書」『竹島漁業の変遷』45頁.
40. 『竹島漁業の変遷』16頁.
41. 『竹島漁業の変遷』14頁. 「橋岡重忠口述書」同40頁. 「中井養一口述書」同46頁.
42. 『竹島漁業の変遷』16~17頁. 「奥村亮口述書」同36頁.
43. 『竹島漁業の変遷』16頁. 「奥村亮口述書」同35頁.
44. 『竹島漁業の変遷』16頁. 「奥村亮口述書」同36頁.
45. 「橋岡・池田・八幡家決算書」『竹島一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学ぶ』.
46. 『竹島漁業の変遷』17頁. 「奥村亮口述書」同36~37頁.
47. 『竹島漁業の変遷』17頁. 「奥村亮口述書」同37頁.
48. 福原裕二[2013]32頁.
49. 『大阪毎日新聞朝鮮版』昭和12年 2 月11日付.
50. 「中井養一口述書」『竹島漁業の変遷』44頁.
51. 『竹島漁業の変遷』15頁. 「中井養一口述書」同46頁.
52. 1941年12月から45年 4 月までの「舞鶴鎮守府」「舞鶴防備隊」「舞鶴防備戦隊」「舞鶴警備隊」の各「戦時日誌」で、一部欠号あり(防衛省防衛研究所所蔵・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2015年 9月30日閲覧).
53. 『竹島漁業の変遷』17頁. 「奥村亮口述書」同37頁.
54. 『竹島漁業の変遷』19頁. 「奥村亮口述書」同37頁.
55.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side Areas from Japan' 原文は『日本占領及び管理重要文書集』第12巻24~25頁, 『GHQ 司令総集成』第 3 巻1026頁に収録. 全訳は竹内猛 [2013] 149頁, 抄訳は同 2 頁より引用.
56. '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 原文は『日本占領及び管理重要文書集』第12巻 141~142頁, 『GHQ 司令総集成』第 5 巻2015頁に収録. 全訳は竹内猛[2013] 151頁, 抄訳は同12頁より引用.
57. 'Policy concernig Trusteeship and other Methods of Disposition of the Mandated and other outlying and minor Islands formerly Controlled by Japan'. 原文は 'U.S.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Policy Files, 1944-47' に収録. 訳文は原喜美恵[2005] 42頁・竹内猛[2013] 14頁より引用(原文の一部が28頁に収録).
58. 'minor Island in the Pacific, minor Island in the Japan Sea' 米国立公文書館(NARA)所蔵の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Japan, decimal file 895. 1945-46' に収録. 原文は "대일강화조약자료집" pp.56-60に抄録. 抄訳は塚本孝

- [2014]59~60頁, 竹内猛[2013] 36~37頁による. この調書の取り纏めに当たった川上健三[1973]によれば, GHQ によって日本政府の行政権が停止された区域のうち「将来その帰属が問題となるべき区域」のための資料として「発見, 領有などの沿革, 自然環境及びその経営等についてできるだけ客観的な形で叙述した」というが, 当該区域のうち竹島を「行政権分離区域としたことなどは全く納得のいかないこと」とも述べている(173~175頁). また塚本は, 調書が米国草案に与えた影響は相対的に小さかった, と評価している(同上64頁).
59. 西村熊雄[1971]43頁. 竹内猛[2013] 40頁.
 60. 3月草案は, 'Records of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relating to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Subject File, 1945-51'(以下, 'RONAATPJ' と略記). (NARA: LotFile56D527, Box No.1, Folder No. 15). 原文は“대일강화조약자료집” pp.45-51, “독도자료 I” pp.8-11に収録. 訳文は塚本孝[1994]39頁, 引用は原喜美恵[2005] 43~44頁, 竹内猛[2013] 45頁による. 8月草案は, 'RONAATPJ'(NARA: Lot File56D527, Box No.5, Folder No.13). 原文は“대일강화조약자료집”pp.64-68, “독도자료 I” pp.18-28に収録, 原喜美恵[2005] 75頁に抄録. 訳文は塚本孝[1994]39~40頁, 引用は竹内猛[2013] 46頁による. 以下講和条約草案の翻訳の引用については, 原則として最新の訳文による.
 61. 1月草案は, 'RONAATPJ'(NARA:RG59, Bureau of Far EasternAffairs, LotFile56D527, Box No.4, Folder No.1). 訳文は塚本孝[1994]40~41頁に収録.
 62. 9月草案については邦語文献に記載がなく, WikisouceHP の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に掲載されているが(出典は 'RONAATPJ' NARA: RG59,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Lot File56D527, Box No.6, Folder No.2), 内容的には朝鮮が領有する島嶼を経度・緯度で指示し, そのなかに竹島/独島を含めている(HP pp.4-5). 10月草案は, 'RONAATPJ'(NARA: RG59,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Lot File56D527, Box No.6, Folder No.3). 原文が“대일강화조약자료집” p.107, “독도자료 I” pp.42-48に抄録されているが, 邦訳はない. 塚本孝[1994]41頁に簡単に, 原喜美恵[2005] 47~48頁ではやや詳しくその内容を紹介しているが, 9月草案と大きな変化はない. 11月草案は, 'RONAATPJ'(NARA: RG89, LotFile56D 527, Box No.6, Folder No.3). 原文は“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以下 FRUSと略記)1949. Vol.8. p.900, “대일강화조약자료집”pp.117-119, “독도자료 I” pp.49-57に収録. 訳文は塚本孝[1994]41頁, 引用は竹内猛[2013] 61~63頁による.
 63. 'Comment on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to the honorabl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from Office of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er for Japan (W. J. Seibalt), 19th November 1949' (RG59, Decimal File 1945-49, box3515). 原文は“FRUS” 1949. Vol.7. p. 900, “대일강화조약자료집” pp.122-126, “독도자료 I” pp.64-77に収録. 原文の抄録と訳文は塚本孝[1983] 55頁, 塚本孝[1994]42~43頁に収録. 引用は原喜美恵[2005] 49頁, 竹内猛[2013] 64~65頁による.
 64. 'Japanese Peace Treaty Files of John Foster Dulles 1947-52. (以下, 'JPTFJFD' と略記). Memorandum C-43. Confidential U.S. State Department Special Files Japan 1949-51' (NARA: RG59, Lot File54D423, box12) “대일강화조약자료집” pp.144-151, “독도자료 I” pp. 80-125. 訳文は塚本孝[1994]43頁に収録. 引用は竹内猛[2013] 64~65頁による.
 65. 'Commentary on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RONAATPJ'(NARA: LotFile56D527, Box No.6, Folder No.3). “대일강화조약자료집” pp.162-164. 邦訳は塚本孝[1994]44頁に収録. 引用は竹内猛[2013] 67頁による.
 66. 森田芳夫[1973]162頁.
 67. “FRUS” 1950. Vol.6. pp.1296-1297. 『日本外交文書』「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対米交渉)」96-98頁.
 68. 'Memorandum attached to Provisional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22th March 1951' 'RONAATPJ' No.6 (NARA: RG59). 原文は“FRUS” 1951. Vol.6. Part1. p.945, “독도자료 I” pp.292-298. 『日本外交文書』「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対米交渉)」333~341頁, 訳文は同 341~347頁, 塚本孝[1994]45頁, 原喜美恵[2005] 56頁に収録. 引用は竹内猛[2013] 78頁, 朴炳渉[2014(2)] 40頁

- による.
69. 原喜美恵[2005] 57頁. 竹内猛[2013] 89頁. 朴炳涉[2014(2)] 59~61頁. なお, この当時の朝鮮戦争の戦況を見ると, 中国義勇軍の加勢を得た朝鮮人民軍が反撃に転じ, 1951年 1~3月にかけて韓国の首都ソウルを再占領する状況であった.
 70. 'Provisional Draft of Japanes Peace Treaty (United Kingdom)'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am (NAUK) FO371/92538, FJ1022/222に収録. 原文は“대일강화조약자료집” pp.206-210, :독도자료 I “pp.299-336. Wikisouce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pp.13-14に掲載. 邦訳は塚本孝[1994]46頁に収録. 訳文は原喜美恵[2005] 58頁, 竹内猛[2013] 81頁, 朴炳涉[2014(2)] 40~45頁による.
 71. 外務省は, 1951年 4月21日付で「英国草案に対するわが方の逐条的見解について」という極秘文書(『日本外交文書』「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対米交渉)396~406頁)を作成したが, その「第1章領域条項」において, 「英案の如き経緯度による詳細な規定振は, 日本国民に対し領土の喪失感を強く印象ず(ママ)けるので感情上面白くない」(397頁)と論評していたが, 通告しなかった.
 72. 정병준[2010] pp. 567-575, 竹内猛[2013] 84~86頁.
 73. “FRUS” 1951. Vol.6. Part1. pp.1119-1120, “대일강화조약자료집” pp.218-229, “독도자료 I” pp.442-444, 『日本外交文書』「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対米交渉)529~549頁に収録. 訳文は塚本孝[1994]47頁, 原喜美恵[2005] 61頁, 竹内猛[2013] 88頁, 朴炳涉[2014(3)] 58頁による.
 74. 韓国政府の公文は, ‘JPTFJFD’ (NARA: RG59, Lot File54 D423, Box No.8, Korea). 原文は“FRUS” 1951. Vol.6. Part1. pp.1202-1203に収録. 原文と邦訳は塚本孝[1983]61頁, 塚本孝[1994]48頁に収録. 訳文は原喜美恵[2005] 63頁, 竹内猛[2013] 99頁による. 梁大使とダレス顧問の会谈記録は, ‘JPTFJFD’ (NARA: RG59, Lot File54D423, Box No.8). 原文は“FRUS” 1951. Vol.6. Part1. pp.1202-1206, “대일강화조약자료집” pp.248-249, “독도자료 II” pp.15-19に収録. 原文と邦訳は塚本孝[1994]49頁に収録. 引用は竹内猛[2013] 100頁による.
 75. You Chan, Yang[1954]p.47(アメリカ政治社会科学学会編・好本康雄訳[1956]123頁)および竹内猛[2013] 101頁, 朴炳涉[2014(3)] 62頁による.
 76. ‘JPTFJFD’ (NARA: RG59, Lot File54D423, Box No.8, Korea). 原文は“FRUS” 1951. Vol.6. Part1. p.1203. foot note3, “대일강화조약자료집” pp.204-205, “독도자료 II” p.114に収録. 原文と邦訳は塚本孝[1983]62頁, 塚本孝[1994]50頁に収録. 訳文は原喜美恵[2005] 63~64頁, 竹内猛[2013] 101~102頁, 朴炳涉[2014(3)] 62~63頁による.
 77. ‘Office Memorandum, 31th July, 1951, to NA-Mr. Robert A. Fearey, from OIR/GE-S. W. Boggs, Parando and Dokdo (island)’, “대일강화조약자료집” p.253, 정병준[2010] p.760·図8-12に収録.
 78. 정병준[2010] p.765.
 79. 池内敏[2012]297頁.
 80. 竹内猛[2013] 109~110頁.
 81. 高野雄一[1962] 69頁, 太寿堂鼎[1998] 149~150頁. 芹田健太郎[2010] 181~182頁など.
 82. 外務省情報局が, 1951年 8月 4日に公表し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草案の解説」(『日本外交文書』「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対米交渉)」)では, 「朝鮮の範囲には濟州島, 巨文島, 及び鬱陵島が含ま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が, これらは終戦前も朝鮮総督府の行政管轄下にあった島である」(674頁)と記し, 竹島/独島の帰属には一言も論及していない. したがって, 竹内猛[2013] は, 「竹島=独島が含まれているとも, 含まれていないとも証明することは困難」(108頁)とし, また朴炳涉[2014(3)] も「竹島=独島が含まれるのかどうかに関してはいかなる解釈も不可である」(71頁)との通説批判をおこなっている.
 83. 竹内猛[2013] 92・97・109頁.
 84. 朴炳涉[2014(2)] 49頁.
 85. 정병준[2010] pp.131-132.

86. 박병섭[2015] 表 1·3·4 参照. なおより公式的な資料によれば, 竹島/独島の近海に侵出した巡視船は, 1953年だけでも合計16回を数える(海上保安庁[1979] 28~29頁).
87. Jennings, Watts [1992]p.690. 許淑娟[2012] 35頁.
88. 文書名は 'Koreans on Riancourt Rocks (From: Am-embassy, Tokyo, 3th October 1952, to The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原文は, "독도자료Ⅱ" p.86, 内藤正中・朴炳涉[2007] 333~336頁に収録. 訳文は同328~330頁および塚本孝[2007]80頁所収. なお, 朴炳涉[内藤・朴2007]が「アメリカの『竹島 = 独島は朝鮮王朝の一部であった』という認識が文書により明らかになった」(326~327頁)と強調しているのにたいし, 塚本孝[2007]は, これを否定している(80頁).
89. 'Memorandum by Willam T. Turner, Subject: Memorandum in (1953. 11. 30) regard to the Riancourt Rocks (Takeshima Island) Controversy'. "대일강화조약자료집" pp.280-251, 정병준 [2010] p.947.
90. 'Telegram by Secreetaey of State Dulles to Seoul (No.398), Tokyo (No.1198) 19th December 1953. RG84. Japan Tokyo Embassy, CGR. 1953. Box. 23' "독도자료Ⅲ" pp.209-211, 정병준 [2010] pp.947-948に収録.
91. 藤井賢二[2004] 参照. なお竹島/独島の領有権問題は会談の議題には直接にはのぼらなかったが, 「李ライン」宣布直後の 1 月28日, 日本外務省は韓国政府宛の口上書で, 初めてその領有権を主張し, 以降双方の口上書による論争が開始された(池内敏[2015] 81~85頁).
92. 藤井賢二[2002] 104頁.
93. 竹内猛[2013] 114頁.
94. 崔基植[2011] 参照.
95. ロー・ダニエル[2008]参照.
96. 울릉군[2012].
97. 木村幹[2010].
98. 芹田健太郎[1999] 252~253頁. 同[2010] 313頁.
99. 豊下橋彦[2012]140頁.

参照文献一覧(참조문헌일열)

- I. 日本語(編著者の50音順・刊行年はすべて西暦に統一し, 刊行月は省略した)
- アメリカ政治社会科学学会編・好本康雄訳[1956]『新生アジアとアメリカ外交』一橋書房
- 池内敏[2012]『竹島問題とは何か』名古屋大学出版会
- 池内敏[2015]『竹島は固有の領土である』論『歴史評論』第785号
- 海上保安庁[1979]『海上保安庁三十年史』海上保安協会
- 川上健三[1966・96復刻]『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 川上健三[1973]『連合国の占領及び管理下における外交』鈴木九万監修『終戦から講和まで』(『日本外交史』第26巻)鹿島研究所出版会
- 木村幹[2010]『日韓歴史共同研究』をどうするか—当事者的観察『現代韓国朝鮮研究』第10号
- 坂本悠一[2014]「竹島/独島領有権論争の研究史的検討と課題—戦後日本における近現代史分野

- を中心に』『(立命館大学)社会システム研究』第29号
- 芹田健太郎[1998]『島の領有と経済水域の確定』有信堂高文社
- 芹田健太郎[2002改訂2010]『日本の領土』中央公論新社
- 第3期竹島問題研究会[2014]『竹島問題100問100答』(『Will』3月増刊号)ワック
- 太寿堂鼎[1955]「国際法上の先占について」『(京都大学)法学論叢』第60巻第5号(1998所収)
- 太寿堂鼎[1966]「竹島紛争」『国際法外交雑誌』第64巻第4・5号(1998所収)
- 太寿堂鼎[1998]『領土帰属の国際法』東信堂
- 高野雄一[1962]『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
- 竹内猛[2010]『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前編)—江戸時代から明治時代まで』
著者
- 竹内猛[2013]『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後編)—第2次世界大戦後の展開』
著者
- 崔基植[2011]「韓日会談における独島領有権問題—韓国と日本外交文書における実証的分析」李
鐘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法政大学出
版局
- 塚本孝[1983]「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と竹島」『(国立国会図書館調査立法考査局)レファレンス』第357号
- 塚本孝[1994]「平和条約と竹島(再論)」『レファレンス』第518号
- 塚本孝[2007]「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おける竹島の取り扱い」『「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
告書』
- 塚本孝[2014]「竹島に関する英文説明資料(1947年外務省作成)をめぐって」『島嶼研究ジャーナル』
第4巻第1号
- 豊下植彦[2012]『「尖閣問題」とは何か』岩波書店
- 内藤正中・朴炳涉[2007]『竹島＝独島論争—歴史資料から考える』新幹社
- 内藤正中[2008]『竹島＝独島問題入門—日本外務省『竹島』批判』新幹社
- 中谷和弘・植木俊哉・河野真理子・森田章夫・山本良[2011]『国際法(第2版)』有斐閣
- 西村熊雄[1971]『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日本外交史』第27巻)鹿島研究所出版会
- 朴炳涉[2005]「竹島＝独島は『固有領土』か」『飛礫』第47号
- 朴炳涉[2009]「山陰地方民の鬱陵島侵入の始まり」『(鳥取短期大学)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30号
- 朴炳涉[2010]「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1)(2)」『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31・32号
- 朴炳涉[2011]「竹島＝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1)(2)」『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33・34号朴炳涉
[2013]「日露海戦と竹島＝独島の軍事的価値」『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36=37号
- 朴炳涉[2014]「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1)(2)(3)」『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38・39号
- 長谷川俊[1967]『山座円次郎』時事通信社

原喜美恵[2005]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アジア太平洋地域の冷戦と「戦後未解決の諸問題」』 溪水社

福原裕二[2013] 『たけしまに暮らした日本人たち—韓国鬱陵島の近代史』 風響社

藤井賢二[2002] 「李承晩ライン宣布への過程に関する研究」 『朝鮮学報』 第185輯

藤井賢二[2004] 「李承晩ラインと日韓会談—第 1~3 次会談における日韓の対立を中心に」 『朝鮮学報』 第193輯

許淑娟[2012] 『領域権原論—領域支配の実効性と正当性』 東京大学出版会

堀和生[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24集

森田芳夫[1973] 「日韓関係」 吉沢清次郎監修 『講和後の外交(1)対列国関係(上)』 (『日本外交史』 第28卷) 鹿島研究所出版会

ロー・ダニエル(Roh Daniel)[2008] 『竹島密約』 草思社

II. 한국어(韓国語. ㄱㄴㅇ順)

김수희(金秀姬)[2011] “죽도의날” 제정이후 일본의독도연국동향—이케우치 사토시의“석도” 논의를중심으로“(嶺南大学校独島研究所)独島研究” 第10号.

박병섭(朴炳涉)[2015] ‘광복 후 일본의독도침략과 한국의수호활동’ “独島研究” 第18号.

이기봉(李起鳳)[2012] ‘순한국말지명과한자 표기의관계를통해본 石島·独島고찰’ 정영미 (鄭英美) 외 “근대이행기의 한일경계와 인식에대한연구: 독섬 (石島)과 Liancourt Rocks 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東北亞歷史財團)

예영준(芮榮俊)[2012] “독도실록1905” 책발

정병준(鄭秉俊)[2010] “독도1947: 전후독도문제와 한·미·일관계” 돌베개 정태만(鄭泰萬)[2012] “태정관지령이밝혀주는독도의진실” 조선뉴스프레스(朝鮮뉴스프레스)

III. European & American(欧米語·Alphabetical Order) Robert Jennings, Arthur Watts eds. [1992]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i. Vol.I. Peace. parts 2~4 (Harlow, UK)

You Chan, Yang (양유창)[1954] ‘The Aspirations of Korea’ “America and New Asia / The Analysi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Pennsylvania, USA)

史資料(사자료)

『太政類典』 第 2 編第96卷(「公文録·内務省之部·明治10年 3 月」国立公文書館所蔵)外務省通商局『通商彙纂』 第 1 ~185卷, 明治14~大正 2 年(復刻版, 不二出版, 1988~1997年)

『(大韓帝国)官報』第1715号, 光武 4 (1900年10月27日)

「新高行動日誌(5)明治37年 9月25日」(JACAR =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C09050457300・防衛省防衛研究所所蔵).

「中井要三郎履歷書」竹島漁獵合資会社『行政諸官庁往復雜書類』明治38年(中井甚三郎原蔵・島根県庁所蔵)

奥原碧雲「竹島経営者中井要三郎氏立志伝」明治39年(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2007年)

朝鮮総督府『朝鮮総督府月報』第1~5巻, 明治44~大正4 年鬱陵島『昭和八年島行政一斑』刊年不詳(韓国国立中央図書館所蔵)鬱陵島『昭和十三年島勢一斑』1938年(韓国国会図書館所蔵)

「鬱陵島」『大阪毎日新聞朝鮮版』昭和12年 1月 5日~17日付

「舞鶴鎮守府」「舞鶴防備隊」「舞鶴防備戦隊」「舞鶴警備隊」各「戦時日誌」(昭和16年12月~20年 4月, 1部欠号あり)(防衛省防衛研究所所蔵・JACAR =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HP)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米国外交文書)各年版速水保孝編『秘竹島漁業の変遷』外務省アジア局第二課, 1953年竹前英治監修『GHQ 司令総集成』全15巻, エムティ出版, 1973年

外務省編『日本占領及管理重要文書集』1949~51年(『日本占領重要文書』日本図書センター, 1989年)

이석우(李碩祐) 편 “대일강화조약자료집 (対日講和条約資料集)” 동북아역사재단 (東北亞歴史財団)2006年

外務省編『日本外交文書』「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対米交渉)」2007年

박홍갑(朴洪甲)·박진희(朴鎮希) 편 “독도자료 (独島資料)” I ~ III, 국사편찬위원회 (国史編纂委員会)2008年

島根県総務部総務課編『島根県行政文書(1)』(竹島関係資料集第 2集) 2011年

島根県・島根県教育委員会他『竹島一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学ぶ』2012年

울릉군(鬱陵郡) “군정주요기본통계(郡政重要基本統計)” 2012年奥脇直也・小寺彰編『国際条約集(2013年版)』有斐閣, 2013年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Wikisouce HP(2014年 7月 9日最終更新)